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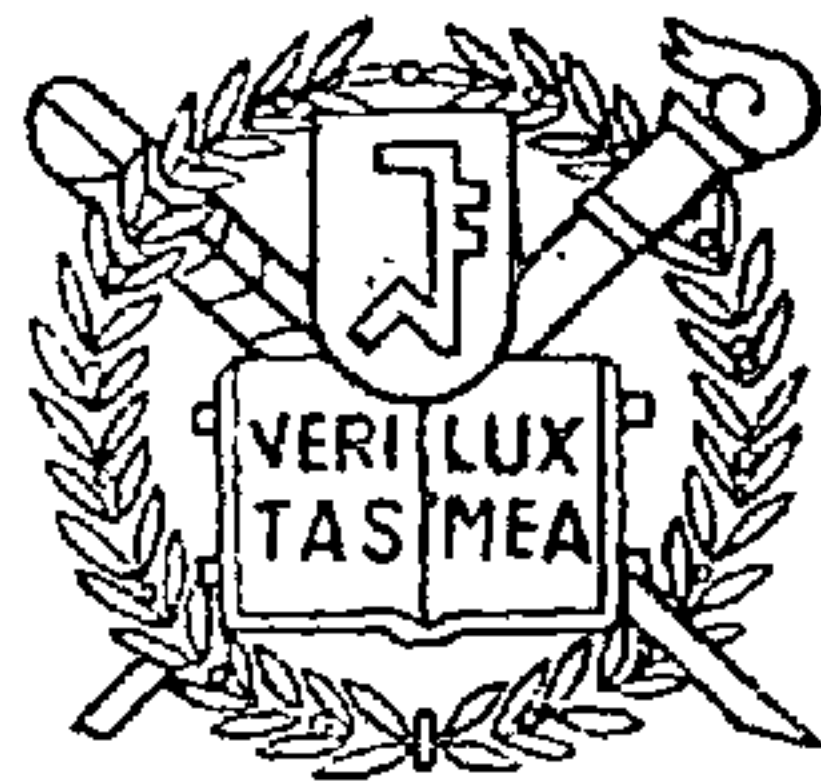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요람

P
378.51
Se67Gy
1970/1971
서울大

1970-1971

서울대학교 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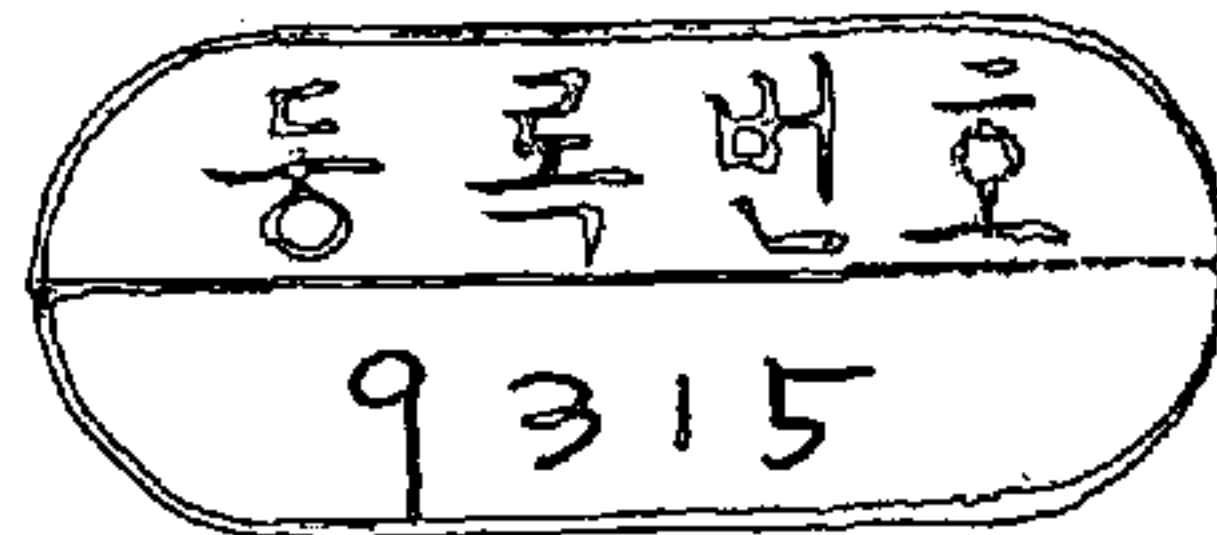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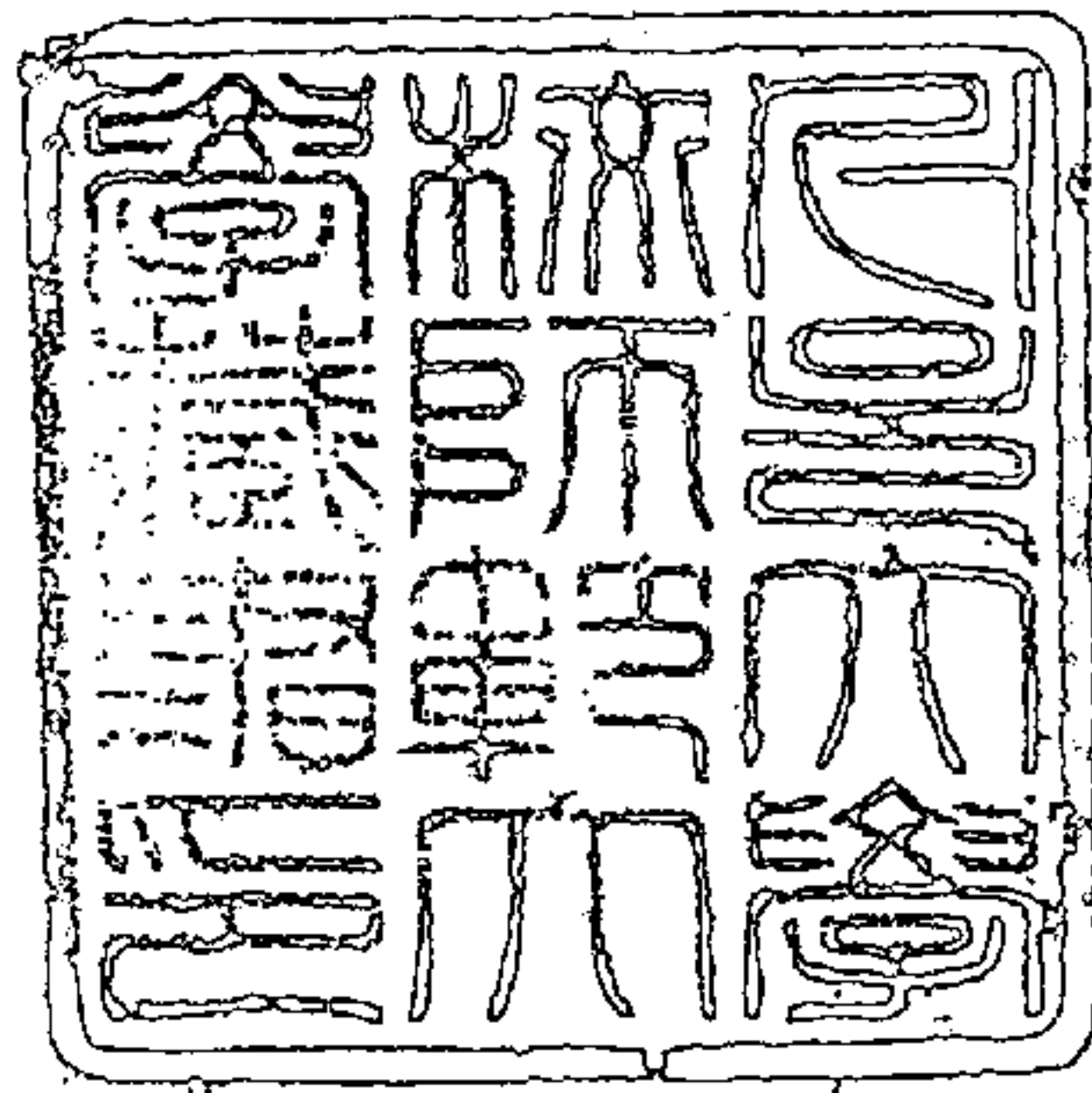
1970—1971

대학은 민족의 양심과 지성을 보전하는 수원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언제나 그나라의 먼 장래를 설계하고 민족전래의 슬기로운 전통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사상과 이념을 정립·순화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건설적참여에 있어서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나가야 할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1971. 2. 26.

— 서울대학교 제 25 회 졸업식
대통령치사에서 —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학 사 력

1970학년도

3. 1	(일)	3.1절
3. 2	(월)	입학식. 개강
3. 4	(수)	제1학기 재학생 등록
3. 7	(토)	
4. 5	(일)	식목일
4. 13	(월)	수업일수 1/3선
4. 19	(일)	기념일
5. 25	(화)	수업일수 2/3선
6. 6	(토)	현충일
6. 26	(금)	제1학기말 시험
7. 9	(목)	
7. 10	(금)	하 기 휴 가
8. 20	(목)	
8. 21	(금)	제2학기 등록
8. 29	(토)	
8. 21	(금)	제2학기 개강
8. 31	(월)	후기졸업식
9. 15	(화)	추 수 절
9. 30	(수)	수업일수 1/3선
10. 3	(토)	개 천 절
10. 9	(금)	한 글 날
10. 15	(목)	개교기념일
10. 24	(토)	국제연합일
11. 13	(금)	수업일수 2/3선
12. 10	(목)	제2학기말 시험
12. 23	(수)	
12. 24	(목)	동 기 휴 가
2. 28	(일)	
2. 26	(금)	졸업식
2. 23	(화)	신입생 등록
2. 25	(목)	

1971학년도

3. 1	(월)	3.1절
3. 2	(화)	입학식. 개강
3. 2	(화)	제1학기 재학생 등록
3. 6	(토)	
4. 5	(월)	식목일
4. 17	(토)	수업일수 1/3선
4. 19	(월)	4.19기념일
6. 3	(목)	수업일수 2/3선
6. 6	(일)	현충일
7. 7	(수)	제1학기 말시험
7. 20	(화)	
7. 21	(수)	하 기 휴 가
8. 31	(화)	
8. 25	(수)	제2학기 등록
8. 28	(토)	
8. 30	(월)	후기 졸업식
9. 1	(수)	제2학기 개강
10. 7	(목)	수업일수 1/3선
10. 3	(일)	개천절 · 추수절
10. 9	(토)	한 글 날
10. 15	(금)	개교 기념일
10. 24	(일)	국제 연합일
11. 16	(화)	수업일수 2/3선
12. 10	(금)	제2학기말 시험
12. 23	(목)	
12. 24	(금)	동 기 휴 가
2. 29	(화)	
2. 26	(토)	졸업식
2. 23	(수)	신입생 등록
2. 25	(금)	

차 례

I. 연 혁

- 1. 연 혁11
- 2. 역대총 장.....18

II. 기 구

- 1. 평위원회25
- 2. 학장회25
- 3. 인사위원회25
- 4. 대학교본부26
- 5. 대학과 대학원.....27
- 6. 부설기관31
- 7. 기관장명단33
- 8. 교직원명단35

III. 시 설

- 1. 위 치73
- 2. 소유토지와 건물.....74
- 3. 실습장과 연습림.....74
- 4. 연구 및 실험실습 기계기구.....75
- 5. 도서관75
- 6. 박물관76
- 7. 부속병원77

IV. 학 칙

- 1. 서울대학교 학칙.....81

2. 대학원 학칙	98
3. 경영대학원 학칙	106
4. 교육대학원 학칙	111
5. 보건대학원 학칙	116
6. 사법대학원 학칙	121
7. 신문대학원 학칙	127
8. 행정대학원 학칙	132
V. 교과과정.....	별책
VI. 학 위	
1.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141
2. 경영대학원 학위수여규정	148
3.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	149
4. 보건대학원 학위수여규정	150
5. 사법대학원 학위수여규정	151
6. 신문대학원 학위수여규정	152
7. 행정대학원 학위수여규정	153
VII. 연 구	
1. 학술연구.....	157
2. 연구위원회.....	158
3. 연구비.....	159
4. 학회활동.....	160
5. 해외연수.....	160
6. 연구소.....	160
VIII. 장 학	
1. 장학제도.....	173

2. 학생보건	176
3. 학생후생	178
4. 해외유학	181

Ⅸ. 학생지도 및 생활

1. 학생지도	185
2. 학생상담	189
3. 학생병사	190
4. 군사교육	191
5. 간행물	192
6. 대학신문	192

X. 서울대학교 종합건설 계획개요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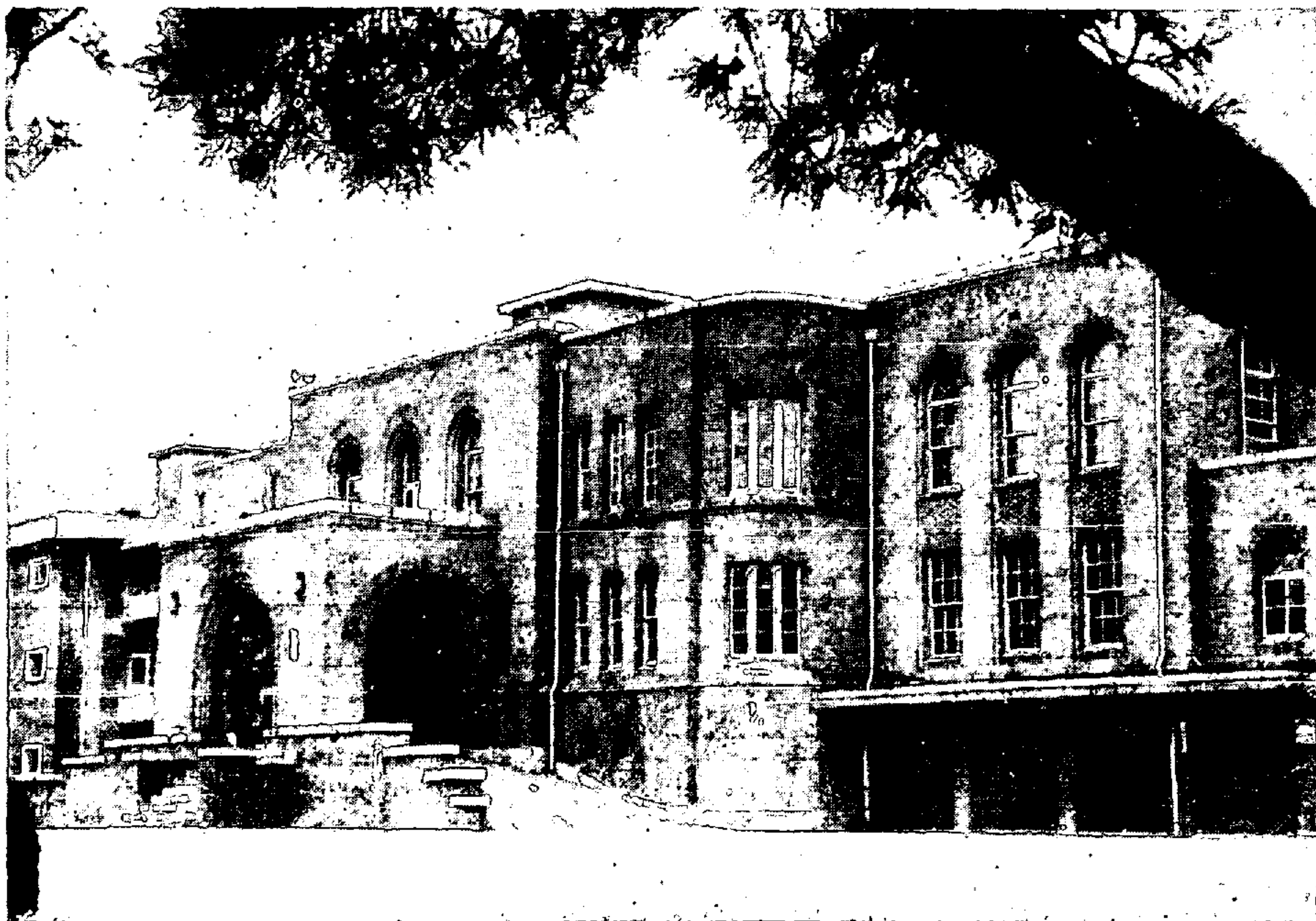
Ⅹ. 부 표

1. 기구표	203
2. 서울대학교 개요	205
3. 기관현황	207
4. 학생정원표(대학, 대학원, 부속학교)	208
5. 입학상황표(대학, 대학원)	210
6. 재학생통계표(대학, 대학원)	211
7. 학위 수여자 통계표	212
8. 장학금 급여 상황표	217
9. 현역군인 재학생 통계표	218
10. 학생병사관계 통계표	220
11. R.O.T.C. 현황	221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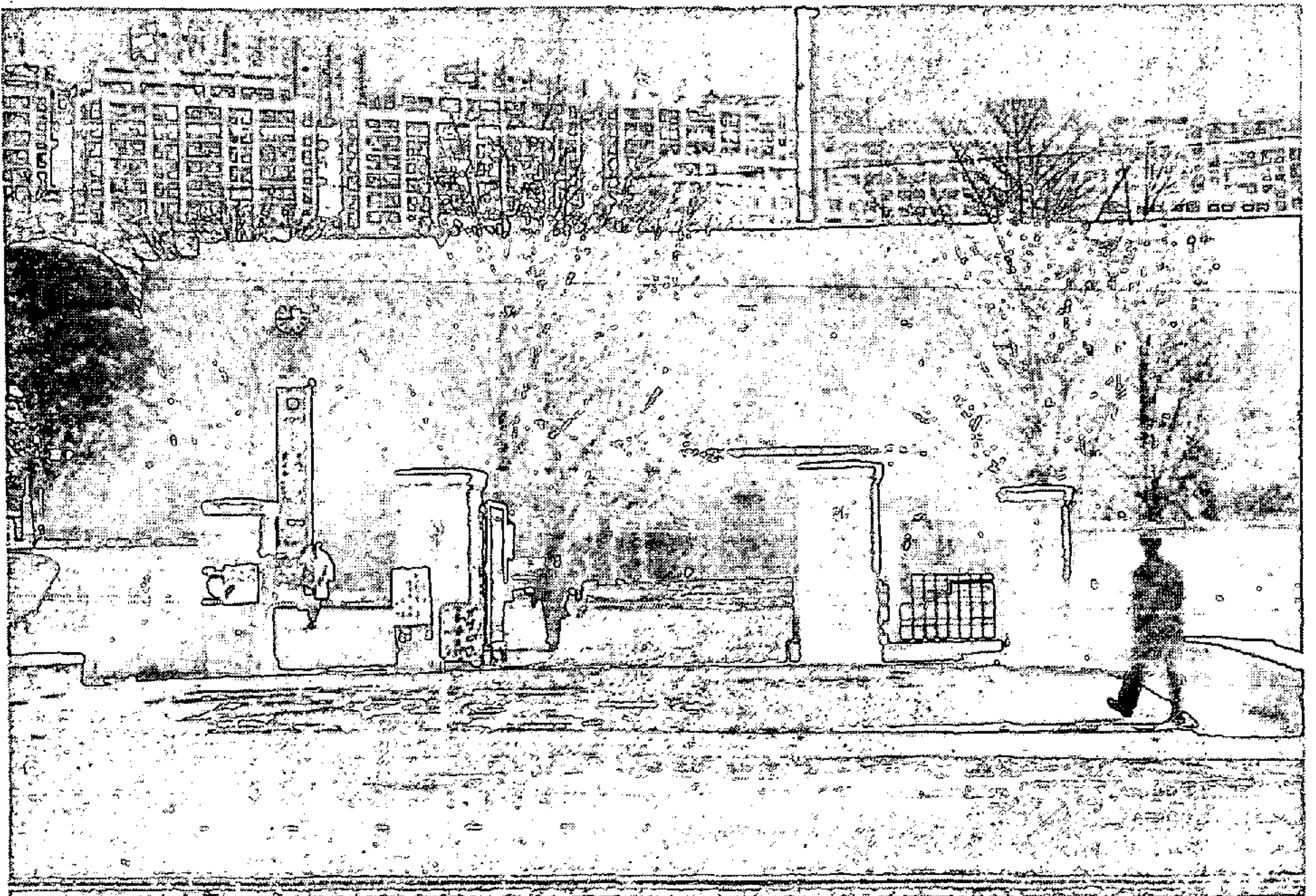
총 장



본 부



서울대학교 학생



서울대학교 정문

I. 연 표

여 백

1. 연 혁

1. 1945년 8·15 해방의 역사적 전환기를 계기로하여 새 독립국가건설을 위한 민주주의적 제반개혁과 아울러 기존 교육시설의 재편 및 그 확충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최고학부인 대학교육의 제도 및 그 운영에 있어서도 질적향상과 양적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대적 일대 종합대학을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하에 1946년 8월 22일자로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이 공포되고 이에 의하여 본교는 대학원 외에 다음과 같은 9개 단과대학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문리과대학 경성대학 법문학부 문과계통과 동 이공학부 이과계통의 통합
 개편

법과대학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과계통과 경성법학전문학교의 통합개편

공과대학 경성대학 이공학부 공과계통과 경성공업전문학교(경성고등공업학교) 및 경성광산전문학교의 통합개편

의과대학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개편

농과대학 수원농림전문학교(수원고등농림학교)의 개편

상과대학 경성경제전문학교(경성고등 상업학교)의 개편

치과대학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개편

사범대학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의 통합개편

예술대학 (미술부·음악부) 신설.

2.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본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한 국립종합대학교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3. 1949년 12월 31일 우리나라 민주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법이 공포되자 본교는 서울대학교로 개칭되었다.

4. 1950년 6월 25일 제 1학기 등록기간중 6·25사변 발발로 인하여 전 교직원과 학생은 분산 피난하게되고 대학의 운영은 일시 중단되었다.

5. 1950년 9월 28일 수도탈환이후 정부환도에 따라 본교는 복구사업에 진

력하게 되었다.

6. 1950년 9월 30일 현안중이던 사립서울약학대학의 편입이 실현되어 본교는 도합 10개 단과대학을 가지게 되었다.
7. 1950년 11월 문교부방침에 의하여 서울시내 타대학과 공동으로 문학부, 이학부, 공학부, 법정경상학부, 의학부, 약학부등 6학부의 연합강의가 실시되었다.
8.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본교는 정부와 함께 부산시에 남하하였다.
9. 1951년 2월 19일 부산에서 본교는 응급 조치로 연합강의의 형식을 취하여 수업을 계속하였다.
10. 동년 5월 4일자 문교부령 제 19호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본교도 전시연합대학체제로 운영하게되고 각지에 산재한 본교 재학은 대구, 전주, 광주, 대전 등 각 지방 전시연합대학 혹은 타대학에서 각각 등록수강하게 되었다.
11. 1951년 9월 제 2 학기를 계기로 농과대학만은 수원 본교로 복귀 개강하게 하는 한편 복귀가 불가능한 잔여 각 대학을 위하여 부산지구에 임시교사를 신축하고 수업을 실시하였다.
12. 1952년 3월 25일 전시연합대학이 해체되자 지방에서 수강하던 본교생은 전부 부산 본교로 복귀하게 하였다.
13. 1952년 4월 23일 대통령령 제 623호로 교육법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교는 교과를 개편하는 동시에 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내용의 혁신을 기하였다.
14. 1952년 6월 27일 전화로 인하여 파손된 본교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재건 후원재단을 설립하고 동 재단이사회를 조직하여 본교 재건부흥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5. 1953년 4월 18일 교육공무원법이 법률 제 285호로서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교 전 교직원의 자격 임명 복무등에 관한 기준이 확립되었다.
16. 1953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 780호로 공포된 국립학교설치령이 시행

됨에 따라 농과대학 수의학부는 수의과대학으로 예술대학의 미술부와 음악부는 각각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으로 승격개편되어 본교는 대학원외에 12개 단과대학을 가지게 되었다.

17. 1953년 8월 7일 정부기관이 환도함에 따라 본교도 복귀업무를 개시하여 10월 17일 이를 완료하였다.

18. 1953년 9월 15일 본교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미 제 8군사령부로부터 본부와 부속도서관, 박물관, 문리과대학, 법과대학등 건물을 인수하였다.

19. 1954년 2월 10일 수의과대학 부속가축병원을 동 대학내에 설치개원하였다.

20. 1954년 9월 5일 F.O.A. 대학원조자금에 의하여 본교 공과대학 농과대학, 의과대학의 연구시설 복구와 기술계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와 본교간에 기술원조협정이 체결되었다.

21. 1955년 4월 4일 교육법 제 117조에 의하여 본교에 평의원회가 설치되었다.

22. 1956년 12월 10일 주한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역사를 교수하여 국제적 이해와 우의를 돈독케 하기 위하여 본교에 한국어강좌를 개설하였다.

23. 1957년 5월 1일 학생의 건강관리와 질병진료를 위하여 본교에 보건진료소를 개설하였다.

24. 1959년 1월 13일 대통령령 제 1430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교에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이 신설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개강하였고 의과대학 부속 간호고등기술학교는 1961년 3월 31일자로 폐교되었다.

25. 1959년 8월 17일 중구 을지로 6가 소재 약학대학 교사와 종로구 연전동소재 음악대학 교사를 상호교환하여 각각 이전하였다.

26. 1960년 3월 5일 문교부의 인가를 얻어 동년 4월 1일부터 대학원 외 교학과를 신설하였다.

27. 1960년 10월 10일 서울대학교학칙이 개정되어 미술대학 미학과가 문

리과대학 문학부로 이관되었다.

28. 1961년 2월 27일 국무원령 제 211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과대학에 한국경제연구소와 미술대학에 부속실습장을 두고 문리과대학에 고고인류학과와 미술대학에 예술학과를 각각 신설하여 1961년 4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29. 1961년 4월 6일부터 대학원 생물학과를 식물학과와 동물학과로 각각 독립된 학과로 분리시키고 통신공학과를 전자공학과로 개칭하였다.

30. 1961년 5월 5일 국무원령 제 254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개정되어 부속도서관에 서무과, 사서과 및 열람과가 설치되었다.

31. 1961년 9월 1일 법률 제 708호에 의하여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 3조 및 1961년 12월 9일 각령 제 283호로 공포된 학교정비기준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과 또는 신설되었다.

가. 사범대학의 교육심리학과와 교육행정학과, 국어과, 외국어과, 일반사회과, 역사과, 지리과, 수학과, 물리과, 화학과, 생물과 및 지학과의 12과와 미술대학의 예술학과가 폐지되고 사범대학에 과학과와 사회생활과를 신설하여 1962학년도부터 개강하였다.

나. 수의과대학이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병합되었다.

다. 상과대학에 경영학과를 신설하여 1962학년도부터 개강하였다.

32. 1962년 2월 17일 각령 제 455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가. 사범대학원이 신설되어 1962년 4월 1일부터 개강하였고

나. 학생지도연구소가 설치되어 1962년 3월 12일 발족하였으며

다. 교육대학이 병설되어 1962년 4월 1일부터 개강함과 동시에 동대학에 부속국민학교가 설치되었다.

33. 교육연수원이 본교에 병설되어 1962년 3월 12일부터 개학하였다.

34. 1962년 12월 31일 각령 제 1133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기관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학과를 증설하였다.

가. 어학연구소와 신문연구소를 신설하여 어학연구소는 63년 1월 1일부터 신문연구소는 63년 3월 25일부터 각각 발족하였다.

나. 본교에 병설되었던 교육대학과 교육연수원이 63년 3월 1일로 각각 폐지되었다.

다. 공과대학에 공업교육학과, 농과대학에 농업교육학과, 사범대학에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외국어교육과가 증설되어 63년 3월 1일 부터 개강하였다.

35. 1963년 4월 12일 각령 제 1268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육대학원이 신설되어 동일자로 개학하였다.

36. 1963년 7월 1일 다음과 같은 연구소가 교내기구로 부설되었다.

공과대학 전력연구소

문리과대학 해양생물연구소, 동아문화연구소

법과대학 한국법학연구소

의과대학 결핵연구소, 암연구소, 풍토병연구소

보건대학원 보건통계연구소

37. 1963년 12월 16일 각령 제 1739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과대학에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가 증설되어 1964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38. 1964년 3월 13일 대통령령 제 1719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과대학의 응용화학과를 화학응용과로 개칭하여 1964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39. 1965년 2월 1일 서울대학교 종합계획 건설위원회가 총장자문을 위한 교내기구로서 발족하였다.

40. 1965년 3월 1일 다음과 같은 연구소가 교내기구로서 부설되었다.

의과대학 국민체력과학연구소

상과대학 한국경영연구소

41. 1965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 2059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과대학의 화학응용과를 응용화학과로 개칭하여 1965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42. 1965년 7월 1일 공과대학 부설 전력연구소를 폐지하고 이에 대체하여

응용과학 연구소를 부설하였다.

43. 1965년 7월 9일 대통령 제 2171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 보건진료소를 법정기구화하였고

나. 사무국에 계획조사과와 관리과를 증설하여 1965년 12월 15일부터 집무하였다.

다. 동일 또는 유사한 단과대학과 그 부속학교 및 부속시설의 과를 각각 통합할 수 있게하고 기타의 대학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였다.

라. 부속도서관에 조사과를 증설하여 1965년 9월 1일부터 집무하고 필요에 따라 분관을 둘수 있게하여 1966년 2월 18일에 공학, 농학, 문리, 미술, 법률, 교육, 상경, 약학, 음악, 의학, 치의학, 행정도서관 및 1968년 4월 1일 교양, 신문도서관의 발족을 보았다.

44. 1965년 8월 31일 문리과대학에 인구문제연구소가 교내기구로 부설 되었다.

45. 1965년 11월 24일 대통령령 제 2310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경영대학원이 신설되어 1966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46. 1965년 12월 17일 대학원학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석사과정에 천문기상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응용미술학과, 박사과정에 지질학과, 광산학과, 농학과, 농생물학과, 농공학과, 핵공학과, 축산학과, 농경제학과 임학과가 증설되었다.

47. 1966년 2월 25일 기획처가 본교 종합계획의 연구 발전 추진과 운영및 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교내기구로서 발족하였다.

48. 1967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 3303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신문대학원과 교양과정부가 신설되어 1968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고 신문연구소가 신문대학원 부속연구소로 되었다.

49. 1968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종합 10개년 계획을 대통령이 재가하여 동 7월 19일자 법률 제 2034호로 서울대학교 시설 확충 특별회계법이 제

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공포 되었다.

50. 1968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 3535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사무국에 종합시설과가 증설되었다.

51. 1968년 10월 17일 대통령령 제 3613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가 신설되어 1969년 3월 1일부터 개교 하였다.

52. 1968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 3681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가. 가정대학이 신설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가 설치되었 고

나. 공과대학에 생산기계공학과, 재료공학과가 증설되었고

다. 문리과대학 사학과가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국사학과로 되었고

라. 사범대학에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가 증설되는 한편 가정과가 폐지되었고

마. 상과대학에 상학과가 폐지되었다.

53. 1969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 4473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 학생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 공과대학 광산학과를 자원공학과로 명칭변경하였고

다. 농과대학에 임산가공학과를 증설하였고

라. 문리과대학 미학과, 종교학과를 철학과로 통합하였으며 미생물학과를 증설하였다.

54. 1970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 4870호로 서울대학교설치령이 제정공포 되어 본교 종합 10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 부총장산하에 사무국, 교무처, 학생처, 사무국에 총무과, 경리과, 예산담당관, 교무처에 교무과, 학적과, 학생처에 장학과, 지도과; 건설본부장산하에 관리국, 건설국, 관리국에 기획과, 관리과, 건설국에 행정과, 시설과, 총장자문기관으로 기획위원회.

2. 역 대 총 장

본교는 개교 이래 약 20년간에 11인의 총장과 3인의 총장직무대리로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으뜸인 오늘의 서울대학교를 건설한 것은 오직 역대총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룩된 것이라 하겠다.

제 1 대 해리 B. 앤스텔 박사

미군정시대 1946. 8. 22.부터 1947. 10. 25.까지 초대 총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본교창설 및 초창기에 있어서 특히 현대교육의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1961년 미국에서 서거하였다.

제 2 대 李 春 昊 선생

미군정으로 부터 과도정부시대인 1947. 10. 25.부터 1948. 5. 12.까지 재직하였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연세대학교 교수, 문교부장관 고문등을 역임한바 있고 6·25 동란시 이북에 피납되어 현재 생존여부를 알 수 없다.

제 3 대 張 利 郁 박사

1948. 5. 12. 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 1. 4. 까지 재직하였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한때 대한민국 주미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제 4 대 崔 奎 東 선생

1949. 1. 4. 부터 1950. 10. 6. 까지 재직하였으며 대한민국정부로서 직접 임명한 최초의 총장이었다.

근대에 가장 이름이 높은 교육가로서 2개의 중·고등학교를 창설하였으며, 본교에 재직중 6·25 전란으로 이북에 납치되어 그곳에서 향년 70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고 한다.

金 斗 憲 박사

본교 임시관리 책임자로 당시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으로 재직하면서 1950. 10. 6. 부터 1951. 9. 3. 까지 6·25 동란중에 겸임하였다.

일본 동경대학을 졸업하였고 본교 교수, 전북대학교 및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한바 있다.

제 5 대 崔 奎 南 박사

1951. 9. 3. 부터 1956. 6. 2. 까지 재직하였다.

미국 미쉬간 주립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본교 교수, 문교부 차관 및 장관을 역임한바 있고 한때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활약하였다. 본교의 재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공로가 지대하였다.

제 6 대 尹 日 善 박사

1956. 7. 19. 부터 1961. 9. 30. 까지 재직하였다.

일본 경도제국대학을 졸업하였고 본교 교수, 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본교 명예교수로 재임중이며 병리학을 담당하고 있다.

근 40년간을 교육과 의학계에 봉사한 원로의 한분이다.

柳 洪 烈 박사

본교 교무처장으로 재직중 1961. 9. 30. 부터 1961. 12. 7. 까지 총장직무 대리로 직무하였다.

본교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였고 본교 교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사계의 권위있는 사학가이다.

제 7 대 權 重 輝 박사

1961. 12. 7. 부터 1964. 6. 9. 까지 재직하였다. 일본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하였고 본교 교수, 학생처장을 거쳐 외국어대학학장을 역임한 바 있고 본교

총장에 취임하였으며 현재까지 36년간을 교육에 바친 사계의 권위있는 영문학자이다.

徐 明 源 박사

본교 교무처장으로 재직중 1964. 6. 9. 부터 1964. 6. 23. 까지 총장 직무대리로 직무하였다. 경성대학교와 미국 조지, 피바디 사범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이화여자대학 교수를 거쳐 본교 교수, 문교부 차관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본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제 8 대 申 泰 煥 박사

1964. 6. 24. 부터 1965. 8. 27. 까지 재직하였다. 일본 동경상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연세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교수를 거쳐 본교 교수, 법과대학장, 건설부장관, 경제과학심의회 위원 역임하였으며 사계의 권위 있는 경제학자의 한분이다.

제 9 대 劉 基 天 박사

1965. 8. 27. 부터 1966. 11. 10. 까지 재직하였다.

일본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하였고 일본 동북제국대학,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수를 거쳐 본교 교수, 교학국장(이후 교무처장)을 역임하였고 법과대학장 겸 사범대학원장 재직중 총장으로 취임한 분으로 일찍이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저명한 형법학자의 한분이다.

제 10 대 崔 文 煥 박사

1966. 11. 10. 부터 1970. 11. 10. 까지 재직하였다.

일본 와세다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고려대학교 및 본교 문리과대학 교수를 거쳐 상과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재직중 총장에 취임한 분으로 본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저명한 경제학자의 한분으로서 본교 및 학계 발전에 많은 활약과 공헌을 하였다.

제 11 대 韓 沁 錫 박사

1970. 11. 11. 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 경성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본교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경성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를 거쳐 미국 미
네소타 대학교에서 연수하였고 의대부속병원장, 의과대학장을 역임한 바 있
으며 본교 세번째 부총장에 취임하여 재직중 총장에 취임하였다. 앞으로 본
교 종합10개년계획 추진에 많은 활약과 공헌이 기대되고 있다.

여 백

II. 기 구

여 백

1. 평 의 원 회

교육법 제 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두고 있다.

평의원회는 단과대학의 학장, 대학원장, 교수 및 교육계의 저명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중요 심의사항으로서는 대학 또는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와 폐지 운영과 그 교원조직에 관한 사항,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 연구비, 장학금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교 운영과 관련있는 중요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정원은 15명이다.

2. 학 장 회

학장회는 총장의 자문기관으로 본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본교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교양과정부장포함), 처장, 사무국장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부, 학과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입학, 수료 및 졸업, 시험, 장학과 장학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3. 인 사 위 원 회

교육공무원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대학교에 대학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학 인사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대학(교양과정부 포함)의 학장과 각 대학교수회에서 호선된 각 1인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위.

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명 또는 전보를 제청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 조교를 임명하고자 할 때 그 임명제청, 전보제청 또는 임명의 동의에 관한 사항 대학원장, 학장(교양과 정부장포함)의 임용, 제청을 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2년이며 중임할수있다.

4. 대 학 교 본부

위 치 :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동 31번지

조 직 :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과 2처 3국 10과 1담당관.

기 능 : 각대학원, 대학, 각종연구소, 부속기관을 통괄하며 지도 감독한다.

총장은 본교를 대표하며 부총장은 총장유고시 총장을 대리한다. 건설본부장은 본교 종합10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70. 4. 8.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신설된 기관으로 관리국과 건설국을 관장한다. 건설본부장은 별정직으로 보한다.

사무국장 밑에 총무과, 경리과, 예산담당관을 두며 총무과는 보안, 인사, 관인관수, 문서관리, 법령, 예규 등 본교의 일반적인 사항을 수행하며. 경리과는 세입, 세출, 결산, 연금 물품관리, 외자관리, 영선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예산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 심사분석, 자체감사, 예산관리 및 통계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직접보좌한다.

교무처장 밑에 교무과와 학적과를 두고 교무과는 대학, 대학원,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와 폐지, 수업, 시험, 학점, 성적, 학생정원과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학적과는 입학과 졸업, 학위, 휴학, 복학, 퇴학, 전학, 전과, 등록, 학적부의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다. 교무처장은 교수가 겸직한다.

학생처장 밑에 장학과와 지도과를 두고 장학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후생, 장학금, 간행물, 학비, 학생증, 졸업생의 취직알선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지도과는 학생의 동원과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다, 학생처장은 교수가 겸직한다.

관리국장 밑에 기획과와 관리과를 두며 기획과는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관리개선, 비상계획, 학사행정 연구자료의 수집, 기획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관리과는 재산의 처분, 취득 및 보관에 관한사항을 수행한다.

건설국장 밑에 행정과와 시설과를 두며 행정과는 종합계획관계의 물품구입, 공사계약의 체결, 시설자재의 관리 사무를 수행하며 시설과는 종합계획관계의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수행한다.

본부에는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 2처장 3국장을 위시한 일반직원 149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획위원회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총장의 자문기관으로 본교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심의한다.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1인 이내로 구성한다.

5. 대 학 과 대 학 원

각대학(교양과정부포함 이하같다)과 각대학원에는 각기 대학 또는 대학원의 업무를 통할하는 대학장(교양과정부포함 이하같다)과 대학원장이 있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과, 교무과, 학생과의 3과를 두고 있다. 서무과는 보안, 관인관수, 인사, 서무, 회계 등 사무를 교무과는 학사사무를 학생과는 주로 학생의 장학, 보건, 후생, 병사 및 기타 지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각 학과 또는 전공에는 과주임교수를 배치하고 부속시설에는 장을 두어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각 대학장, 각 대학원장, 각 과장, 과주임교수 및 부속시설의 장은 그 대학 또는 그 대학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조교수가 겸직하고 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써 보도하도록 되어 있다.

각 대학과 각 대학원에는 조교수 이상으로 조직되는 교수회를 두고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입학, 수료 및 졸업, 시험, 학생의 상벌, 장학금의 급여, 기타 교육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각 대학원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공과대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능동 172 번지에 위치하며 현재 18개의 학과와 부속공장을 설치하고 있다. 학생정원은 3,200 명이며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33 명, 일반직원 104 명, 합계 237 명이다.

농과대학은 수원시 서둔동 103 번지에 위치하며 14 개의 학과와 부속농장, 부속가축병원, 부속연습림, 부속동물사육장을 두고 있다. 학생정원은 1,360 명이며,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17 명, 일반직원 92 명, 합계 209 명이다.

문리과대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31번지에 위치하며 문학부 17, 이학부에 9, 도합 26 개의 학과를 두고 있으며, 학생 정원은 1,940 명이고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43 명, 일반직원 55 명, 합계 198 명이다.

문학부장, 이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직한다.

미술대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 번지에 위치하며 3 개의 학과와 부속실습장을 두고 있으며 학생정원은 280 명이고 이에 종사하는 교원 25 명 일반직원 11 명, 합계 36 명이다.

법과대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1 번지에 위치하며 2 개의 학과에 학생정원은 640 명이고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24 명, 일반직원 23 명; 합계 47 명이다.

사범대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0 번지에 위치하며 7 개의 학과

에 학생정원은 1,640명이고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96명, 일반직원 30명 합계 126명이다. 또한 부속시설로서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여자중학교, 부속국민학교가 있다.

부속고등학교에는 학생 1,260명과 교원 50명 일반직원 9명, 합계 59명이 있다.

부속중학교에는 학생 1,470명과 교원 40명, 일반직원 7명, 합계 47명이 있다.

부속여자중학교에는 학생 1,680명과 교원 40명, 일반직원 6명 합계 46명이 있다.

부속국민학교에는 학생 1,080명과 교원 25명, 일반직원 8명, 합계 33명이 있다.

상과대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9번지에 위치하며 3개의 학과와 한국경제연구소 한국경영연구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학생정원은 780명,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44명, 일반직원 25명, 합계 69명이다.

약학대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에 위치하며 2학과와 부속 약초원 및 부속 실습약국이 있고, 학생정원은 320명,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32명, 일반직원 14명, 합계 46명이다.

음악대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6가 18번지에 위치하며 4개 학과에 학생정원은 480명이고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39명, 일반직원 14명, 합계 53명이다.

의과대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에 위치하며 3개 학과에 학생정원은 1,040명이며 그중 의예과 320명은 문리대에서 수용한다.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44명, 일반직원 42명, 합계 186명이다. 또한 부속병원에는 원장 밑에 서무과와 간호과 및 약국을 두고 있으며 임상각과 외에 중앙진료시설의 중앙방사선실외 7실을 두고 있다.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는 의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이 진료업무를 위하여 겸직하며 일반직원 286명이 병원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치과대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에 위치하며 2개 학과에 학생정원은 600명이며 그중 치의예과 200명은 문리대에서 수용한다.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56명, 일반직원 33명, 합계 89명이다. 부속시설로서 부속 병원이 있으며 운영의 일체를 치과대학에서 관장하고 있다.

가정대학은 사범대학 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 학과에 학생정원은 360명이며,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1명, 일반직원 4명, 합계 15명이다.

교양과정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능동 172번지에 위치하며 1968년 3월 1일에 개설되어 현재 미술대학, 음악대학, 사범대학 체육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치과대학 치의예과 학생을 제외한 제 1학년 학생의 교양과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각대학 제 2학년 전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양과정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77명 일반직원 18명 합계 95명이다.

대학원은 문리과 대학 구내에 있으며 석사과정 64학과와 박사과정 43학과에 학생정원은 석사과정 850명, 박사과정 287명이다. 전임교원으로서는 원장 1명 뿐이며 일반직원 10명을 두고 있다.

대학원의 교육은 주로 각대학에 소속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경영대학원은 상과대학구내에 있으며 경영학과 석사과정에 학생정원은 240명이다. 특히 수업을 1부(주간)와 2부(야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1966년 3월에 개설 전임교직원 6명 일반직원 15명 합계 11명이다.

교육대학원은 사범대학 구내에 있으며 교육학 석사과정으로 23개의 전공을 두고 있고 학생정원은 200명이다. 특히 수업을 1부(주간)와 2부(야간)로 나누어하며 계절수업을 할수있다. 1963년 4월말에 개설, 전임교원 10명 일반직원 6명, 합계 16명이 있다.

보건대학원은 의과대학구내에 있으며 보건학석사과정으로 8개의 전공을 두고 있고 학생정원은 140명이다.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8명, 일반직원 8명, 합계 26명이다.

사법대학원은 1962년 2월 17일 각령 제 455 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으로 동년 4월 1일부터 개강하여 1970년 12월 31일까지 13기생을 배출하였는데, 1970년 8월 7일 법률 제 2222 호에 의거 법원조직법이 개정, 사법시험합격자에 대한 교육을 대법원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문을 닫게 되었다.

신문대학원은 법과대학 구내에 있으며 문학석사과정과 신문연구소를 두고 있고 학생정원은 120명이다. 이에 종사하는 전임교원은 9명 일반직원 7명, 합계 16명이다.

행정대학원은 법과대학 구내에 있으며 행정학 석사과정과 도시계획학 석사과정 2개 학과에 학생정원은 270명이다.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20명, 일반직원, 14명, 합계 34명이다.

참 고 :

이상에서 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 그리고 부속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를 말한 것이며 일반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공용직을 말한 것이며 인원수는 정원임.

전기한 교원 외에 본교 전임이 아닌 시간강사를 매년 약 800명 정도를 위촉하여 수업을 담당케 하고 있으며 각기관의 실정에 따라 다수의 임시직원을 두어 일반 사무를 보조하고 있음.

6. 부 설 기 관

여기에서 부설기관이라 함은 각 대학이나 각 대학원에 속하지 아니하고 본교에 부설된 기관을 말한다.

부 속 도 서 관

도서관의 업무를 통괄하는 관장과 관장을 보조하는 서무과, 사서과, 열람과, 조사과의 4과를 두어 각기 직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전임 교원은 관장이외에 조교 2명뿐이며 일반직원은 30명, 합계 32명이 있다.

관장은 본교 교수중에서 겸보한다.

도서관의 발전과 운영방법의 연구개선을 임무로 제반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있다.

부속도서관의 분관으로 공과대학에 공학도서관, 농과대학에 농학도서관,

문리과대학에 문리도서관, 미술대학에 미술도서관, 법과대학에 법률도서관, 사범대학에 교육도서관, 상과대학에 상경도서관, 약학대학에 약학도서관, 음악대학에 음악도서관, 의과대학에 의학도서관, 치과대학에 치의학도서관, 교양과정부에 교양도서관, 신문대학원에 신문도서관, 행정대학원에 행정도서관을 두고 있다.

부 속 박 물 관

박물관의 업무를 통할하는 관장외에 일반직원 3명을 배치하고 있다.

관장은 본교 교수중에서 겸보하고 있으며 고증 및 평가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위원회를 두고 있다.

보 건 진 료 소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통할하는 소장의 일반직원 2명을 배치하고 있다.

법 학 연 구 소

법학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는 소장의 교직원 6명과 일반직원 2명 합계 8명이 있다.

생 약 연 구 소

생약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는 소장 외에 연구 교원 10명, 일반직원 8명, 합계 18명을 배치하고 있다.

시험장(약초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암시로 이에 책임자를 배치하고 있다.

어 학 연 구 소

어학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는 소장 이외에 교원 8명, 일반직원 6명, 합계 14명을 배치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는 어학훈련과정을 설치하여 어학연구생을 훈련하고 있다.

학생지도연구소

학생지도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는 소장 이외에 교원 6명, 일반직원 6명 합계 12명을 배치하고 있고 연구부, 교육훈련부, 지도상담부, 서무실을 두고 있다.

7. 기 관 장 명 단

본	부	총	장	韓	沁	錫	내	과	학	의	학	박	사			
		부	총	閔	丙	久	금	용	론	경	제	학	박	사		
		전	설	李	勳	變										
		본	부	李	哲	洙										
		교	무	金	哲	洙	유	체	역	학	이	학	박	사		
		학	생	李	賢	宰	이	론	경	제	학	경	제	학	박	사
		사	무	李	揆	益										
		관	리	金	道	淵										
		건	설	金	洛	執										
		국	장	李	崇	寧	국	어	학	문	학	박	사			
대	학	원	원	李	黃	炳	공	업	경	제	학	경	제	학	박	사
경	영	대	학	원	李	鍾	영	문	학	문	학	박	사			
교	육	대	학	원	李	鍾	영	문	학	문	학	박	사			
교	육	대	학	원	金	仁	에	방	의	학	의	학	박	사		
보	건	대	학	원	金	仁	에	방	의	학	의	학	박	사		
보	건	대	학	원	李	漢	국	제	법	법	학	박	사			
사	법	대	학	원	李	漢	국	제	법	법	학	박	사			
사	법	대	학	원	金	圭	신	문	학	사	회	학	박	사		
신	문	대	학	원	金	圭	신	문	학	사	회	학	박	사		
신	문	대	학	원	金	雲	정	치	학	문	학	박	사			
행	정	대	학	원	金	雲	정	치	학	문	학	박	사			
행	정	대	학	원	金	熙	내	연	기	관	공	학	박	사		
공	과	대	학	학	金	熙	내	연	기	관	공	학	박	사		
공	과	대	학	학	金	熙	내	연	기	관	공	학	박	사		
농	과	대	학	학	表	鉉	채	소	원	에	학	농	학	박	사	
농	과	대	학	학	表	鉉	채	소	원	에	학	농	학	박	사	
문	리	과	대	학	高	柄	동	양	사	철	학	박	사			
문	리	과	대	학	高	柄	동	양	사	철	학	박	사			
미	술	대	학	학	金	鍾	조	각								
미	술	대	학	학	金	鍾	조	각								
법	과	대	학	학	徐	燉	상	법	법	학	박	사				
법	과	대	학	학	徐	燉	상	법	법	학	박	사				
사	법	대	학	학	徐	明	교	육	학	교	육	학	박	사		
사	법	대	학	학	徐	明	교	육	학	교	육	학	박	사		
상	과	대	학	학	邊	衡	계	량	경	제	학	경	제	학	박	사
상	과	대	학	학	邊	衡	계	량	경	제	학	경	제	학	박	사
약	학	대	학	학	金	泳	생	물	화	학	약	학	박	사		
약	학	대	학	학	金	泳	생	물	화	학	약	학	박	사		
음	악	대	학	학	李	惠	국	악	문	학	박	사				
음	악	대	학	학	李	惠	국	악	문	학	박	사				
의	과	대	학	학	權	彝	에	방	의	학	의	학	박	사		
의	과	대	학	학	權	彝	에	방	의	학	의	학	박	사		
치	과	대	학	학	金	周	구	강	진	단	학	의	학	박	사	
치	과	대	학	학	金	周	구	강	진	단	학	의	학	박	사	
가	정	대	학	학	張	明	가	정	교	수	법					
가	정	대	학	학	張	明	가	정	교	수	법					
교	양	과	정	부	閔	錫	서	양	사							
교	양	과	정	부	閔	錫	서	양	사							

부속도서관	관	장	全	濟	玉	영문학	
부속학물관	관	장	李	萬	甲	사회학	
보건진료소	소	장	車	喆	煥	예방의학	의학박사
법학연구소	소	장	鄭	熙	喆	상법	법학박사
생약연구소	"		禹	麟	根	식물화학	약학박사
어학연구소	소	장	金	鍾	云	영문학	
학생지도연구소	소	장	李	義	喆	심리학	철학박사
재외국민연구소	소	장	閔	錫	泓	서양사	
신문대원소	소	장	金	圭	煥	신문학	사회학박사
농부속대농학장	장	장	李	殷	雄	작물학	농학박사
농부속연습학림	림	장	金	甲	德	수목학	농학박사
농부속가축병학원	원	장	鄭	昌	國	수의외과학	수의학박사
농부속동물사육학장	장	장	陸	鍾	隆	낙농학	농학박사
미술헌실습학장	"		閔	哲	泓	공예미술	
사부속고등학교	교	장	金	永	起		
사부속중학교	"		安	秉	績		
사부속여중학교	교	장	李	豐	基		
사부속국민학교	교	장	崔	三	俊		
상한과대연구소	소	장	趙		淳	경제학	경제학박사
약부속약초학원	원	장	鄭	普	燮	생약학	약학박사
약부속실습약국	국	장	禹	鍾	鶴	약제학	약학박사
의부속대병대병원	원	장	金	弘	基	이인후과학	의학박사
의부속대병대병원	"		金	奎	植	구강외과학	의학박사

8. 교 직 원 명 단

(1971. 3.30 현재)

대학교 본부

총 장		韓 沁 錫	내 과 학	의 학 박사
부 총 장		閔 丙 久	금 용 론	경제학박사
건설본부장		李 勳 燮		
교무처장	교 수	金 哲 洙	유 채 역 학	이 학 박사
학생처장	교 수	李 賢 宰	이론경제학	경제학박사
사무국장	이 사 관	李 揆 益		
관리국장	부 이 사 관	金 道 淵		
건설국장	부 이 사 관	金 洺 執		
총무과장	서 기 관	張 錫 連		
	행정사무관	林 鍾 大		
	행정사무관	李 浦 榮		
	행정사무관	姜 基 洪		
경리과장	서 기 관	金 益 泰		
	행정사무관	辛 宗 泰		
	행정사무관	金 均 盛		
예산담당관	서 기 관	李 相 榮		
	행정사무관	金 俊 經		
교무과장	서 기 관	李 海 明		
	행정사무관	鄭 郭 熙		
	행정사무관	郭 振 熙		
학적과장	서 기 관	許 萬 福		
	행정사무관	李 倫 浩		
장학과장	서 기 관	金 次 巖		
	행정사무관	金 仁 浩		
지도과장	서 기 관	崔 烈 坤		
	행정사무관	金 榕 熙		
기획과장	서 기 관	金 榮 洙		
	행정사무관	睦 世 均		

관리과장	서기관	鄭 燦	瑋
	행정사무관	安 鳳	俊
행정과장	서기관	張 基	龍
	행정사무관	金 通	元
시설과장	건축기좌	權 重	斗
	토목기좌	金 鄭	林
	전기기좌	金 聖	棋

대 학 원

원 장	교 수	李 崇 寧	국 어 학	문 학 박 사
교무과장	"	申 東 薰	생 리 학	의 학 박 사
학생과장	교 수	洪 淳 佑	식 물 형 태 학	이 학 박 사
서무과장	행정사무관	徐 永 煥		

경영대학원

원 장	교 수	黃 炳 峻	공 업 경 제 학	경 제 학 박 사
교무과장	"	沈 炳 求	경 영 학	
학생과장	조 교 수	金 正 年	수 리 경 제 학	
서무과장	행정사무관	任 正 彬		
	전 임 강 사	郭 秀 一	생 산 관 리	

교육대학원

원 장	교 수	李 鍾 洙	영 어 영 문 학	문 학 박 사
교무과장	교 수	李 榮 德	교 육 학	철 학 박 사
학생과장	교 수	李 燦	지 리 학	철 학 박 사
서무과장	행정사무관	呂 乙 九		
교육도 서관장	조 교 수	金 永 植	교 육 학	철 학 박 사
	"	朴 容 憲	심 리 학	철 학 박 사

보건대학원

원 장	교 수	金 仁 達	예 방 의 학	의 학 박 사
-----	-----	-------	---------	---------

교무과장	조 교 수	高 應 麟	보건통계학	의 학 박 사
학생과장	"	鄭 文 植	환경위생학	
서무과장	행정사무관	李 銓 鎭		
	부 교 수	朴 亨 鍾	보건교육학	의 학 박 사
	조 교 수	金 泰 龍	모자보건학	"
	"	許 程 圭	보건행정학	"
	"	盧 忍 圭	역 학	"
	"	金 貞 順	역 학	"
	"	金 正 璟	보건통계학	
	"	李 吉 遠	보건간호학	
	전 임 강 사	姜 李 子	모자보건학	의 학 박 사
	"	李 弘 善	환경위생학	
	"	李 善 在	보건간호학	
	"	任 韓 達	보건교육학	
	"	洪 在 玉	보건행정학	
	"	文 綸	보건행정학	

신문대학원

원 장	교 수	金 圭 煥	매스컴이론	사회학박사
교무과장	조 교 수	李 相 禧	매스컴특강	
학생과장	부 교 수	朴 有 鳳	신 문 론	철 학 박 사
서무과장	행정사무관	張 基 宣		
신문 도서관장	조 교 수	金 一 鐵	매 스 컴 석 조사 분석	철 학 박 사
	부 교 수	林 根 洙	매 스 컴 사	문 학 박 사
	조 교 수	吳 甲 煥	도 미 중	
	전 임 강 사	趙 明 翰	의 미 론	

행정대학원

원 장	교 수	金 雲 泰	정 치 학	문 학 박 사
-----	-----	-------	-------	---------

교무과장	부 교 수	趙 錫 俊	조직이론	정치학박사
학생과장	조 교 수	姜 信 澤	행정이론	정치학박사
서무과장	행정사무관	金 善 晤		
	교 수	李 漢 彬	발전행정	철학박사
	"	盧 隆 熙	지방행정	
	"	朴 東 緒	인사행정	정치학박사
	"	俞 焄 焄	재무행정	정치학박사
	"	徐 元 宇	행정법	
	부 교 수	金 海 東	조사방법론	
	"	安 海 均	공공관계론	
	"	崔 鍾 起	국제행정	
	"	李 雄 根	회계학	경제학박사
	조 교 수	權 泰 竣	계획법	
행정도서관장	"	黃 仁 政	발전계획	행정학박사
	"	吳 錫 泓	조직이론	행정학박사

공과대학

학 장	교 수	金 熙 喆	내연기관	공학박사
교무과장	교 수	池 哲 根	조명공학	공학박사
학생과장	부 교 수	申 鉉 干	수 학	이학박사
서무과장	서 기 관 수	朴 起 生		
도서관장	교 수	金 魯 洙	염색학	공학박사
	"	羅 益 榮	분석화학	
	"	鄭 鳳 浹	수 학	
	"	朴 商 朝	구조공학	
	"	崔 浩 英	비철야금학	
	"	洪 準 箕	채 광 학	
	"	禹 範 植	직물구조학	
	"	金 汝 尙	편조공학	

교수	李	樑	고체역학	공학박사
"	丁	桂	고전압공학	공학박사
"	金	極	화약발파학	
"	申	卿	산알카리및 화학비료	공학박사
"	金	杰	응용역학	
"	金	瑾	선박설계	공학박사
"	鄭	謨	기계설계	
"	金	栩	도학	
"	金	熙	건축사	
"	禹	亨	전기자기학	
"	申	永	구조역학	
"	林	應	요업	공학박사
"	廉	永	기계공학	"
"	李	承	전기기계	공학박사
"	梁	興	자동제어	공학박사
"	李	載	단위조각	"
"	李	洪	물리학	
"	朴	平	비철야금학	
"	李	暎	콩크리트	
"	李	鍾	공자공업학	
"	沈	貞	고분자화학	공학박사
"	廉	熙	금속가공및 야금학	"
"	崔	雄	화학공학	
"	朴	麒	전자파이론	
"	崔	桂	전자회로	
"	李	最	고전자공학	공학박사
"	金	孝	냉난방	공학박사
"	李	澤	유체역학	"
"	魏	祥	항공공학	공학박사

교	수	朴	泰	源	식품공학	공학박사
	"	朴	旻	鎬	전기기계	"
	"	金	正	洙	미분방정식	이학박사
	"	朴	鳳	烈	소림자론	이학박사
	"	尹	張	燮	동양건축사	
	"	安	守	漢	수리학	공학박사
	"	金	東	垣	기계역학	"
	"	黃	宗	屹	조선학	"
	"	金	東	勳	물리야금학	
	"	成	百	能	물리학	이학박사
부	교	金	俊	容	화학공학	공학박사
	"	李	炳	昊	원자론이론	공학박사
	"	李	光	魯	건축의장학	
	"	鄭	寅	峻	토질역학	
	"	李	樂	周	항동력장공치	공학박사
	"	李	文	得	분석화학	
	"	韓	鳳	熙	금속물리학	공학박사
	"	任	尙	鍊	선박구조학	"
	"	南宮		寔	화공열역학	"
	"	李	益	春	방사화학	이학박사
	"	玄	炳	九	광선학	"
	"	趙	宣	彙	기계공학	공학박사
	"	朴	源	燾	화학공학	"
	"	金	極	天	박용기관	"
	"	田	溶	元	공산지질학	"
	"	安	泰	玩	화학공학	이학박사
	"	徐	載	珍	열동역학	
	"	李	珍	雨	섬유물리학	
조	교	趙	珪	顯	체육	
	"	朴	天	卿	기계공학	

조	교수	安	哲	浩	측	량	학	
	"	閔	虎	基	수		학	
	"	元	鍾	洙	전	기	공학	
	"	李	海	京	항	공	공학	
	"	李	禹	翰	수		학	
	"	趙		哲	전	기	재료	
	"	尹	定	燮	건	축	공학	
	"	朴	鍾	殷	조	선	학	
	"	金	淵	植	채	광	학	공학박사
	"	金	商	周	금	속	공학	
	"	南	天	祐	물	리	학	
	"	鄭	日	榮	건	축	공학	
	"	金	日	鎮	전	자	회로	
	"	朴	惠	文	전	기	공학	
	"	高	明	三	전	기	공학	
	"	金	相	溶	섬	유	공학	
	"	金	應	瑞	자	동	차학	
	"	李	在	坤	방	적	학	
	"	朴	仲	鉉	위	생	공학	공학박사
	"	朴	先	正	전	자	장	"
	"	宋	熙	星	물	리	학	이학박사
	"	河	完	植	섬	유	공학	
	"	趙	慶	國	항	기	동력장치	공학박사
	"	張	會	翼	역	자	역학(2)	이학박사
전	임강사	金	文	漢	전	축	구조	
	"	安	秀	吉	회	로	망	
	"	柳	秀	安	금	속	공학	
	"	李	榮	培	기	계	공학	
	"	李	忠	雄	전	자	회로	

전임강사	崔 柄 斗	물 리 학
"	洪 性 一	섬유조제학
"	黃 熙 隆	전 기 공 학
"	金 載 周	수 학
"	李 相 培	회 로 망
"	朱 鍾 元	건축시공및직산
"	韓 松 曄	전 기 공 학
"	金 正 湜	구조역학
"	羅 亨 用	구 조 론
"	李 華 榮	화 학 공 학
"	金 宗 相	전 자 공 학
"	洪 性 穆	건축구조학
"	鄭 基 亨	물 리 학
"	鄭 在 明	대 수 학
"	金 曉 哲	조선 공 학
"	金 成 基	수 학
서 무 과 행정사무관	咸 錫 泰	

농 과 대 학

학 장 교 수	表 鉉 九	채소원예학	농 학 박 사
교무과장	吳 鳳 國	가금육종학	농 학 박 사
학생과장	尹 錫 鳳	수의해부학	수의학박사
서무과장 행정사무관	金 淳 泰		
교 수	金 粉 玉	가정관리학	
	"	목재화학	
부속농업과장	方 玄 圭	임목육종학	농 학 박 사
학연구소장	"		
	白 雲 夏	곤충학	농 학 박 사
	"		
	洪 炳 旭	수의내과학	
	"		
	柳 達 永	화훼원예학	
	"		
	金 文 浹	재상학	농 학 박 사

	교	수	李	榮	韶	수의생리학	
	"	"	玉	鍾	華	수의외과학	
	"	"	趙	聖	祉	영 이	
부속열대농장 부속열대농장	"	"	李	春	寧	생 화 학	농 학 박사
	"	"	金	洛	禎	가잠해부학	
	"	"	李	升	圭	가 금 학	
부속수목원장	"	"	李	昌	福	수 목 학	농 학 박사
부속동물사장 부속동물사장	"	"	陸	鍾	隆	낙 농 학	농 학 박사
	"	"	金	文	植	농업경제학	경제학박사
	"	"	申	載	斗	수의화학	농 학 박사
	"	"	朴	成	宇	수 리 학	농 학 박사
	"	"	沈	鍾	燮	목재리학	농 학 박사
	"	"	任	慶	彬	조 립 학	농 학 박사
	"	"	李	長	洛	수의약리학	수의학박사
	"	"	崔	炳	熙	감 사 화 학	농 학 박사
	"	"	李	殷	雄	작 물 학	농 학 박사
부속장 부속장	"	"	玄	在	善	동물생태학	농 학 박사
농도서관장	"	"	姜	壽	遠	동 물 학	이 학 박사
	"	"	朴	泰	植	농업교육학	
	"	"	任	綱	彬	식물생리학	농 학 박사
	"	"	全	允	成	수의미생물학	수의학박사
	"	"	曹	惠	鉉	농 화 학	농 학 박사
	"	"	金	載	勗	식품화학	농 학 박사
부속가축 부속가축	"	"	鄭	昌	國	수의외과학	수의학박사
	"	"	劉	漢	烈	관 개 학	농 학 박사
	"	"	李	哲	周	농업기계학	공 학 박사
	부	교	邊	普	燁	토질역학	
	"	"	朴	永	觀	지 질 학	

부속
연습장

교	수	李	用	斌	가축번식학	농학박사
부	교	金	甲	德	삼림측정학	
	"	宋	啓	源	축산가공학	농학박사
	"	吳	壽	珏	수의산과학	
	"	朴	弘	來	통계학	통계학박사
	"	林	昌	亨	수의병리학	수의학박사
	"	沈	永	根	농업정책	농학박사
	"	韓	昌	南	생물화학	수의학박사
	"	李	昌	業	수의약리학	
	"	李	榮	商	가축영양학	농학박사
	"	鄭	厚	變	식물병리학	농학박사
	"	許	文	會	작물육종학	농학박사
	"	高	在	君	농축공업학	
	"	李	良	厚	의류학	
조	교	崔	在	甲	농기구학	
	"	張	斗	煥	수생충학	수의학박사
	"	潘	性	紈	농업경영학	
	"	李	瑞	來	생물화학	농학박사
	"	王	仁	權	농업시장경학	농학박사
	"	朱	奉	圭	토지경제학	농학박사
	"	李	啓	珪	화학	농학박사
	"	韓	仁	圭	가축영양학	농학박사
	"	崔	承	允	곤충학	농학박사
	"	安	建	鏞	조원학	
	"	宋	海	均	농업교육학	농학박사
	"	崔	熙	仁	수의내과학	
	"	權	宗	國	수의생리학	
	"	沈	載	昱	생물유전학	
	"	李	弘	和	작물학	농학박사
	"	林	善	旭	토미생물학	농학박사

조 교 수	徐	鈇	洙	수의병리학	
"	羅	璫	俊	식물병리학	
"	李	弼	宇	목재이용학	
"	朴	明	圭	산림보호학	
"	韓	相	麒	작물측정학	농 학 박 사
"	成	在	基	수의방사선	
"	鄭	昌	柱	농업기계학	
"	鄭	吉	澤	수의공중위생학	수의학박사
"	高	光	出	과 수 학	농 학 박 사
"	朴	英	一	가축육종학	농 학 박 사
"	朴	光	義	가잠육종학	
"	趙	鏞	涉	식물병리학	농 학 박 사
전 임 강 사	金	東	岩	초 지 학	
"	李	相	沃	영 어	
"	金	泰	旭	수 목 학	
"	柳	順	昊	토 양 학	
"	禹	建	錫	곤 충 학	
"	金	振	元	체 육	
"	安	元	榮	임산제조학	
"	崔	敏	浩	농업교육학	
"	李	炳	駟	채종원예학	농 학 박 사
"	李	俊	燮	수의조직학	
"	南	重	熙	제 사 학	
"	李	瓊	鉉	농업경영학	
"	文	在	裕	육 잠 학	
"	全	在	根	식품공학	농 학 박 사
"	鄭	址	雄	교 육 학	
"	朴	陽	子	가 정 학	
"	禹	保	命	사 방 공 학	

전임강사	李 茂 根	농업교육학
//	李 權 容	작물생리학
//	鄭 夏 禹	수리학
//	高 學 均	동력학

문리과대학

학장	교수	高 柄 翊	동양사	철학박사
문학부장	//	高 姜 斗	독문학	
이학부장	//	玄 正 峻	천문학	
의, 치예 과부장	//	趙 完 圭	동물세포학	이학박사
교무과장	부교수	高 允 錫	원핵물리	이학박사
학생과장	조교수	安 相 鎭	철학	
서무과장	행정사무관	朴 成 喆		
	교수	文 榮 鉉	체육학	
	//	閔 丙 台	정치학	문학박사
	//	車 相 轅	중국문학	문학박사
	//	朴 義 鉉	미학	
	//	權 寧 大	광학	이학박사
	//	崔 載 喜	철학	철학박사
	//	申 四 勳	종교학	철학박사
	//	孫 致 武	광산학	이학박사
해양생물 연구소장	//	李 敏 載	식물학	이학박사
	//	李 義 喆	심리학	철학박사
	//	姜 永 善	세포유전학	이학박사
	//	金 俊 變	철학	철학박사
	//	朴 洪 奎	철학	
	//	李 彙 榮	불문학	
	//	張 秉 琳	심리학	
부속도서관장	//	全 濟 玉	영문학	

	교수	崔圭源	물리화학	이학박사
	"	鄭昌熙	퇴적암석학	이학박사
	"	金斗熙	경제학	
	"	許亨根	독문학	
	"	張世憲	물리화학	이학박사
	"	金庚星	지리학	
	"	池彰烈	전자기학	이학박사
	"	李用熙	국제정치학	법학박사
	"	高錫龜	영문학	
	"	韓洵勗	국사	문학박사
	"	李萬甲	사회학	
	"	金正祿	중국문학, 예술학	
교양과정부장	"	閔錫泓	서양사학	
	"	金熏洙	동물분류학	이학박사
	"	金具廷會	결정화학	이학박사
	"	宋穢	영문학	
	"	金泰吉	철학	철학박사
	"	鄭鳳日	지구물리학	
	"	鄭炳昱	국문학	
	"	鄭英昊	식물분류학	이학박사
	"	鄭車環	중국문학	문학박사
	"	張基權	중국문학	문학박사
	"	朴養雲	종교학	신학박사
	"	金鳳均	고생물학	이학박사
	"	洪淳佑	식물세포학	이학박사
	"	許雄洙	언어학	문학박사
	"	金哲洙	유체역학	이학박사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장	"	李海英	사회학	
	"	吳鉉堉	불문학	

교	수	金李	鵬商	九萬	불문학	
	"	張張	德世	順熹	암석학	이학박사
	"	張全	光鎭	鏞垓	한고전문학	문학박사
	"	金河	相秉	洛吉	유기화학	이학박사
	"	張朴	乙良	龍殷	국문학	
부	교	鄭金	俊聖	圭三	한국사	
	"	朴金	翼基	晟文	사회사업	
	"	鄭金	明漢	烈模	종교학	
	"	金崔	至製	薰錫	수리학	이학박사
	"	孫梁	秉奉	植復	심리학	
	"	朴高	永範	謨燮	언어학	
	"	具金	容鍾	雲澤	국제정치학	
	"	金鄭	漢祥	得	기상학	
	"	文			언어학	
	"				국어학	
	"				독문학	
	"				국문학	
	"				국문학	
	"				국문학	
	"				통계학	
	"				국제정치학	
	"				서양사	
	"				국제정치학	
	"				사회학	
	"				비교정치학	
	"				한국사	
	"				미국문학	
조	교				심리학	
	"				영문학	

문리도서관

조	교	수	張	仁	協	사회사업학	
	"		金	鎬	激	이론화학	이학박사
	"		丘	冀	星	독문학	문학박사
	"		具	永	祿	정치학	정치학박사
	"		河	斗	鳳	생리학	
	"		金	學	主	중국문학	
	"		閔	斗	基	동양사	
	"		姜	萬	植	방사선생물학	
	"		金	彩	潤	사회학	
	"		白	琪	洙	미학	
	"		權	肅	一	고체물리학	이학박사
	"		南	世	鎮	사회사업학	
	"		曹	大	京	심리학	철학박사
	"		嚴	圭	白	해양생태학	
	"		朴	仁	源	생물화학	이학박사
	"		金	完	洙	수산·해양학	농학박사
	"		李	炳	漢	중국문학	
	"		金	道	貞	지리학	이학박사
	"		李	潤	榮	유기화학	
	"		李	京	植	영문학	
	"		李	尹	漢	수학	
	"		河	永	七	미생물학	
	"		韓	完	相	사회학	사회학박사
	"		裴	成	東	정치학	
	"		金	濟	秘	위상수학	
	"		白	樂	晴	영문학	
	"		李	仁	圭	조류학	이학박사
	"		李	龜	徹	물리학	이학박사
	"		李	炫	馥	언어학	철학박사

조교수	朴世熙	朴龍安	洪承亨	朴亨正	柳茂昌	金東準	金洙鎭	朴相大	韓相福	金容九	朴英漢	吳炳南	鄭智榮	韓永愚	任孝宰	수해불언체영득광동물인국제지미불한고	학양문어육문문물조직류정치리미어국고	이학박사
"	"	"	"	"	"	"	"	"	"	"	"	"	"	"	"	"	"	
전임강사	朴洪	朴承亨	朴亨正	柳茂昌	金東準	金洙鎭	朴相大	韓相福	金容九	朴英漢	吳炳南	鄭智榮	韓永愚	任孝宰	수해불언체영득광동물인국제지미불한고	학양문어육문문물물조직류정치리미어국고	이학박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술대학

학장	조교수	金鍾瑛	金教滿	金滿麟	조소
교무과장	조교수	金崔李	鍾教滿	金滿麟	상업미술소
학생과장	조교수	李柳朴	炳景世	崇塚元	조소
서무과장	행정사무관	柳朴金	炳景世	崇塚元	서양화소
	교수	朴金朴	景世魯	塚元中	동양화소
	"	權丁	純昌學	中壽亨	동양미술
	"	文	學	亨變晉	공예미술
	"				서양화
	"				서양화

실장서장
속장도장
부습미술관

부	교	수	徐	世	鈺	동	양	화	
	"		金	靜	子	관		화	
조	교	수	崔	義	淳	조		소	
	"		閔	哲	泓	공	업	미	술
	"		劉	權	俊	미		학	
	"		林	英	芳	미		학	철학박사
	"		趙	英	濟	상	업	미	술
	"		全	成	雨	서	양	화	
	"		金		泰	서	양	화	
전	임	강	辛	永	常	동	양	화	
	"		崔	鍾	泰	조		소	
	"		姜	燦	均	상	업	미	술
	"		梁	承	椿	상	업	미	술



법과대학

학	장	교	수	徐	燉	珏	상	법	법학박사
	교무과장	교	수	金	致	善	노	동	법학박사
	학생과장	조	교	朴	秉	濠	법	제	사
	서무과장	행정	사무관	李	昌	根			
	법률도서장	부	교	金	哲	洙	헌		법
	법대학장	교	수	李	漢	基	국	재	법학박사
	법연구소장	"		鄭	熙	喆	상		법학박사
		"		印	英	煥	체		육
		"		裴	福	石	재	정	학
		"		劉	基	天	형		법학박사
		"		金	會	漢	민		법학박사
		"		金	箕	斗	형		법학박사
		"		林	元	澤	경	제	학
		"		裴	載	湜	국	제	공법

부	교수	郭潤直	田源直	董德模	崔鍾吉	李泰魯	黃泰迪魯仁	민법	법학박사
"	"	"	"	"	"	"	"	법철학	법학박사
"	"	"	"	"	"	"	"	정치학	정치학박사
"	"	"	"	"	"	"	"	민법	법학박사
조	교수	郭潤直	田源直	董德模	崔鍾吉	李泰魯	黃泰迪魯仁	영미법	법학박사
"	"	"	"	"	"	"	"	외국법	법학박사

사범대학

학장	교수	徐明源	李應百	李榮基	金應河	李鍾洙	金聲近	金異潤	崔基哲	金錫穆	蔡羲順	皮千得	金亨奎	金遵敏	李星憲	尹仁鎬	元容明	金秉和	朴德培	李周植	金最鎮	李根茂	교육학	교육학박사
교무과장	"	"	"	"	"	"	"	"	"	"	"	"	"	"	"	"	"	"	"	"	"	"	국어학	
학생과장	부교수	"	"	"	"	"	"	"	"	"	"	"	"	"	"	"	"	"	"	"	"	"	경제학	
서무과장	서기	"	"	"	"	"	"	"	"	"	"	"	"	"	"	"	"	"	"	"	"	"	영어교수법	문학박사
교육대학원장	교수	"	"	"	"	"	"	"	"	"	"	"	"	"	"	"	"	"	"	"	"	"	서양사	문학박사
"	"	"	"	"	"	"	"	"	"	"	"	"	"	"	"	"	"	"	"	"	"	"	비교문학	
"	"	"	"	"	"	"	"	"	"	"	"	"	"	"	"	"	"	"	"	"	"	"	동물학	이학박사
"	"	"	"	"	"	"	"	"	"	"	"	"	"	"	"	"	"	"	"	"	"	"	윤리학	
"	"	"	"	"	"	"	"	"	"	"	"	"	"	"	"	"	"	"	"	"	"	"	동양사	
"	"	"	"	"	"	"	"	"	"	"	"	"	"	"	"	"	"	"	"	"	"	"	영문학	
"	"	"	"	"	"	"	"	"	"	"	"	"	"	"	"	"	"	"	"	"	"	"	국어학	문학박사
"	"	"	"	"	"	"	"	"	"	"	"	"	"	"	"	"	"	"	"	"	"	"	생물학	이학박사
"	"	"	"	"	"	"	"	"	"	"	"	"	"	"	"	"	"	"	"	"	"	"	수학	
"	"	"	"	"	"	"	"	"	"	"	"	"	"	"	"	"	"	"	"	"	"	"	체육과교수법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학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학	
"	"	"	"	"	"	"	"	"	"	"	"	"	"	"	"	"	"	"	"	"	"	"	법학	
"	"	"	"	"	"	"	"	"	"	"	"	"	"	"	"	"	"	"	"	"	"	"	미생물학	이학박사
"	"	"	"	"	"	"	"	"	"	"	"	"	"	"	"	"	"	"	"	"	"	"	독문학	
"	"	"	"	"	"	"	"	"	"	"	"	"	"	"	"	"	"	"	"	"	"	"	물리화학	이학박사

교	수	李	智	皓	지	리	학	
	"	鄭	然	泰	물	리	학	
	"	張	旺	祿	미	국	문	학
	"	韓	基	彥	사	회	교	육
	"	鄭	範	謨	교	육	심	리
	"	李	泰	寧	유	기	화	학
	"	朴	漢	植	수			학
	"	金	相	昊	지	리	학	문
	"	康	吉	秀	교	육	행	정
	"	李	雄	植	생	물	학	이
	"	金	應	泰	수			학
	"	羅	絢	成	체	육	학	학
	"	邊	太	變	국			사
	"	俞	景	老	천	문	학	
	"	金	鍾	喆	교	육	학	철
	"	李	杜	鉉	국	문	학	문
부	교	元	明	洙	위	생	학	의
	"	李	元	植	분	석	화	학
	"	陳	元	重	교	육	학	
	"	鄭	昌	熙	기	상	학	
	"	朴	吉	俊	체		육	
	"	金	宗	西	교	육	학	
	"	鄭	元	植	교	육	학	철
	"	金	豪	權	교	육	심	리
	"	申	熙	明	물	리	학	
	"	李	洙	灑	물	리	학	이
	"	李	孟	成	영	문	학	문
	"	李	元	淳	국			사
	"	李	庸	周	국	어	학	

부	수	李	桓	불	어	학	
조	수	朴	茁	불	어	학	
	교	李	昇	독	문	학	
	교	田	範	영		어	
	"	李	鎬	서	양	사	
	"	李	奎	문화	신류	학	철학박사
	"	金	植	수		학	
	"	黃	倫	영		어	
	"	李	喆	철		학	
	"	金	子	독		어	
	"	金	典	국	문	학	
	"	李	珍	교	육	심	철학박사
	"	文	龍	영		어	
전	강	尹	柝	청	치	학	
임	사	朴	載	물	리	학	
	"	李	哲	체		육	
	"	張	基	생	물	학	
	"	崔	鳳	동	물	학	
	"	沈	鎬	영	문	학	
	"	朴	洙	국	어	학	
	"	申	湜	동	양	사	
	"	林	藏	체	육	학	
	"	李	翊	국	문	학	
	"	李	傑	교	육	학	
	"	鄭	台	체	육	학	
	"	金	燦	교	육	학	
	"	黃	璣	교		리	
	"	俞	根	지		어	

상 과 대 학

학 장	교 수	邊 衡 尹	계 통	량 제 학	경제학박사
교무과장	부 교 수	姜 命 圭	경 제 학	상 법	법 학 박사
학생과장	조 교 수	崔 基 元	회 계 학	경 제 화	경제학박사
서무과장	서 기 관 수	李 澈 眞	회 계 학	경 제 화	"
한국경제 연구소장	"	蘇 趙	회 계 학	경 제 화	"
경영대 학 원 장	"	黃 炳 駿	회 계 학	노 동 경 제	"
	"	丁 炳 侏	회 계 학	이 론 경 제 학	"
	"	吳 萬 植	회 계 학	보 험 론	"
경 영 연 구 소 장	"	李 庸 俊	회 계 학	재 정 금 용	"
학생처장	"	李 賢 宰	회 계 학	마 케 팅	"
	"	李 吳 相 洛	회 계 학	재 정 학	"
	"	車 駢 權	회 계 학	재 무 관 리	"
	"	沈 昞 求	회 계 학	보 험 론	경제학박사
	"	方 甲 洙	회 계 학	체 육	"
상 경 도 서 관 장	부 교 수	金 鳳 宗	회 계 학	경 제 사	"
	"	金 羅 雄	회 계 학	경 영 경 제 학	경영학박사
	"	林 鍾 哲	회 계 학	국 제 경 제 학	"
	조 교 수	鞠 正 孝	회 계 학	무 역 정 책	"
	"	呂 井 東	회 계 학	영 문 학	"
	"	金 元 銖	회 계 학	정 치 학	"
	"	朴 宇 熙	회 계 학	마 케 팅 관 리	"
	"	韓 義 泳	회 계 학	경 제 학	"
	"	金 植 鉉	회 계 학	상 품 학	"
	"	李 正 浩	회 계 학	인 사 관 리	"
	"		회 계 학	회 계 학	"

조 교 수	李 好 斑	법 학
전 임 강 사	慎 鋪 厦	경 제 학
"	安 秉 直	경 제 학
"	金 晋 均	사 회 학
"	徐 相 龍	재 무 관 리
"	鄭 英 一	농 업 경 제 학
"	裴 茂 基	경 제 학
"	慎 侑 根	경 영 학
"	朴 在 潤	"
"	鄭 基 俊	통 계 학
"	盧 炳 卓	경 제 학
"	金 信 行	"

약 학 대 학

학 장	교 수	金 泳 垠	생 물 화 학	약 학 박 사
교무과장	"	李 圭 圭	약 품 분 석 (1)	"
학생과장	조 교 수	金 炳 珏	미 생 물 학	약 학 박 사
서무과장	행 정 사 무 관	權 甲 周		
약 학 도 서 장	부 교 수	羅 雲 龍	약 품 제 조 화 학 (1)	"
실 습 약 장	교 수	禹 鍾 鶴	약 제 학	"
	"	李 善 宙	새 약 학	"
	"	蔡 東 圭	약 화 학 (2)	"
	"	沈 吉 淳	위 생 화 학	"
	"	韓 寬 燮	약 물 리 화 학	이 학 박 사
	"	白 南 豪	약 품 분 석 화 학 (2)	약 학 박 사
	"	鞠 塚 豪	유 기 약 학	"
	"	高 鉉 起	약 화 학 (2)	약 학 박 사
	"	趙 允 成	약 효 학	"

	부 교 수	韓 大 錫	生 약 학	
	"	金 信 根	이론약제학	약 학 박사
	"	朴 大 成	독 물 학	"
	"	李 相 燮	천 연 물 유 기 화 학	"
	"	鄭 源 根	약품합성화 학약화학(2)	"
약초원장	조 교 수	鄭 普 燮	약용식물학	"
	"	趙 潤 相	약품제조화 학 (3)	
	"	兪 炳 高	약품제조화 학 (1)	약 학 박사
	전 임 강 사	金 洛 斗	약 효 학	
	"	申 泰 浩	독 일 어	
	"	李 民 和		
	"	朴 萬 基		

음 악 대 학

학 장	교 수	李 惠 求	국 악	문 학 박사
교무과장	조 교 수	李 南 洙	작 곡	
학생과장	"	安 亨 一	성 악	
서무과장	행정사무관	曹 圭 洪		
도서관장	조 교 수	康 芸 京	피 아 노	
	교 수	鄭 勳 謨	성 악	
	"	金 元 福	피 아 노	
	"	金 聖 泰	작 곡	문 학 박사
	"	李 觀 玉	성 악	
	"	李 想 春	"	
	"	金 淳 烈	피 아 노	
	"	張 師 勛	국 악	문 학 박사
	"	朴 時 仁	영 문 학	
	"	全 鳳 楚	첼 로	

부	교수	鄭	回	甲	작곡	
	"	李	誠	載	"	
	"	安	容	九	바이올린	
	"	鄭	鎭	宇	피아노	
	"	白	樂	皓	"	
조	교수	李	貞	姬	성악	
	"	李	慶	淑	"	
	"	梁	海	曄	바이올린	
	"	李	成	均	피아노	
	"	金	興	教	국악	
	"	吳	貞	珠	피아노	
	"	金	惠	炅	성악	
	"	金	容	振	작곡	
전임	강사	李	在	玉	비올라	
	"	李	基	媛	피아노	
	"	蘇	光	熙	첼로	학
	"	徐	桂	淑	피아노	
	"	俞	泰	烈	성악	
	"	朴	魯	慶	"	
	"	李	在	淑	국악	
	"	權	潤	芳	체육	
	"	李	仁	榮	성악	
	"	申	秀	貞	피아노	
	"	玄	海	恩	바이올린	

의과대학

학장	교수	權	彝	赫	예방의학	의학박사
교무과장	부교수	高	光	昱	소아과학	"
학생과장	"	李	洸	鎬	해부학	"

서무과장	서	기	관	黃	仁	哲				
	교		수	吳	鎮	變	약	리	학	의
	"	"	"	李	濟	九	병	리	학	학
	"	"	"	李	國	柱	소	아	과	학
암연구소장	"	"	"	秦	柄	鎬	일	반	외	과
	"	"	"	羅	世	振	해	부	학	학
열대의학 연구소장	"	"	"	沈	相	煌	예	방	의	학
결핵 연구소장	"	"	"	金	敬	植	내	과	학	학
	"	"	"	李	基	寧	생	화	학	학
	"	"	"	李	明	馥	해	부	학	학
	"	"	"	姜	承	鎬	내	과	학	학
	"	"	"	李	鍾	皖	생	리	학	학
간호학과장	"	"	"	李	貴	香	간	호	학	학
국민체력과 학연구소장	"	"	"	南	基	鏞	생	리	학	학
보건대학장	"	"	"	金	仁	達	예	방	의	학
	"	"	"	李	聖	浩	내	과	학	학
	"	"	"	李	震	淳	생	화	학	학
	"	"	"	李	承	薰	미	생	물	학
	"	"	"	康	晰	榮	내	과	학	학
	"	"	"	金	子	勳	일	반	외	과
	"	"	"	金	應	振	내	과	학	학
	"	"	"	朴	吉	秀	일	반	외	과
	"	"	"	尹	源	植	안	과	학	학
부속병원장	"	"	"	金	弘	基	이	인	후	과
	"	"	"	任	正	淳	내	과	학	학
	"	"	"	魯	炳	鎬	"	"	"	"
	"	"	"	朱	權	源	비	노	기	과
	"	"	"	李	寧	均	흉	부	외	과

교수	부수	학사	박사
張	憲	내과학	의학박사
崔	雄	소아과학	"
張	堯	해부학	"
韓	植	정형외과학	"
朱	雲	방사선과학	"
李	鎬	내과학	"
許	穆	"	"
李	澤	의사학	"
白	基	이후과학	"
洪	義	소아과학	"
徐	高	기생충학	"
申	薰	생리학	"
羅	榮	소아과학	"
金	植	피부과학	"
洪	岳	약리학	"
沈	星	신경외과학	"
金	洙	체육학	"
朴	一	산부인과학	"
申	雨	산부인과학	"
金	均	비뇨기과학	"
金	道	내과학	"
李	定	경신경과학	"
金	周	방사선과학	"
金	洙	일반외과학	"
吳	仁	내과학	"
李	熙	비뇨기과학	"
成	樂	생화학	"
閔	獻	내과학	"
	基		

병장
연구소장
대학원교장
과장
대무

	부	교	수	文	炯	魯	소아과학	의학박사
		"		成	耆	峻	해부과학	"
		"		李	相	敦	생리과학	"
		"		李	尙	國	병리학	
		"		閔	丙	哲	일반외과학	"
		"		車	喆	煥	예방의학	"
		"		金	禮	欽	일반외과학	"
		"		李	鎬	汪	미생물학	"
		"		林	定	圭	약리학	"
		"		林	壽	德	피부과학	"
		"		金	相	仁	임상병리학	"
		"		李	惟	信	피부과학	"
		"		金	相	協	소아과학	
의도서관	조	교	수	金	祐	謙	생리학	"
		"		盧	寬	澤	이인후과학	"
		"		金	昇	元	생화학	"
		"		金	鎭	永	이인후과학	"
		"		朱	正	和	신경외과학	"
		"		韓	東	世	정신경과학	"
		"		李	德	鏞	정형외과학	"
		"		郭	一	龍	마취과학	"
		"		韓	鏞	徹	내과학	"
		"		張	潤	錫	산부인과학	"
		"		張	友	鉉	미생물학	
		"		李	漢	九	정형외과학	"
		"		石	世	一	정형외과학	"
		"		高	昌	舜	동위원소	"
		"		金	勝	煜	산부인과학	
		"		文	一	榮	이인후과학	의학박사

조	교수	尹 東 浩	林 漢 鍾	咸 毅 根	申 東 烈	蔡 範 錫	明 好 鎭	徐 景 弼	洪 麗 信	尹 德 老	白 相 豪	金 鎭 福	金 晉 煥	李 誠 學	金 勇 一	羅 鳳 鎭	朴 贊 雄	韓 萬 靑	李 符 永	金 丁 龍	尹 鍾 求	孫 光 鉉	金 鍾 煥	李 鍾 迎	崔 圭 完	李 圭 栽	李 時 興	金 時 煌	崔 吉 洙	金 光 宇	張 家 鏞	안 과 학	의 학 박사			
	"																																기 생 충 학	"		
	"																																병 리 학	"		
	"																																안 과 학	"		
	"																																	임 상 병 리 학	"	
	"																																	정 신 경 과 신 학		
	"																																	홍 부 의 과 학	"	
	"																																	간 호 학		
	"																																	예 방 의 학	"	
	"																																	해 부 학	"	
	"																																	일 반 의 과 학	"	
	"																																	일 반 의 과 학	"	
	"																																	간 호 학		
	"																																	병 리 학	"	
	"																																	해 부 학		
	"																																	약 리 학		
전	임 강 사																																	방 사 선 과 학	"	
	"																																		정 신 경 과 신 학	
	"																																		내 과 학	"
	"																																		소 아 과 학	
	"																																		홍 부 의 과 학	
	"																																	"	"	
	"																																		내 과 학	
	"																																		내 과 학	"
	"																																		안 과 학	"
	"																																		비 뇨 기 과 학	
	"																																		신 경 의 과 학	
	"																																		마 취 과 학	"
	"																																		약 리 학	

전임강사	李 純 炯	기생충학	의학박사
"	李 恩 玉	마취과학	
"	朴 貞 浩	"	
"	李 元 魯	내과학	"
"	朴 聖 淑	마취과학	
"	洪 京 子	"	

치과대학

학 장	교 수	金 周 煥	구강진단학	의학박사
교무과장	조 교 수	丁 東 均	약리학	"
학생과장	"	金 明 國	해부학	"
서무과장	서 기 관 수	金 趙 元 濟		
	교 수	金 永 昌	구강해부학	의학박사
	"	李 春 根	구강외과학	"
	"	金 東 順	구강병리학	"
	"	李 永 玉	보철학	"
	"	李 沈 錫	"	"
	"	金 用 瑄	구강외과학	치의학박사
	"	金 文 先	치주병학	의학박사
	"	金 洙 哲	보존학	"
	"	金 劉 鍾 德	구강해부학	"
	"	車 文 豪	소아치과학	"
	"	安 炯 珪	치과방사선학	"
부속병원장	부 교 수	金 奎 植	구강외과학	의학박사
	교 수	金 張 完 植	보철학	"
	부 교 수	金 英 海	보존학	"
	"	金 仁 哲	보철학	"
	"	陳 庸 奐	"	"
치의학도서관	"	黃 聖 明	구강해부학	"
	"	鮮于 良國	치과재료학	"

조 교 수	申 範 哲	보 철 학	의 학 박사
"	李 在 賢	치 주 병 학	"
"	趙 喜 園	교 정 학	"
"	李 正 植	보 존 학	"
"	趙 漢 國	구강병리학	"
"	金 鎭 泰	소아치과학	"
"	徐 廷 勳	교 정 학	"
"	金 明 國	해 부 학	"
"	李 鳴 鍾	보 존 학	"
"	趙 根 沃	보 철 학	"
"	閔 丙 一	구강외과학	"
"	劉 東 洙	치과방사선학	"
전 임 강 사	孫 性 熙	치 주 병 학	"
"	林 昌 潤	구강병리학	"
"	金 宗 源	구강외과학	"
"	南 日 祐	구강외과학	"
"	李 勝 雨	구강진단학	"
"	尹 壽 漢	보 존 학	"
"	李 種 昕	생 리 학	"
"	鄭 泰 英	생 화 학	"
"	金 哲 偉	치과재료학	"
"	梁 棟 奎	구강외과학	의 학 박사
"	孫 同 銖	소아치과학	"
"	梁 源 植	교 정 학	"
"	金 英 洙	보 철 학	"
"	崔 翔 默	치 주 병 학	"
"	金 守 經	구강외과학	"
"	朴 兌 源	치 방 사 선 학	"
"	張 翼 泰	보 철 학	의 학 박사

	전 임 강 사	林 成 森	보 존 학	의 학 박사
	"	金 鍾 培	구 강 위 생 학	"
서 무 과	행 정 사 무 관	趙 昞 坤		

가 정 대 학

학 장	교 수	張 明 郁	가 정 교 수 법
교 무 과 장	조 교 수	李 惠 秀	식 품 화 학
학 생 과 장	"	林 元 子	의 상 학
서 무 과 장	행 정 사 무 관	李 載 鈹	
	부 교 수	李 玄 己	영 양 학
	"	金 聲 連	섬 유 화 학
	"	牟 壽 美	영 양 식 품 학
	조 교 수	安 承 堯	유 기 화 학
	전 임 강 사	李 承 基	가 정 관 리 학

표 양 과 정 부

부 장	교 수	閔 錫 泓	서 양 문 화 사
교 무 과 장	부 교 수	鄭 明 煥	불 어
학 생 과 장	전 임 강 사	金 鎭 世	국 어
서 무 과 장	행 정 사 무 관	金 容 萬	
	교 수	朴 相 鉉	철 학
	"	崔 鶴 根	국 어
	부 교 수	羅 鍾 一	문 화 사 학
	"	韓 荃 淑	철 학
	"	崔 弘 基	사 회 학
	"	李 日 海	수 학
도 서 관 장	"	李 炳 璨	독 어
	"	安 秉 禧	국 어
	조 교 수	文 祐 相	영 어
	"	金 光 浩	영 어

조	교	수	金	昔	妍	국	어	
	"		鄭		鎮	철	학	
	"		李	禹	永	화	학	
	"		姜	大	虔	영	어	
	"		金	俊	鎬	생	물	이 학 박사
	"		金	龍	澈	영	어	영문학박사
	"		趙	炳	泰	영	어	
	"		宋	洛	憲	영	어	
	"		李	甲	圭	독	어	
	"		鄭	漢	永	수	학	
	"		元	濶	洙	불	어	
	"		盧	熙	憲	체	육	
	"		朴	炯	錫	화	학	
	"		金	容	稷	국	어	
	"		李	洪	九	정	학	정치학박사
	"		朴	煥	德	독	어	
	"		河	永	龜	화	학	
	"		金	允	植	국	어	
	"		李	絪	世	체	육	
	"		沈	在	箕	국	어	
	"		尹	玉	鏡	수	학	
전	임	강	李	命	宰	독	어	
	"		高	昌	範	독	어	
	"		金	寅	淑	영	어	
	"		金	錫	道	독	어	
	"		千	冀	泰	독	어	
	"		崔	完	植	한	문	
	"		高	英	昭	수	학	
	"		李	碩	衡	체	육	

전	임	강	사	李	秉	建	영	어
"	"	"	"	吳	麟	錫	문	사
"	"	"	"	韓	啓	傳	국	어
"	"	"	"	閔	丙	秀	국	어
"	"	"	"	石	璟	澄	영	어
"	"	"	"	張	浚	成	물	리
"	"	"	"	李	翊	變	국	어
"	"	"	"	朴	東	奎	국	어
"	"	"	"	金	時	俊	한	문
"	"	"	"	李	敏	浩	물	리
"	"	"	"	李	廷	珠	생	물
"	"	"	"	李	鍾	徹	국	어
"	"	"	"	金	炳	國	국	어
"	"	"	"	崔	昌	圭	사	회
"	"	"	"	千	勝	桀	영	어
"	"	"	"	黃	東	奎	영	어
"	"	"	"	鄭	鍾	律	지	학
"	"	"	"	金	義	洙	체	육
"	"	"	"	李	秉	根	국	어
"	"	"	"	金	光	男	불	어
"	"	"	"	張	鉉	甲	심	리
"	"	"	"	李	耕	培	수	학
"	"	"	"	李	鉉	求	수	학

부속고등학교

교	장	金	永	起
교	감	石	鎭	復
사무과장	행정사무관	劉	炳	守

부속중학교

교	장	安	秉	續
---	---	---	---	---

교 감

金斗鉉

부속여자중학교

교 장

李豐基

교 감

曹圭三

부속국민학교

교 장

崔三俊

교 감

閔五植

부속도서관

관 장 교 수

全濟玉

영문학

서무과장 행정사무관

全澈興

사서과장 서기관

柳東烈

열람과장 서기관

白麟

조사과장 조교수

曹大京

부속박물관

관 장 교 수

李萬甲

사회학

보건진료소

소 장 교 수

車喆煥

예방의학 의학박사

법학연구소

소 장 교 수

鄭熙喆

상법 법학박사

조교수

李壽成

형법

전임강사

梁承圭

상법

〃

白金鉉

국제법

〃

金碩祚

행정법

〃

金裕盛

노동법

〃

崔松和

행정법

생약연구소

소	장	교	수	禹	麟	根	식물화학	약학박사
			"	韓	龜	東	생물화학	약학박사
			"	洪	文	和	광물생약	"
			"	禹	源	植	생물화학	"
		조	교 수	金	濟	勳	식물화학	
			"	韓	秉	勳	생물화학	약학박사
		전	임 강 사	權	寧	命	식물생리학	
			"	申	國	鉉	분석학	

신문연구소

소	장	교	수	金	圭	煥	매스컴이론	사회학박사
---	---	---	---	---	---	---	-------	-------

어학연구소

소	장	부	교 수	金	鍾	云	영문학	
		교	수	黃	燦	鎬	영어영문학	
		조	교 수	李	季	順	"	
			"	張	奭	鎭	영어영문학	
			"	金	韓	坤	영어학	
			"	高	永	根	국어국문학	
		전	임 강 사	趙	俊	學	영어학	
			"	朴	南	植	언어학	

학생지도연구소

소	장	교	수	李	義	喆	심리학	철학박사
		조	교 수	李	寬	鎔	심리학	
		전	임 강 사	李	創	基	정치학	
			"	林	承	權	교육학	
			"	李	將	鎬	심리학	

재외국민교육연구소

소 장 교 수	閔 錫 泓	서 양 사
부 소 장 부 교 수	崔 弘 基	사 회 학
예비교육부장 전 임 강 사	李 鍾 徹	국 어
학생지도부장 "	金 炳 國	국 어
서무과 행정사무관	朱 淳 昊	

의과대학부속병원

원 장 교 수	金 弘 基	이비인후과 의 학 박 사
서무과장 서 기 관	陳 庸 喆	
약 국 장 약 무 기 정	康 炯 泰	
간호과장		
서 무 과 행정사무관	金 碩 基	
" "	金 英 洙	
" "	金 漢 培	
" "	白 南 東	
" 건축기과	尹 吉 相	
" 건축기과	韓 基 華	
간 호 과 간호기과	金 義 淑	
약 국 약 무 기 과	李 哲 雨	
	李 趙 允	
검 사 실 보건기과	石 鍾 聲	

III. 시 설

여 백

1. 위 치

본교는 서울특별시의 중심지로부터 동북쪽 낙산 밑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본부 주변과 서울특별시내에 7개처, 약 40km 떨어진 경기도 수원시내에 1개처, 도합 8개처에 각기 분산위치하고 있는 이외에도 전라남도 광양군 소재 연습림을 위시하여 3개처에 연습림 또는 약초원이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동 본부 중심지역에

본부,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대학원, 사범대학원, 행정대학원, 신문대학원, 부속도서관, 부속박물관, 어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본부와 인접) 의약계구역에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미술대학, 보건대학원, 의과대학부속병원, 치과대학부속병원 생약연구소, 학생지도연구소, 보건진료소, 학생기숙사 (정영사, 왕릉사), 대학신문사, 교수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부에서 약 4km) 교육계구역에

사범대학, 가정대학,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부속중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능동 (본부에서 약 18km) 공업계구역에

공과대학, 교양과정부, 재외국민교육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농업계구역에 (본부에서 약 45km)

농과대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본부에서 약 6km)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본부에서 약 4km)에

상과대학, 경영대학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본부에서 약 1.5km)에

음악대학, 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이밖에 전라남도 광양군 및 구례군과 경기도 시흥군 및 화성군에 농과대학 연습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약학대학 약초원 및 경기도 부천군

에 생약연구소의 시험장을 보유하고 있다.

2. 소유토지와 건물

본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가 약 634,761평, 임야가 약 18,570평으로서 이를 용도별로 구분한다면 대지는 교지가 464,832평과, 338정보체육장 49,000평, 실습지 98,069평과 14정보 약초원 22,860평이고 연습림이 약 18,217정보로 되어있다.

특히 1970년 3월에 종합계획에 따른 새로운 종합캠퍼스의 위치로 관악산기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 봉천동 및 관악 골프장 일대에 약323정보를 확보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울창한 16,361여정보의 연습림이 전라남도 광양군 및 구례군 일대에 걸쳐있어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건물 시설을 보면 총실수가 3,007실, 연평이 94,632평으로서 이를 용도별로 살펴본다면 사무실 수가 330실에 연평이 5,157여평 강의실수가 376실에 연평이 13,114여평 실험실습실수가 585실에 연평이 11,144여평, 연구실수가 1,206실에 연평이 9,934여평, 도서관의 실수가 78실에 연평이 3,813여평, 강당의 실수가 18실에 연평이 2,248여평, 병원(진료부분)이 실수 414실에 병상수 473개(의과대학부속병원, 치과대학부속병원, 농과대학 보건진료실)임상의자 143개(치과대학)에 연평 5,252여평, 기타의 연평이 35,666여평으로 되어 있다.

3. 실습장과 연습림

본교에는 약 98,069평과 14정보에 달하는 실습장과 18,217여정보의 연습림을 보유하고 있다.

실습장은 이를 크게 나누어 부속농장과 부속동물사육장으로 구분되며 부속농장은 약 37,700평으로 수도, 전작, 특용작물, 과수, 소채, 화훼포장으

로 나누어져 있고, 이외에 묘포상전이 있으며 온실, 온상기타 실험실습실을
위시하여 제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동물사육장은 약 28,000 평과 14 정보로 사료작물포장과 방목지, 운동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젖소 30 두, 돼지 20 두를 위시하여 기타 상당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한편 가축병원에는 내과, 외과, 산과, X-선과 및 약국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수의학과의 임상실습 및 연구시설 또는 가축의 진료에 이용되고 있다.

연습림은 4개소에 분산 되어 있고, 특히 광양연습림에는 교실, 실험실 및
약 3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보유하여 국가의 산림자원 개발과 교
수들의 학술연구에 이용되고 있으며 임학도들은 일정기간 필수적으로 실습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불편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4. 연구 및 실험실습 기계기구

본교가 보유하고 있던 연구 및 실험실습 등을 위한 기계기구는 6.25 사변
으로 인한 파괴와 분실 및 노후등으로 거의 이용의 가치를 상실하여 폐기하
였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전부가 1953년 본교가 현위치에 복귀
한 이후부터 비치한 것이다.

각 대학 및 기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대체로 만족할 수는 없
으나 최소한의 종류와 수량을 보유하여 면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공
과대학, 농과대학, 의과대학 및 동 부속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선진
제국의 대학에 비하여 그리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일은 본교에 비치하고 있는 기계기구의 상당부분이 I.C.A. 원
조 계획에 따른 Minnesota 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도입, Peabody 대학의 원조 및
I.C.A. 원조 등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총액은 약 3,100,000 불에 달한다.

5. 도 서 관

본교에는 본부에 부속되어 있는 부속도서관을 비롯하여 분관으로서 공학

교육, 농학, 문리, 미술, 법률, 상경, 약학, 음악, 의학, 치의학, 행정, 신문, 교양도서관등 14개 분관을 두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에게 널리 이용되고있다.

부속도서관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소장도서는 892,004 권이며 이 가운데에는 부속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40,000여 권에 달하는 우리나라 이조 500년간의 귀중한 국가기록과 동양고전을 총집한 귀중한 문헌과 자료인 규장각도서가 포함되어있다.

도서 수집상황을 보면 1968 년도에는 18,860 권, 1960 년도에는 9,772 권을 수집 하였으며 1969 년도와 1970 년도에는 도서구입비 12,675,100 원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다.

특히 과거 수년간에 걸쳐 I.C.A 원조 계획에 의한 Minesota 대학과 Peabody 대학, 아세아재단들의 원조로 많은 도서가 구입 되었다.

한편 학생의 도서관 이용 및 열람상황을 보면 1968 년도는 입관자 93,466 명으로 열람책수는 59,324 책, 1969 년도에는 입관자 8,6752 명으로 열람책수는 55,035 책이며, 1970 년도 7 월말현재 입관자는 54,584 명이며 열람책수는 23,491 책에 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교직원 및 기타 인사에게 열람, 대출 등 도서관이용에 항상 편의를 제공하고있다.

6. 박물관

본교에는 본부 부속으로 박물관을 두어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역사적 유물과 민속에 관한 물품을 수집 및 보관하고 이를 전시하여 본교 직원 및 학생 또는 일반인에게 관람시키고 있다.

소장된 물품을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분	류	민	속	품	역사적유물및미술품	계	
금	속	제	품	374	974점	1,348점	
옥	석	제	품	77	362	439	
토	도	제	품	140	1,634	1,774	
골	각	제	품	105	89	194	
목	죽	초	제	품	849	76	925

모	피	혁	지	제	품	254	19	273
의		상			류	27	—	27
서		화			류	43	500	543
편		직			류	140	5	145
기					타	26	—	26
합				계		2,035	3,659	5,694

7. 부 속 병 원

본교에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 부속병원을 두어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행하고 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내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신경과, 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치과 및 중앙진료 시설 8실을 두었고, 병상수는 440 개이다.

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구강진단과, 구강외과, 보존과, 치주병과, 소아치과, 보철과, 방사선과, 교정과, 임상검사실, 기공실을 두었고 병상수는 23 개, 진료 의자수는 143 대이다.

1970 년도 환자진료와 세입실적을 보면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입원환자 연 인원이 133,897 명에 외래환자 연인원 180,226 명을 진료하였고, 71,600만원 을 세입 수납하였으며, 치과대학 부속병원이 입원환자 1,257 명, 외래환자 26,942 명을 진료하여 세입수납액은 2,300 만원에 달하였다.

두 병원 다같이 1965 년 12 월 20 일자 법률 제 1726 호로 제정공포된 「국립대학교 부속병원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1966 년 1 월 1 일부터 특별회계제도로 운영케 됨에 따라 환자의 진료와 교수,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에 있어 앞으로 더욱 좋은실적을 올릴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 백

IV. 학 칙

여 백

1. 서울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교는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교에는 공과대학, 농과대학, 문리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가정대학, 교양과정부, 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보건대학원, 사범대학원, 신문대학원, 행정대학원을 둔다.

본교에는 부속도서관, 부속박물관, 법학연구소, 보건진료소, 생약연구소, 어학연구소, 학생기숙사 학생지도연구소와 재외국민교육연구소를 두며 다음의 대학, 대학원과 부속도서관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 또는 부속 기관을 둔다.

공과대학 부속공장

농과대학 부속농장, 부속가축병원, 부속동물사육장, 부속연습림

미술대학 부속실습장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여자중학교, 부속국민학교

상과대학 한국경제연구소

약학대학 부속약초원, 부속실습약국

의과대학 부속병원

치과대학 부속병원

신문대학원 신문연구소

부속도서관 분관

각 대학, 교양과정부,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조 각 대학의 학부 학과별과 학생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50명, 화학공학과 50명 토목공학과 40명, 건축공학과 40명, 전기공학과 80명, 기계공학과 50명, 전자공학과 50명, 조선공학과 30명, 항공공학과 25명, 자원공학과 40명, 금속공학과 50명, 원자력공학과 30명, 공업교육과 120명 (건축전공, 기계전공, 구조전공, 용접판금전공, 전기전공, 전자전공, 자동차전공), 응용수학과 30명, 응용물리학과 25명, 응용화학과 30명, 산업공학과 30명, 재료공학과 30명, 계 800명
2. 농과대학 농학과 20명, 임학과 20명, 농공학과 40명, (농업토목전공, 농업기계전공) 축산학과 25명, 농화학과 20명, 농경제학과 20명, 농생물학과 20명(식물병리전공 10명, 농업곤충전공 10명), 잠사학과 20명, 농가정학과 20명, 수의학과 40명, 농업교육과 40명 (농학전공, 임학전공, 축산전공, 농업토목전공, 양잠전공, 농화학전공), 원예학과 20명, 식품공학과 20명, 임산가공학과 15명 계 320명
3. 문리과대학 문학부 국어국문학과 20명, 중어중문학과 10명, 영어영문학과 20명, 불어불문학과 20명, 독어독문학과 20명, 언어학과 10명, 동양사학과 10명, 서양사학과 10명, 철학과 40명(미학전공 종교학전공 철학전공) 사회학과 20명, 정치학과 20명, 외교학과 20명, 심리학과 10명, 지리학과 20명, 고고인류학과 10명, 사회사업학과 10명, 국사학과 15명 계 285명.
이학부·수학과 20명, 물리학과 30명, 식물학과 15명, 동물학과 15명, 화학과 30명, 천문기상학과 20명, 해양학과 30명, 지질학과 20명, 미생물학과 20명 계 200명.
4. 미술대학 회화과 25명, 조소과 15명, 응용미술과 30명 (상업미술전공 10명, 공예 미술전공 10명, 공업미술전공 10명) 계 70명,
5. 법과대학 법학과 100명, 행정학과 60명, 계 160명.
6. 사범대학 체육학과 40명, 과학교육과 120명(물리전공 30명, 화학전공 30명, 생물전공 30명, 지학전공 30명)사회교육과 70명(일반사회

전공 20명, 역사전공 20명, 지리전공 30명), 교육과 20명, 수학교육과 40명, 국어교육과 40명, 외국어교육과 80명(영어전공 40명, 독어전공 20명, 불어전공 20명) 계 410명.

7. 상과대학 경제학과 55명, 경영학과 100명, 무역학과 40명, 계 195명.

8. 약학대학 약학과 40명, 제약학과 40명, 계 80명.

9. 음악대학 성악과 30명, 작곡과 15명, 기악과 60명, 국악과 15명, 계 120명.

10. 의과대학 의학과(160명), 간호학과 80명, 의예과 160명, 계 240명(160명).

11. 치과대학 치의학과(100명), 치의예과 100명 계 100명 (100명).

12.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30명, 식품영양학과 30명, 의류학과 30명, 계 90명.

총계 3,090명 (260명)

다만 각대학 제 1학년 및 제 2학년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은 당해 예과에 한함)의 학생정원은 교양과정부의 학생정원으로 본다.

음악대학의 성악과와 기악과에는 전공을 들수 있다.

제 2 장 학년 · 학기 ·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4 조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

제 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제 6 조 매학년 수업일수는 210일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일요일 1월 1일, 2일, 3일.

3·1절(3월 1일) 식목일(4월 5일)

현충일(6월 6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추수절(추석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개교기념일(10월 15일)	국제연합일(10월 24일)
성탄일(12월 25일)	하기휴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기휴가 12월 24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임시휴업 및 휴가기일의 변경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 3 장 입학과 등록

제 8 조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이내로 한다.

제 9 조 본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간호학과제외)과 치과대학은 당해 예과수료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4.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제 10 조 입학지원자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행한다.

단 미달할 때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선발고사는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하되 과목과 시일은 모집기에 이를 공고한다.

제 11 조 편입학은 제 2학년 또는 제 3학년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은 제 2학년)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때에 실력을 고사한 후 허가할 수 있다.

전항 제 2학년 지원자는 편입대학 제 1학년수료자, 제 3학년 지원자는 편입대학 제 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제 12 조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제 42조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당한 자는 제외)가 2년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원 학년 이하에 한하여

매학기초 등록기간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은 1회에 한 한다.

제 13 조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하기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그 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2. 학업성적표. 단 부득이 하여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형 탈모 상반신 사진.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고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입학자의 선발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사정한다.

1. 필답고사성적.
2. 구술고사성적.
3. 신체검사상황.
4. 출신학교 최종 2년간의 학업성적

제 15 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서약서 1통 및 호적초본 2통에 입학금 기타납입금을 첨부 제출하여 지정일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전항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16 조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기일내에 소정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17 조 학생은 등록기일 내에 2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학장(교양과정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단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학장의 허가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 4 장 수업연한 · 재학연한 · 교과 · 학점 및 졸업

제 18 조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 당해 예과 2년, 의학과, 치의학과 4년으로 구분한다. 각대학의 제 1학년 및 제 2학년 학생의 교양과정교육(의예과 및 치의예과의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은 교양과정부에서 관장 한다.

재학연한은 6년(예과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편입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수업 잔여연한의 1배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9 조 각 대학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으로 하고,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다. 단 필요한 대학에서는 교직과목을 둔다.

제 20 조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그 학점은 일주 1시간씩 1학기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체육과 군사훈련에 관한 것을 포함)는 일주 2시간 이상씩의 1학기간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주간을 1학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 21 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60 학점 (졸업논문은 제외)이상으로하되 일반교양과목은 48 학점이상, 전공과목은 84 학점으로 한다. 단 전공과목을 주전공과 부전공으로 구분할 때에는 주전공은 60 학점이상, 부전공은 30 학점 이상으로 한다.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일반교양과목은 당해 예과에서 과하며 이에 해당하는 학점은 전공과목으로써 충당케 한다.

예과 및 교양과정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80 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 22 조 일반교양과목은 국민윤리, 국어, 철학개론, 문화사, 자연과학개론, 체육, 교련(여학생은 제외), 제 1 외국어, 제 2 외국어를 필수로 하는 외에 하기 각 계열에서 1 과목이상(전공과목에 속한것은 제외)을 선정하여 도합 3 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범대학과 교직과정 이수자는 다음의 계열별 과목을 교직과목으로 대치할 수 있다.

인문과학계 · 철학, 윤리학, 문학, 역사학, 심리학, 논리학, 사회학, 종교학, 교육학, 인문지리학, 인류학

사회과학계 · 헌법, 법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역사학, 사회학, 통계학, 가정학

자연과학계 · 수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인류학, 가정학

일반교양과목은 제 1학년, 제 2학년에 걸쳐서 과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목의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 23 조 각 대학및 교양과정부의 교과과정은 별지와 같다. 단 선택과목은 소정 과목 외에 다른 대학 또는 다른 학과의 교과목중에서도 선택 할 수 있다.

제 24 조 매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전에 각 대학및 교양과정부에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수업과목은 다음과 같은 학년별 번호로 표시한다. 단 기수는 제 1학기분, 우수는 제 2학기분을 표시한다.

제 1 학년 101 번내지 199 번 제 2 학년 201 번내지 299 번

제 3 학년 301 번내지 399 번 제 4 학년 401 번내지 499 번

제 25 조 학생은 매학기 22 학점까지 취득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3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전학기 이수한 교과목성적이 평균 B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24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 26 조 학점에 의한 학년별은 다음과 같다.

1 학년 38 학점을 취득할때까지

2 학년 39 학점이상 76 학점을 취득할때까지

3 학년 77 학점이상 114 학점을 취득할때까지

4 학년 115 학점이상을 취득하였을 때

제 27 조 전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재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전편입대학에서 요구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제 28 조 규정된 수업연한의 재학과 과목 및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서식(1)의 졸업증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종별	졸업대학	학부 또는 학과
공학사	공과대학	

농 학 사	농과대학	
문 학 사	문리과대학	문학부(정치학과 및 외교학과제외)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정치학사	문리과대학	문학부 정치학과, 외교학과
이 학 사	문리과대학	이학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가정학사	가정대학	
	농과대학	농가정학과
체육학사	사범대학	체육학과
미술학사	미술대학	
법 학 사	법과대학	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사	법과대학	행정학과
상 학 사	상과대학	무역학과
경제학사	상과대학	경제학과
경영학사	상과대학	경영학과
수의학사	농과대학	수의학과
약 학 사	약학대학	
음악학사	음악대학	
의 학 사	의과대학	의학과
간호학사	의과대학	간호학과
치의학사	치과대학	

제 5 장 시험과 성적

제 29 조 매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행한다. 단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그 학기에 출석상황이 불량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 30 조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의 100분의 40, 출석성적 100분의 30, 예습성적 100분의 30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교련 교과목은 출석(집체훈련포함) 성적 (3분의 2 이상출석)만으로 학점을 취득 할수있다.

등 급	실 점	평점
A(우)	90 점내지 100 점	3
B(미)	80 점내지 89 점	2
C(양)	70 점내지 79 점	1
D(가)	60 점내지 69 점	0
E(보)	50 점내지 59 점	0
F(낙)	49 점이하	0

제 31 조 D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되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및 전공과목의 성적평균이 각각 C 이상이 되어야한다. 성적이 E인 교과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 2개월이내에 학장이 재시험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B 이상을 불허하며 재시험에 의하여서도 학점을 취득치 못할 때에는 F로 한다. 다만 예과 및 교양과 정부 수료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이 C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할 때에는 그 전의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한다.

일단 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강후 2개월이내에 학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교과목은 F가 된다.

제 32 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A」를 불허한다.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강후 2개월 이내에 한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휴학 · 복학 · 제적 · 복적 및 퇴학

제 33 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2개월이상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은 통산하여 4 학기, 계속적으로는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에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병역복무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하기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그 학기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등록기간중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단 본항에 의한 제적은 그 정상에 따라 다음 학기초 등록기간중에 한하여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복적은 1회에 한한다.

제 34 조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초 등록기간중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해학기에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휴학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그 학기내에 복학할 수 있다.

제 35 조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구신하여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6 조 본교학생으로서 이중학적을 가질 때에는 제적된다.

제 7 장 교내전학과 전과

제 37 조 본교 각 대학간의 전학 및 동일대학내 전과는 제 2 학년초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전항의 전학 또는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고사를 할 수 있다.

제 38 조 교내전학 또는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전학년에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39 조 전학 또는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학년초 등록기한전에 그 원서와 다음 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표.
2. 전출입 쌍방학장의 승인서, 단 전과는 소속대학장의 승인서.

제 40 조 전입학 또는 전과한 학생은 전입대학 또는 전입학과의 소정 교과

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수학점은 전입대학장의 인정을 요한다.

제 8 장 포상과 징계

제 41 조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하거나 또는 특히 미행이 있어 표창할만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 42 조 학장은 학생의 본분에 어그러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명처분으로 한다. 단 제명처분은 다음 각호중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되 총장의 명으로써 행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출석이 무상한 자.
4.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제 9 장 납 입 금

제 43 조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4 조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5 조 납입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46 조 학력과 인물이 우수한 자, 또는 학비조달이 곤란하여 납입이 불능한 자에 대하여는 2 할에 해당하는 학생 수의 한도내에서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사범대학, 공과대학 공업교육학과, 농과대학 농업교육학과 (농촌지도 교육 전공제외, 이하같다)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 47 조 시험과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도로 이를 따로 징수한다.

제 48 조 이미 납입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납입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0 장 장 학

제 49 조 본교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본 대학교 장학금 급여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급여할 수 있다.

제 11 장 학비보조와 졸업후의 복무의무

제 50 조 사범대학,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생에게는 그 일부를 제외하고 교육법 제 159 조에 의한 학비보조금을 급여한다.

제 51 조 사범대학,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는 그 기간중 학비보조금의 급여를 중지한다.

제 52 조 사범대학,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는 이미 받은 학비 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상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53 조 사범대학,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학교교육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단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복무 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여한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제 12 장 위탁생 · 청강생 및 외국학생

제 54 조 정부 각부 재직자로서 그 소속장관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라도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위탁생에게는 제 28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소정의 시험을 거쳐 수학이 허가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수 있다.

위탁생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 55 조 위탁생이 수학중 그 소속부의 직을 사하였을 때에는 자연히 제적된다.

제 56 조 수강할 실력이 있는자로서 본 대학교 단과대학 또는 교양과정부의 어떤 교과목에 대하여 청강을 희망할 때에는 학장은 재학생의 수강에 지장이 없는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청강생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청강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 57 조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원하는 자에게는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의라도 입학할 수 있다.

제 58 조 위탁생 또는 외국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13 장 공개강좌 및 계기강좌

제 59 조 본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수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 59 조의 2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제 60 조 공개강좌 및 계절수업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 14 장 직 제

제 61 조 본 대학교의 직제는 교육법시행령 및 서울대학교설치령에 의한다.

제 61 조의 2 본 대학교에 명예교수를 둔다.

제 61 조의 3 명예교수의 추대절차, 복무, 세비, 기타에 관한 사항의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 15 장 교 수 회

제 62 조 각 대학 및 교양과정부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 63 조 교수회는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써 조직하되 의장은 학장이 된다.
총장, 부총장은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64 조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되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5 조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급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상 중요한 사항.

제 16 장 학 장 회

제 66 조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학장회를
둔다.

제 67 조 학장회는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 각 대학원장, 학장, 교양과정
부장, 처장과 사무국장으로써 조직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

제 68 조 학장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제 69 조 학장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부 또는 학과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5. 장학과 장학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7 장 대학원 및 부속학교

제 70 조 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보건대학원, 사법대학원, 신문대

학원, 행정대학원, 사범대학의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여자중학교, 부속국민학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서기 195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1956년 3월 이후의 졸업(의예과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956년 졸업 175 학점(의예과 85 학점)이상
1957년 졸업 170 학점이상
1958년 졸업 165 학점이상
4. 본 학칙은 서기 195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학칙시행시의 현재 농과대학 농학과 재학생중 잠사학 전공자는 잠사학과, 사범대학 사회과 학생중 일반사회 전공자는 일반사회과, 지리학 전공자는 지리과, 역사학 전공자는 역사과의 각 해당학년에 편입한다.
6. 본 학칙은 195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학칙은 195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학칙은 195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행정학사의 학위는 1960년 3월이후의 졸업생에게 수여한다.
9. 본 학칙은 196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학칙은 196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학칙은 196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학칙은 196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학칙은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학칙은 196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학칙은 196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6. 1961년 12월 9일 학교정비기준령 및 1962년 3월 1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폐지된 대학의 학부 및 학과는 동령 시행당시의 재학생의 졸업년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한다.

17. 본 학칙은 196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학칙은 196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학칙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학칙은 196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학칙은 196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학칙은 196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학칙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본 학칙은 196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5. 1968년 2월까지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생에 대하여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되 학칙 제 21조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학사의 학위를 수여 할수 있다.
26. 본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본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본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본 개정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공과대학 조선항공학과와 조선공학전공 및 항공공학전공은 구학칙 시행당시의 재학생의 졸업년도까지 구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한다.
31. 이 학칙은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양과정부에서 관장할 교양과정 교육은 교양과정부의 사정에 따라 당분간 이를 각대학에서 행 할 수 있다.
3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3조 제 1항의 학과별 학생입학정원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33.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사범대학 가정과 및 상과대학 상학과는 동학과 재학생이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구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한다.
34. 이학칙은 196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5. 이학칙 시행당시의 사범대학 가정학과 및 상과대학 상학과 재학생에 대한 졸업에 의한 학위는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수여한다.
36. 이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7. 본 개정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8. 공과대학의 광산공학과 재학생은 1970년 3월 1일자로 자원공학과 해당학년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 39. 본 개정학칙은 197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40. 이 개정학칙은 197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41. 이 개정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2. 197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공과대학 생산기계공학과 재학생은 산업공학과 재학생으로 보며 생산기계공학과 재학생은 기계공학과에 한하여 전과 할수 있다.
- 43. 이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4. 이학칙 시행당시 군사훈련과목(R.O.T.C.)을 이수하고 있는자는 변경전 학칙을 적용한다.
- 45. 이학칙 시행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이학칙의 해당학년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별지서식 (1)

제 호	졸 업 증 서		
본적	성명		
	년	월	일생
이 이는 본교 ○○대학 ○○학과 (○○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시험에 합격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증서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2. 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심오 정치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 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칭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칭한다)을 둔다.

제 3 조 본 대학원에 설치할 학과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정한다.

1. 석사과정 850 명

국어국문학과	16명	중국어중국문학과	4명
영어영문학과	16명	독어독문학과	10명
불어불문학과	10명	언어학과	4명
사학과	16명	사회학과	10명
사회사업학과	4명	정치학과	10명
외교학과	8명	철학과	10명
미학과	4명	종교학과	4명
심리학과	4명	교육학과	6명
지리학과	10명	고고인류학과	4명
가정학과	20명	체육학과	12명
행정학과	16명	법학과	28명
무역학과	12명	상학과	12명
경영학과	8명	경제학과	16명
조소과	4명	회화과	6명

응용미술학과	8명	성악과	8명
기악과	16명	국악과	4명
작곡과	4명	물리학과	16명
수학과	16명	식물학과	8명
화학과	16명	지질학과	14명
동물학과	6명	건축공학과	10명
천문기상학과	6명	금속공학과	18명
자원공학과	10명	전자공학과	26명
전기공학과	22명	조선항공학과	10명
기계공학과	14명	섬유공학과	16명
토목공학과	10명	핵공학과	14명
화학공학과	24명	임학과	12명
농학과	10명	축산학과	8명
농생물학과	6명	농경제학과	6명
농화학과	10명	감사학과	10명
농공학과	10명	의학과	104명
수의학과	10명	약학과	20명
치의학과	42명	간호학과	22명

2. 박사과정 287 명

국어국문학과	6명	중국어중문학과	3명
영어영문학과	9명	독어독문학과	6명
불어불문학과	6명	사학과	6명
사회학과	2명	정치학과	6명
외교학과	6명	철학과	3명
종교학과	3명	심리학과	3명
교육학과	3명	법학과	12명
행정학과	6명	경제학과	6명
상학과	3명	수학과	6명

물리학	6명	화학	6명
식물학	3명	동물학	3명
지질학	6명	건축학	6명
광산학	3명	금속공학	6명
전기공학	9명	전자공학	6명
기계공학	6명	토목공학	6명
화학공학	6명	해공학	6명
농학	3명	임학	3명
농생물학	3명	축산학	3명
농화학	6명	농경제학	3명
농공학	6명	수의학	6명
의학	51명	치의학	18명
약학	12명		

제 2 장 입학 및 진학

제 4 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5 조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 또는 진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1. 대학졸업자(초급대학 제외)로서 그 출신대학장이 추천한 자. 단 사범대학 졸업자(2년제 제외)는 문교부장관의 진학 허가를 얻은 자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박사과정

1.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
2. 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제 6 조 입(진)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선발고사를 행한다.

전항의 선발고사는 다음에 의한다.

1. 전공과목 및 2종의 외국어에 대한 필답고사.
2. 구술고사.
3. 신체검사.

전항 제 1 호의 전공과목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전공과목과 관련된 과목은 인정할 수 있다.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 7 조 석사과정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장의 추천서.
3.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취학허가서.
4. 출신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7. 건강진단서.

제 8 조 박사과정 진학지원자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학지원서.
2. 지도교수의 추천서.
3. 학위수여증명서.
4. 석사과정의 학업성적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제 9 조 제적된 자로서 2 학기를 경과치 아니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학기초 등록기간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기수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 3 장. 수업연한 · 재학연한 · 수업일수 · 교과 · 학점 및 수료

제10조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3년,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수업일수는 매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별지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단 석사과정에 있어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주로한다.

제14조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최저 학과학점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4학점,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36학점으로 한다.
2. 학과학점 이외에 수업연한중 연구학점으로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매학기 2학점씩,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매학기 4학점씩을 부과한다.

제15조 학점(연구학점 포함)은 각 과정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16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제 4 장 성 적

제17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우)	90점내지 100점	3
B(양)	80 " 89점	2
C(가)	70 " 79점	1
F(낙)	69점이하	0

제18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수료 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19조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개월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3 학기,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4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치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등록기간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학기의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구신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6 장 전공의 변경

제21조 전공의 변경은 석사과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단 기수학점은 신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제22조 전공변경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기수학점 및 그성적일람표.
3. 신구전공의 각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 7 장 공개강좌 · 연구생 및 외국학생

제23조 수업에 지장이 없는한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들 수 있으며 연구생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전항의 연구생은 대학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대학원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고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공과목 및 2종의 외국

어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25조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 6조에 의하지 않고 입학 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의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27조 연구생의 수강허가 및 외국인학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초 30일내 로 한다.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28조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부교수중에서 도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히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로 한다.

제30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진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계 및 학생정원에 관한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5. 학위심사에 관한사항.
6.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 규칙, 예규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1조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부 칙

제32조 석사,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제34조 본 학칙은 서기 195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본 학칙은 서기 196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본 학칙은 서기 196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본 학칙은 서기 196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 학칙은 서기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시행전 박사과정(4년제)에 입학하여 제적중인 자에 대하여는 1960년도 이전 입학한자는 7회이상 등록을, 1961년도 및 1962년도에 입학한 자는 6회이상 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과정 수료자로 인정한다.

제39조 본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 이개정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대학원 연구생 연구실적 증명서				
본	적			
현	주소			
		성명		
		서기	년	월
		년	월	일
우자는	본 대학원에서	서기	년	월
		년	월	일까지
		서기	년	월
			일	
				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3. 경영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경영학 전반에 걸친 심오한 연구와 아울러 최고 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함양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이라 칭한다.

제 3 조 본 대학원에 설치한 학과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경영학과 석사학위 과정

정원 240명 (입학정원 120명)

제 4 조 본 대학원의 수업은 제 1 부(주간)와 제 2 부(야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입학 및 수업일수

제 5 조 본 대학원의 입학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6 조 매 학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초급대학은 제외한다) 또는 사범대학(4년제) 졸업자.
2.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 졸업자.
3.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기타 문교부 장관이 위와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8 조 본 대학원 입학 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의 학업 성적증명서.

3. 출신대학장의 추천서.
4. 이력서.
5. 최근 3개월간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6. 건강진단서.

제 9 조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할 시는 기수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 3 장 수업연한 · 재학연한 · 교과 및 학점

- 제10조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제11조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1)에 의한다.
- 제13조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 제14조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 취득 하지 못한다.
- 제15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 4 장 성 적

제16조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우)	90~100	3
B(양)	80~89	2
C(가)	70~79	1
D(낙)	69	0

제17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계산하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과목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18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제19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특수강좌 ·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20조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 특수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대학원장이 발표한다.

제22조 본 대학원에 연구생을 둘 수 있다.

제23조 연구생 과정은 1 년으로 하되 수학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전조 연구생에게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별지서식(1)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단,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대학원 연구생 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2)의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 7 조에 의하지 않고 입학 을 지원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실력을 전형하여 정원 외로 입학 을 허가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학칙을 준용 한다.

제26조 연구생의 수강허가 및 외국인 학생의 입학 허가는 매 학기초 30 일 이내로 한다.

제 7 장 교 수 회

제27조 본 대학원에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성한다.

제28조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특수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 학사에 관한 사항.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29조 대학원위원회는 경영대학원 교수 및 본 대학교 교수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0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의 설편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제32조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4조 본 학칙은 196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이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대학원연구생 연구실적증명서				
본 적				
현 주소				
	성명			
	서기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에서 서기 년 월 일부터				
서기	년	월	일까지	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별지서식 (2)

제 호				
	이 수 증			
본 적				
	성명			
	서기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대학원 연구				
생과정을 이수하였기 이를 증명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장				

4. 교육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교육계에 봉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이라 칭하며 서울대학교 내에 둔다.

제 3 조 본 대학원에 설치할 학과 전공 및 학생행정원은 아래와 같다.

교육석사 학위과정

학생정원 200명 (주야간)

전 공

- | | | |
|------------|------------|-------------|
| 1. 교육행정전공 | 2. 교육심리전공 | 3. 초등교육전공 |
| 4. 교육과정전공 | 5. 국어교육전공 | 6. 영어교육전공 |
| 7. 독어교육전공 | 8. 불어교육전공 | 9. 일반사회교육전공 |
| 10. 역사교육전공 | 11. 지리교육전공 | 12. 수학교육전공 |
| 13. 물리교육전공 | 14. 화학교육전공 | 15. 생물교육전공 |
| 16. 지학교육전공 | 17. 가정교육전공 | 18. 체육교육전공 |
| 19. 공업교육전공 | 20. 농업교육전공 | 21. 상업교육전공 |
| 22. 미술교육전공 | 23. 음악교육전공 | |

제 4 조 본 대학원의 수업은 1부 (주간)와 2부 (야간)으로 나누어 하며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입학 및 수업일수

제 5 조 본 대학원의 입학기는 학년초 30일이내로 한다.

제 6 조 매학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아래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사범대학 포함)을 졸업한 자.
2.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문교부장관이 대학졸업자와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8 조 본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장의 추천서.
3. 현직에 있는 자는 소속기관장의 진학승인서.
4. 출신대학의 학업성적 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7. 건강진단서.

제 9 조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되었던 자가 제적된지 1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기수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 3 장 수업연한 · 재학연한 · 교과 · 실무수습 및 학점

제10조 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2조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에 의한다.

제13조 학생이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6학점(연구학점 8학점포함)으로 한다.

제14조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 취득치 못한다.

제15조 소정학점을 취득한 자는 10주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실무수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16조 계절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정한다.

제 4 장 성 적

제17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우)	90~100	3
B(양)	80~89	2
C(가)	70~79	1
D(낙)	69이하	0

제18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휴학 · 복학 · 퇴학 · 제적

제19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치 못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1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등록 기간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는 자는 그 기간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특수강좌 · 연구생 및 외국인학생

제21조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 본 대학원에 연구생을 들 수 있다.

연구생은 대학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와 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현직 교원 및 교육행정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 전조의 연구생에게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증명서를 교

부할 수 있다.

제24조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 7조 및 제 8조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외국인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25조 연구생의 수강허가 및 외국인학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초 30 일 이내로 한다.

제 7 장 교 수 회

제26조 본 대학원에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서 구성한다.

제27조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특수강좌 및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 학사에 관한 사항.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28조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교육대학원 교수, 부교수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미만의 위원으로써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29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의 설편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 심사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대학원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 9 장 학위수여

제32조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실무실습을 마친 자로서 제출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따로히 정한다.

부 칙

제33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4조 본 학칙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본 학칙은 196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본 학칙은 196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본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 학칙은 69. 3. 11부터 시행한다. 다만 1968학년도 이전입학생은 구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39조 별지서식 (1)을 폐지한다.

제40조 이 개정학칙은 70. 3. 1부터 시행한다.

5. 보건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보건학을 심오정치하게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보건사업에 종사할 인재의 양성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라 칭한다.

제 3 조 본 대학원에 설치할 학과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보건학과 석사학위과정

정원 140명

- | | |
|------------|------------|
| 1. 보건행정학전공 | 2. 환경위생학전공 |
| 3. 역학전공 | 4. 보건통계학전공 |
| 5. 모자보건학전공 | 6. 생리위생학전공 |
| 7. 보건교육학전공 | 8. 보건간호학전공 |

제 3 조의 2 본대학원의 수업은 제 1 부(주간), 제 2 부(야간)로 나누어 실시할수 있다.

제 2 장 입학 및 수업일수

제 4 조 본 대학원의 입학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5 조 매학기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초급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단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허가를 얻는 자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7 조 본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출신대학장의 추천서.
3.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승인서.
4. 출신대학의 학업성적 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7. 건강진단서.

제 8 조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던 자가 1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기수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 3 장 수업연한 · 재학연한 · 교과 및 학점

제 9 조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10조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1)에 의하고 그 수업 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장과 교수가 심의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대학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6 학점 (수료논문 제외)으로 하되 필수과목 26 학점 이상, 선택과목 10 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학점은 매학기 12 학점을 초과취득치 못한다.

제 4 장 성 적

제14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성 적	평 점
A(우)	90~100	3
B(양)	80~89	2

C(가)	70~79	1
D(낙)	69이하	0

제15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수료 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16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적한다.

등록기간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특수강좌 및 연구생

제18조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 본 대학원은 연구생을 들수 있다.

연구생은 대학졸업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 교수의 추천이 있고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20조 전조 연구생에게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별지서식(1)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단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대학원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2)의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7 장 교 수 회

제21조 본 대학원에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서 구성한다.

제22조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특수강좌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학사에 관한 사항.

제23조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써 개최한다.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24조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보건대학원 교수 및 서울대학교 교수중에서 본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써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2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의 설계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대학원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부 칙

제28조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0조 본 학칙은 1959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31조 본 학칙은 196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본 학칙은 196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 본 학칙은 196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 본 학칙은 196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본 학칙은 196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본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대학원연구생 연구실적증명서

본 적
현 주소

성명

서기 년 월 일생

우자는 본 대학원에서 서기 년 월 일부터 서기
년 월 일까지 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별지서식 (2)

제 호

이 수 증

본적

성명

서기 년 월 일생

이 이는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대학원 ○○전공
과정의 전 과목을 이수하였기 이를 증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 ○ ○ 직인

6. 사법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사법시행령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이론 및 실무 지도함으로써 학식과 덕망을 구비한 판사, 검사,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이라 칭한다.

제 3 조 본 대학원의 학생정원은 200명으로 한다.

제 4 조 본 학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소정의 학업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1)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중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소정 절차에 의하여 그 논문이 통과된 자에게는 별지서식(2)에 의한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2 장 입학 및 수업일수

제 5 조 본 대학원의 입학기는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6 조 매학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제 8 조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2. 학사증 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이력서.
4. 호적등본.
5. 법원조직법 제36조 검찰청법 제21조 변호사법 제5조가 요구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건강진단서.
7.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제 9 조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 3 장 수업연한·재학연한·교과·실무수습 및 학점

제10조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본 대학원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1)에 의하고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 작성하여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학점은 36학점으로 하고 그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필수과목 16학점.
2. 선택과목 8학점.
3. 실무수습 12학점.

제14조 실무수습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민사수습 5학점.
2. 형사수습 3학점.
3. 검찰수습 3학점.
4. 변호사수습 1학점.

제15조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 취득하지 못한다.

제16조 실무수습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4 장 성 적

제17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우)	90~100	3
B(양)	80~89	2
C(가)	70~79	1
D(낙)	69이하	0

제18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19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제20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대학원위원회

제21조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원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22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전공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 특수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6.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4조 본 대학원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부 칙

제25조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의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27조 본 학칙은 196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본 개정학칙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본 학칙은 196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 본 학칙은 196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 본 학칙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1963년 3월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구학칙을 적용한다.

제32조 본 학칙은 196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6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구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별지서식 (1)

제 호		수 료 증			
본 적		성 명		년 월 일생	
상기자는 본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생				
		서울대학교총장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장			

별지서식 (2)

제 호		학 위 기			
본 적			○ ○ ○	서기 년 월 일생	
이 이는 본교 사법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사법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총장
					(학위) ○ ○ ○ 직인

7. 신문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매스·컴퓨터이론 및 그 인접과학의 이론을 심오정치하게 연구하고 그 응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이라 칭한다.

제 3 조 본 대학원에 설치할 학과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문학석사학위 과정

신문학과 100명(주·야)

1부(주간) 50명 총정원120명

2부(야간) 70명

제 2 장 입학 및 수업일수

제 4 조 본 대학원의 입학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5 조 매 학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초급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자.

단,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허가를 얻은 자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자.

3. 기타 문교부 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제 7 조 본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다음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장의 추천서

3.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 승인서
4. 출신대학의 학업성적 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7. 건강진단서

제 8 조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 할시에는 기수학점을 통산하여 줄수 있다.

제 3 장 수업연한 · 재학연한 · 학과 · 실무수습 및 학점

제 9 조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9년으로 한다.

제10조 본 대학원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할 학과목은 별표(1)에 의하고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전에 대학원장과 교수가 심의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생이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28학점으로 한다.

제13조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 취득치 못한다.

제14조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교 타대학(원)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 할수 있다.

제 4 장 성 적

제15조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우)	90—100	3
B(양)	80—89	2
C(가)	70—79	1
D(낙)	69이하	0

전항에 의하여 A 와 B 의 평점을 취득하는 학생의 수는 당해과목 응시자수의 7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수료 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17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등록기간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자는 그 기간 납입금을 면제 할 수 있다.

제18조 퇴학코자 하는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특수강좌 · 연구생 및 외국학생

제19조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20조 본 대학원에 연구생을 둘 수 있다.

연구생의 정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연구생의 입학자격은 제 6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정 과목만을 수강 할 수 있다.

제21조 전조 연구생에게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별지 서식(1)의 연구 실적 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22조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 7 조 및 제 8 조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력을 전형하여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23조 연구생의 수강허가 및 외국인 학생 입학허가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7 장 교 수 회

제24조 본 대학원에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서 구성한다.

제25조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사항
2. 수업계획에 관한사항
3. 특수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학사에 관한사항

제 8 장 대학원 위원회

제26조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신문대학원 교수 및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미만의 위원으로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27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대학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의 설편 및 학생정원에 관한사항
2.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사항
4. 기타 중요한 대학원 운영에 관한사항

제29조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최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 본 대학원에 신문연구소를 부설한다.

제32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3조 본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 이 개정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행정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행정학을 심오정치하게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고급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라 칭한다.

제 3 조 본 대학원에 설치할 학과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 과정

행정학과 200명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70명 계 270명

제 4 조 본 대학원의 수업은 제 1부(주간), 제 2부(야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입학 및 수업일수

제 5 조 본 대학원의 입학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6 조 매학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초급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단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허가를 얻는 자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문교부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8 조 본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다음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장의 추천서.
3.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승인서.
4. 출신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7. 건강진단서.

제 9 조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 할시에는 기수학점을 통산하여
출 수 있다.

제 3 장 수업연한 · 재학연한 · 교과 · 실무수습 및 학점

제10조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1)에 의하고 수업
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장과 교수가 심의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생이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제14조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 취득치 못한다.

제15조 소정학점을 취득한 자는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 적

제16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우)	90~100	3
B(양)	80~89	2
C(가)	70~79	1
D(낙)	69이하	0

제17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18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등록기간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특수강좌 · 연구생 및 외국학생

제20조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 본 대학원에 연구생을 둘 수 있다.

연구생은 대학졸업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 교수의 추천이 있고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22조 전조 연구생에게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별지서식(1)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 7 조 및 제 8 조에 의하지 않고 입학할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력을 전형하여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24조 연구생의 수강허가 및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7 장 교 수 회

제25조 본 대학원에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서 구성한다.

제26조 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특수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학사에 관한 사항.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27조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행정대학원 교수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미만의 위원으로써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28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9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의 설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0조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부 칙

제31조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3조 본 학칙은 1959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34조 본 학칙은 196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본 학칙은 196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본 학칙은 196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본 학칙은 196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 학칙은 196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 본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 본 학칙은 196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68학년도 이전입학생은 구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41조 이 개정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증명서				
본 적	성 명			
	서기	년	월	일생
우 본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년	일
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V. 교과과정

(별책 : 으로 편찬함)

여 백

VI. 학 위

여 백

1.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서울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학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석사학위

제 2 조 석사학위는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하되 그 종별은 전공학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중국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언어학과, 사학과, 지리학과, 고고인류학과, 사회학과, 사회사업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심리학과, 미학과, 교육학과

2. 정치학석사

정치학과, 외교학과

3. 법학석사

법학과, 행정학과

4. 상학석사

상학과, 무역학과

5.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6.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7. 이학석사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지질학과, 천문기상학과

8. 공학석사

건축공학과, 광산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섬유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조선항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핵공학과

9. 농학석사

농학과, 임학과, 농공학과, 축산학과, 농화학과, 농경제학과, 농생물학과, 잠사학과

10. 의학석사

의학과

11. 치의학석사

치의학과

12. 수의학석사

수의학과

13. 약학석사

약학과

14. 미술학석사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과

15. 음악석사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16. 가정학석사

가정학과

17.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18. 간호학석사

간호학과

제 3 조 석사학위의 수여는 별지서식(1)에 의한 학위증으로써 행한다.

제 4 조 석사학위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제 5 조 석사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독, 불 3개 국어중 일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대학원장이 교수중에서 지정하는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이 행한다.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그 합격을 결정한다.

대학원장이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의 이수학과 또는 해당 전공과에 가까운 학과 교수중에서 지정한다.

제 3 장 박사학위

제 1 절 총 칙

제 7 조 박사학위는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 또는 본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동 전공계의 본대학교 교수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서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 및 2종의 외국어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 8 조 대학원위원회에서 본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와 동등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2. 대학(4년제 사범대학 포함)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또는 초급대학(2년제 사범대학 포함) 및 그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연구에 종사하여 그 실적이 현저한 자.
3. 연구업적이 특히 현저한 자.

제 9 조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박사학위의 종별은 다음의 10종으로 한다.

공학박사, 농학박사, 문학박사, 철학박사, 이학박사, 법학박사, 경제학박사, 의학박사, 약학박사, 수의학박사

제 10 조 박사학위논문은 그 심사요구서에 소정의 심사료와 이력서 10통을 첨부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논문의 용어에 관하여는 제 5조를 준용한다.

제 2 절 논문의 심사

제 12 조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1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부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3 조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격의 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수리하지 않기로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10조의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료를 반려한다

제 14 조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을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 대학교 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5인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이를 심사하게 하되 위원장(주심) 부위원장(부심) 각 1인을 둔다.

제 15 조 주심은 심사개시후 6개월 이내에 심사요지와 심사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의 통과는 심사위원 5분지 4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6 조 대학원위원회는 박사학위논문(주논문)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대하여 부논문 또는 부분,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3 절 구술고사와 외국어고사

제 17 조 외국어고사는 논문접수에 앞서 이를 시행한다. 외국어고사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논문접수를 할 수 없다.

제 18 조 구술고사는 논문심사위원회의 호선으로 3인이상의 고사위원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구술고사는 담당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공개할 수 있다.

제 19 조 외국어고사는 2종으로 하되 그중 1종은 영어로 한다.

전항의 고사는 1종에 2인이상의 위원으로써 시행하게 하되 고사위원은 동전공제의 본 대학교 교수중에서 이를 위촉한다.

제 20 조 구술고사와 외국어고사의 결과는 논문심사결과와 함께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학위의 수여와 취소

제 21 조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지 2이상

의 의결로써 박사학위 수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심사요지와 구술고사 및 외국어 고사의 시행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 22 조 박사학위의 수여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지서식(2) 또는 (3)의 학위기로써 행한다.

제 23 조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자로 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문교부장관으로 부터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 24 조 박사학위를 받은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과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4 장 명예박사학위

제 25 조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26 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지 서식 (4)에 의한 학위기로써 행한다.

부 칙

제 27 조 본규정은 서기 1955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8 조 본 규정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 29 조 본 규정은 서기 196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30 조 본 규정은 서기 1960년 4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제 31 조 본 규정은 서기 1962년 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제 32 조 본 개정규정은 서기 196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33 조 본 규정은 1964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 34 조 본 규정은 1965년 5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제 35 조 본 규정은 1966년 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 36 조 이개정 규정은 1968년 4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석제	호	학	위	기
			본적	
			○	○
			서기	년 월 일
이 이는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별지서식 (2)

박제	호	학	위	기
			본적	
			○	○
			서기	년 월 일
이 이는 본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박사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별지서식 (3)

박제	호	학	위	기	
			본적		
			○	○	○
			서기	년	월 일생
<p>이 이는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p> <p>논문</p>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p>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p>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별지서식 (4)

명박제	호	학	위	기	
			본적		
			(국)		
			○	○	○
			서기	년	월 일생
<p>이 분은 ○○○함으로써(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냈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p>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p>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p>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2. 경영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제 1 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 제 2 조 본 대학원 소정의 규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경영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 제 3 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서식(1)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
- 제 4 조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한다.
- 제 5 조 석사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불, 독, 3개 국어중의 1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한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거쳐 본 대학원 위원회가 그 합격을 결정한다.
- 제 7 조 본 규정은 1966년 3월 1일 부터 실시한다.

별지서식 (1)

석제	호	학	위	기
			본적	
			○	○
		서기	년	월
				○
				일생
<p>이 이는 본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경영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경영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p>				
<p>논문</p>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장		
		(학위)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경영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3.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 1 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교육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 3 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으로 행한다.

제 4 조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시기는 매년 5월 또는 11월로 한다.

제 5 조 석사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하되 영, 독, 불 3개
국어중 1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 3인으로 하되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2인 이상의 찬성을
거쳐 본 대학원 위원회가 그 합격을 결정한다.

부 칙

제 7 조 본 규정은 서기 196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석제	호	학	위	기
			본적	
			○	○ ○
			서기	년 월 일
이 이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4. 보건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 1 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 소정의 과목을 수료한 자로서 그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보건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 3 조 석사학위수여는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으로 행한다.

제 4 조 석사학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제 5 조 석사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독, 불 3개
국어중 1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한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3인으로 하되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대학원위원회가 그 합격을 결정한다.

부 칙

제 7 조 본 규정은 서기 1959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본 규정은 1964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석제	호	학	위	기
본적				
○ ○ ○				
서기 년 월 일생				
이 이는 본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				
출하여 보건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5. 사법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 1 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조 학사로서 아래 각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법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1. 4학기의 등록을 하고 소정 학점을 취득한 자.
2.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

제 3 조 전조 제 2 호의 외국어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으로 행한다.

제 5 조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제 6 조 석사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독, 불 3개 국어중 한가지로 초록을 붙여야 한다.

제 7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한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대학원위원회가 그 합격을 결정한다.

부 칙

제 8 조 이 규정은 서기 1963년 5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제 9 조 본 규정은 1964년 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박제	호	학	위	기
			본적	
			○	○
			서기	년
			○	○
			월	일
			○	○
<p>이 이는 본교 사법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사법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p>				
<p>논문</p>				
			서기	년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학위) ○	○
			○	○
			직인	
<p>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p>				
			서기	년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
			직인	

6. 신문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제 1 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에 관한 사항은 본규정에 의한다.
- 제 2 조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 제 3 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서식(1)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
- 제 4 조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 제 5 조 석사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독, 불 3개 국어중 1종으로 초록을 첨부 하여야 한다. 단,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한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거쳐 본 대학원위원회가 그 합격을 결정한다.

부 칙

제 7 조 본 규정은 196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석제	호	학	위	기
			본적	
			○	○
			서기	년
				○
				월
				○
				일
				○
				일생
<p>이 이는 본교 신문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신문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문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p> <p>논문</p> <p style="text-align: right;">서기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장</p> <p style="text-align: right;">(학위) ○ ○ ○ 직인</p> <p>위의 인정에 의하여 문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p> <p style="text-align: right;">서기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대학교 총장</p> <p style="text-align: right;">(학위) ○ ○ ○ 직인</p>				

7. 행정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 1 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서 그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행정학과는 행정학석사 학위를,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는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3 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서식(1)에 의한 학위증으로 행한다.

제 4 조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제 5 조 석사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독, 불, 3개
국어중 1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한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위원 3분지 2이상
의 찬성을 거쳐 본 대학원위원회가 그 합격을 결정한다.

부 칙

제 7 조 본 규정은 1959년 4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본 규정은 1964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 9 조 이 개정규정은 1970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석제	호	학	위	기
본적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 서기 ○ 년 ○ 월 ○ 일 </div>				
<p>이 이는 본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 출하여 행정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p>				
<p>논문</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서기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서울대학교 (학위) ○ 행정대학원장 ○ 직인 </div>				
<p>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서기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서울대학교 (학위) ○ 총장 ○ 직인 </div>				

여 백

VII. 연 구

여 백

1. 학 술 연 구

대학의 사명은 연구에 있다.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 지려면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로 하여금 자신의 일에 전심 노력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형편상 시간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도움과 충분한 시설의 제공등 그 어느 하나의 요건도 그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곤경 속에서 단순한 연구 의욕만으로 이러한 난경을 극복하면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환경은 불우의 연속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본교에서는 이러한 환경밑에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연구를 조장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위원회를 두고 연구에 관한 제반 계획, 연구과제의 선정 또는 국비 예산으로 계상된 연구비의 배정, 연구논문집의 발간 등을 담당하여 미력이나마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근년에 이르러 정부의 위정 당국자 및 사회의 뜻 있는 자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경향이 현저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학술연구 조성비를 위시하여 민간재단, 기업체등의 연구비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본교에서도 국고 예산으로 연구비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법정기구로서 또는 교내 기구로서 체계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다.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은 그 대부분이 사계의 권위자요, 적어도 전부가 각기 전공한 학문 분야에 대하여 일가를 이루고 있는 우수한 학자들이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학술 연구활동에 있어서 영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기관의 연구비, 외국재단에서의 연구 보조, 민간재단 또는 기업체의 연구비중 상당한 부분이 본교의 교수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어 국내 고등교육 기관중에서는 학술 연구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위원회

본교의 학술연구와 도서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의 자문 기관으로 서울대학교 연구위원회를 두었다.

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과 본교 교수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으로서 조직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대학원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구성되며 이 위원회에서는 서울 대학교의 학술연구 및 논문집등 도서출판의 종합계획, 연구제목, 연구자의 선정과 연구비의 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연구계획, 연구과정의 검토와 연구결과의 분석 평가, 논문집, 학술보고서등의 편집과 발간, 출판도서의 선정과 번역도서 및 역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장하며 위원수는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10명이다. 위원은 아래와 같다.

연구위원회위원 명단

위원장	李	崇	寧	(대학원장)
부위원장	金	哲	洙	(교무처장)
위원	崔	桂	根	(공과대학)
	李	殷	雄	(농과대학)
	高	柄	翊	(문리과대학장)
	朴	世	元	(미술대학)
	郭	潤	直	(법과대학)
	朴	漢	植	(사범대학)
	李	賢	宰	(상과대학)
	徐	丙	高	(의대)

3. 연 구 비

학술연구를 위한 경비 출처의 개요는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와 과학기술처 연구비를 비롯하여 정부 각기관, 외국의 재단 또는 원조에 의한 연구비, 민간재단, 기업체 및 교수개인의 사비등 으로 대별 할수 있으며 문교부학술연구 조성비는 매년 그액수가 증가인로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활동이 활발해 질것이 예상된다.

본교 연구비

1952년도 부터 문교부학술연구조성비에서 본교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 왔다.

이 연구비의 지급대상자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으로서 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각 분야별로 연구제목,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비를 배정하여 연구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난 수년간의 연구 경과를 보면 1963년도에는 30과제 24명에게 220만원, 1964년도에는 17과제 21명에게 168만원이 지급되어 연구가 완료되었으며, 1965년도에는 국고예산에 연구비가 계상되지 않아 본교 기성회 예산에 500만원을 책정하여 인문사회과학계 33과제 55명, 자연과학계 41과제 44명의 연구자에게 지급하여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1966년도에는 인문사회계 19과제 17명이 기성회비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1968년에는 학술연구재단 기타에서 340만원을 24과제 37명에게 지급하였다.

1969년에는 본교학술연구재단에서 1천만원, 과학기술처에서 1천2백7십만원, 문교부에서 학술연구 조성비 7천9백2십만원, 도합 1억1백9십만원의 연구비를 220과제 253명에게 지급하였고 1970년도에는 본교학술연구재단에서 1,680만원, 문교부에서 9,031만원, 과학기술처에서 2,085만원, 성곡문화재단에서 725만원 기타 200만원 도합, 1억7천2백1십만원의 연구비를 851명에

게 지급하여 269과제를 연구하게하였다.

4. 학 회 활 동

우리나라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각종 학술단체에 본교 교수들은 거의 그핵심이 되어 연례, 혹은 월례 연구발표를 비롯한 실험, 실지 답사등 실로 진지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 학술단체와도 긴밀한 제휴를 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국제학술회의에 국가 대표로 혹은 학술단체의 대표로 참가하여 다대한 성과를 얻은바 있거니와 이로서 항상 국제학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과 겨누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닦음에 앞장서고 있음은 오로지 본교 교수들의 공노가 지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해 외 연 수

교수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해외의 문화와 학술을 연마하게 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국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기타 국내의 각 단체의 협조를 얻어 교수의 유학, 연구, 시찰등 해외 파견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Minesota대학교와의 기술원조 협정에 의한 파견 연구를 위시하여 교환 교수로, 또는 국가경비, I.C.A. 자금등으로 해외에 파견 연구케 한 교수는 현재까지 총 1,300명에 달한다.

1969년도의 파견수를 보면 출국자 125명에 귀국자 125명이고 1970년 12월 31일 현재 출국중에 있는 자는 총 77명에 달하고 있다.

6. 연 구 소

본교에서는 교수들의 체계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종합적인 연구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각 학문분야별로 연구소를 설치하였는데 법정기구로 6개 연구소와 단과대학 부설기구로 15개 연구소와 재단법인으로 1개 연

연구소를 합하여 22개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인문, 사회계가 11개 연구소, 자연과학계가 11개 연구소로 나누어 진다.

각 연구소는 소장과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연구소에 따라서는 특별 연구원과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자격은 각 연구소의 규정에 따른다.

각연구소의 예산은 법정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정부기관을 위시하여 외국 기관 및 재단 혹은 기업체등과의 연구사업 계약에 의해 연구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구소의 구실을 충실히 다 한다고 볼수는 없겠으나 최소한의 예산으로 연구의욕을 가지고 연구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내기구를 법정기구로 하는 문제와 각연구소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본교 각연구소의 설립목적과 현재까지의 실적과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 연구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학연구소

어학연구소는 전신인 한국어훈련원을 본교에서 인수하여 1963년 1월 1일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로 개칭 설립하였으며 어학 및 언어교육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을 위하여 어학연구, 어학능력측정 및 교육훈련등을 행하고 있다. 어학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최신설비인 어학실험실 3개를 보유하고 있어 어학연구 및 훈련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본교 재학생의 언어교육, 중등학교 외국인 교사의 재교육, 외국기관 종업원, 정부기관의 해외파견 공무원 기타 일반인의 어학 훈련을 활발히 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사업으로는 “한·일어의 음운비교” “표준 영어능력측정 문제작성”, “한·영어의 비교연구” 등을 비롯하여 매년 1건 이상의 연구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연구지인 “어학연구”와 “언어교육”을 연2회 발간하고 있다. 교육훈련 사업으로는 70년 7월 현재 본교 재학생의 영어훈련 353명, 중등학교 영어교사 재교육 243명, 재일교포 유학생의 국어 훈련 233명, 정부해외

과전요원 및 기타 일반자의 영어훈련 8,528명 기타 주한 외국기관원, 본교 직원 및 연구생 훈련등으로 많은 인원을 훈련해 왔다.

진행중인 연구사업으로는 “한·영어의 통사구조에 있어 주요범주상호간의 기능적 결합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및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 어휘통제에 관한 연구”, 국어 음운의 음향 음성학적 분석”, 등을 비롯하여 “영어교육총서” 발간등이 진행 또는 계획중에 있다.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서 한국의 법학교육 및 법률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입법, 사법, 행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간의 업적으로는 우리나라 초유의 사업으로서 전국이래의 대법원 판례를 민사법, 형사법, 공법으로 나누어 이를 년도별로 정리하고 법조문에 의한 주역을 가하여 각분야에서 2편씩 발간 하였고 학술연구지로서 “법학”을 년 2회로 발간하여 현재까지 11권 2호를 발간하였고 “한국의 법학교육”과 “한국의 법조인”을 국영문으로 발간 국내외에 보급하였으며 경제기획원 및 유세이드의 요청에 의한 공동연구인 “외자도입에 대한 법률적 제문제”와 국토통일에 대비한 법률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교수연구지원, 공동연구지원, 교수해의 파견, 전국법학교수대회 및 법학교수회구성등 다양한 업적을 이룩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는 민사 4집과 형사 2집을 비롯하여 “법학” 12권1호와 2호를 발간할 계획이다.

학생지도연구소

본 연구소는 학생생활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도 및 학생지도 요원 양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학생들의 개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인 상담지도, 학생들이 요청하는 각종검사, 신입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각종학생단체의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성 함양을 위한 합숙 및 협의회 그리고 재일교포 모국유학생 특별지도등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면에 있어서

도 “학생지도에 관련된 각종검사의 타당도 분석연구 및 검사기구의 발전연구”의 수편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들은 “학생연구”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또한 인쇄물로는 “학생연구”지 외에 연차보고서를 국·영문으로 간행하였고 학생들의 학업향상과 대학생활에 참고가 될수있는 팜프렛 자료등을 수시로 발간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생약연구소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의약 분야와 기초 연구기관으로서 유일한 것이며 가장 오래된 연구소이다.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생약의 유효성분에 대한 물리 화학적인 연구 및 작용 기전을 연구함으로서 의약품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천연물화학부·생물화학부·생물리학부·약효학부·조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정밀 기계와 17,448명의 연구자료 공급포지 및 1,700종의 학술표본을 활용하여 화학·생물학·의학·약학·농학 등 각 전문연구자가 유기적으로 협동연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구자의 지도육성도 하고 있다. 최근 연구실적으로는 “인삼의 유효성분으로서 배당체계산화합물의 분리 또는 확인 성분의 하나로서 알파, 피롤리돈의 발견”을 위시하여 10여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외 국민교육연구소

본연구소는 재외국민 모국유학생의 예비교육 및 재외국민교육문제의 연구와 자료수집등에 관한 사항의 수행을 임무로 1970. 6. 25일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거 설치되었다. 본연구소는 내부조직으로써 예비교육부, 학생지도부와 사무실을 두어 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본 연구소에서 3회에 걸쳐 28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문대학원 신문연구소

본 연구소는 신문, 방송, 출판 및 공보등 매스컴 커뮤니케이션분야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종사하려는 자의 지도 및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매스컴 커뮤니케이션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재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한국출판에 대한 연구”의 29권에 달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87명의 연구생을 수료시켰다. 현재는 “동부아시아 각국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 분석기”를 사용하여 미디어의 내용과 효과에 관한 계량적이며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문연구소학보” 제8집을 발행할 예정이다.

상과대학 한국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소는 경제학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협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제이론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 경제의 각분야에 걸친 제반문제를 학술적으로 해명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에서는 한국경제연구부를 비롯한 6개 연구부를 두고 있으며 경제관계 국내외 연구자료의 교환수집과, 연구 총서의 발행, 학술논문집발간, 해외 주요 논문발취집 발간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창설이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100여건의 연구실적을 남기고 있으며 경제논문집을 매년 2회 발간하고 있다.

공과대학 부설 응용과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생산기술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향상과 국가의 산업개발에 대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학 및 공업에 관한 연구, 정부 기타 각 기관에서 위촉하는 연구, 국내 각 기관의 기술자 재훈련, 외국의 각 연구기관의 학술 및 기술 정보 교환등 사업을 행한다. 현재는 본교 종합 캠퍼스 마스터프랜에 대하여 연구 수행중에 있다.

농과대학 부설 농업과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농·임업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농·임업 생산기술의 향상과 국가 농·임업시책에 대한 방향제시와 자료제공 및 농·임업교육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그간의 주요 업적으로서 “초자원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6회의 교수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으며, 진행중인 연구사업으로는 초자원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Ⅱ)를 계속하고 있다.

농과대학 부설 열대농업연구소

본 연구소는 열대 및 아열대 지방의 농·임업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계몽을 통하여 그 지방의 농·임업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열대농·임업개발을 위한 조사, 생산 계통 및 보급향상에 관한 연구와 국내의 기술자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데 현재의 연구사업으로는 “월남의 농업실태 파악 및 우리나라 농산물과의 교역증대를 위한 가능성 규명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문리과대학 부설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본 연구소는 동양문화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향상과 세계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업적으로는 “규장각 도서 한국본 도서해제 및 목록”을 비롯하여 20여건의 연구업적과 연구소지“동아시아문화9집”을 발간하였으며 그외 연구총서의 출판, 11회에 걸친 학술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현재 계획사업으로 한국학 대사전을 기획 편집중에 있다.

문리과대학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본 연구소는 국내의 학자간의 긴밀한 제휴하에 한국의 인구 및 이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며 인구문제연구에 기여 할 학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

되었으며, 인구현상의 조사 및 연구, 연구성과 및 연구자료의 수집 및 정리 간행물의 편집, 출판,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 개최,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연구상의 협력등 사업을 행한다.

문리과대학 부설 해양생물연구소

본 연구소는 해양생물에 관한 생물학적 연구를 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해양생물연구자를 양성하며 수산개발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생물학적 기초에서 분석 검토 및 시험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 되었으며 해양생물에 관한 제반 생물학적연구, 본교 생물학계 재학생의 임해생물 실습지도, 정부기타 연구기관에서 위촉된 연구사업, 외국의 해양생물 연구기관과의 학술교환등의 사업을 행하는데 이미 “한국산 한천원소에 관한 연구” “Alginate자원 해조에 관한 연구” 등 10여건의 연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경기만의 해수오염과 기초생산력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문리과대학 한국문화연구소

본 연구소는 한국문화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적향상 및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9년 6월에 설립되었다. 설립이래 “한국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의 사회와 사상연구”의 결과로 한국문화 연구총서 제1집부터 제4집을 발간하였으며 1971년도에는 “한국의 사회의식 구조의 변천 과정 연구”결과로 한국문화 연구총서 제5집—제8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본 연구소는 교육에 관한 제문제를 연구함으로써 한국교육의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며 새로운 교육이론의 조속한 도입과 아울러 독창적이며, 이론적인 연구를 행하고 대학교육과 현지교육의 유기적 관련에 관한 연구, 외부기관 특히 문교부 또는 각급학교로 부터 위촉을 받은 교육문제의 연구 조사와 분석 및 진단, 국내의 교육계에서 발행되는 각종 연구자료의 수집, 보관 정리등 사업을 행하는데, 현재까지 “교사 자질 예언을 위한 평가 연구”

외 22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파대학 부설 한국경영연구소

본 연구소는 경영문제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연구와 아울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안정및 발전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첫째 조사연구사업으로서 경영 및 산업전반에 관한 제반 기초자료의 수집, 정비, 및 발표와 국내외연구기관과의 연구상의 협력과 위탁연구를 행하고, 둘째 경영지도 사업으로서 기업진단, 경영상담, 교육훈련, 한국경영실무연구회의 운영 등을 행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는 8건의 경영진단과 “경영논집”과 “경영실무”를 각각 4편4호까지 발간하였으며 5차에 걸친 학술강연회 및 세미나의 실적을 남기고 있으며 71년도 사업계획은 “경영논집”과 “경영실무” 5권 1호부터 4호를 각각 출판할 예정에 있으며 매월 “경영실무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부설 결핵연구소

결핵의 치료와 예방의 발전, 한국결핵의 학술적 실태조사, 결핵관리사업의 발전을 연구조사함으로써 결핵의 근절과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료 및 역학적 예방의학적 검토와 대책에 관한 연구조사, 결핵질환 및 유사질환의 병리 및 세균학적 연구조사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결핵환자의 생화학적 검토 및 항결핵제의 약리학적 조사연구, 결핵 및 호흡기 질환의 생리학적 연구조사와 기능적 진료에 관한 연구등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임상부, 병리세균부, 화학부, 생리부를 두고 각부에는 부장과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약간명씩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소장을 자문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실적으로는 결핵환자의 관리 외에 기관지염 치료법에 관한 연구 등 수건을 행하였다.

의과대학 부설 국민체력과학연구소

모든 연령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체력과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실제에 응용하여 국민의 체력증진과 체위향상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소장 아래 기초체력학부, 영양학부, 임상의학부, 체력관리부, 건강관리부, 심리적성부를 두고 각부에는 부장,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두고 있으며, 과거의 연구업적은 36건이나 되며 1970년도에는 “한국인 청소년의 표준체중” 및 “걷기의 생리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의과대학 부설 암연구소

암 및 이와 관련된 질병들의 본태,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제반 연구를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와 암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암의 조기진단에 관한 분야의 연구를 행한다. 최근 연구실적으로는 위암의 병리조직학적 연구 외 6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의과대학 부설 열대의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기술 및 경제진출에 앞서 열대지역의 특유한 질병을 조사연구하여 동 지역에 파견되는 자에게 열대병과 그 예방책을 교육훈련하고 전염성질병의 국내침입을 방지하며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한 의학적 봉사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장아래에 열대위생 연구부, 열대병 연구부, 열대병예방 연구부를 두고 최근에는 월남의 열대성 질환과 그 예방, 방역 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외 아프리카 파견의사 열대의학 보수교육을 4차례 걸쳐 실시하였다.

의과대학 부설 풍토병연구소

한국고유의 풍토병을 연구조사하여 병원체 근절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며 풍토병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생충질환, 절족동물매개성질환, 풍토성이 농후한 세균 및 바이러스 질환, 결핍성질환의 조사연구와 치료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는 “제주도 사상충증의 역학적 연구 및 집단치

료”를 위시하여 경남지방에서 “태락촌 폐흡충”을 발견하는 외에 다수의 연구를 행하였으며 현재 제주도 사상충증의 집단치료를 실시계획중에 있다.

보건대학원 부설 국민보건연구소

본 연구소는 국민보건에 관한 과학적연구와 계몽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으며 국민보건에 관한 연구, 조사통계, 연구결과의 보급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데 특히 보건사회부로 부터의 위촉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현재는 중앙행정개혁 위원회 위촉을 받아 보건행정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계획 사업의 행정적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

본 연구소는 행정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행정개혁에 관한 전반적 평가” 외 15건의 연구사업을 비롯하여, 1970 년도에 “전북 및 경남의 지방행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71 년도에는 행정의 TQC제도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한국무역연구소

본 연구소는 한국경제의 세계 진출과 무역에 관한 기본정책수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국제적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1967년에 상과대학에 설치하였다가 이어 1968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상과대학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간의 연구업적으로는 “무역연구지를 2권4호까지 발간하였으며 4차에 걸쳐 무역연구발표회와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수입수요의 예측과 그조정방안”등 13건의 무역정책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1971년도의 사업계획으로는 무역연구지를 계속 3권1호부터 4호까지 발행할 예정이며, 주요수출상품의 수송수요예측과 수송비 절감방안에 대한 연구와 무역심포지움 및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 백

VIII. 장 학

여 백

1. 장 학 제 도

가. 목 적

국민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 27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천부의 능력을 가지고도 경제적인 사유로 인격도야의 필수요건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불행한 일이 될것이므로 교육법 제 158조는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는 재능이 있는자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원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학제도는 학력이 우수하고 가세가 빈곤한 학생들을 구제하여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지식을 연찬할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나. 장학의 범위

(가) 장학의 범위는 매우 광범하여 장학금의 급여 또는 면제등 실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 (1) 각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 (2) 학력이 우수하나 가세 빈곤한자에게 학생 정원의 20%범위내에서 수업료를 15%범위내에서 기성회비를 면제하여주는 소극적인 납입금 일부 면제
- (3)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 법관, 간호원등의 학술 또는 기술에 관한 요원을 국비로 양성하는것.
- (4) 기타 특정한 범위의 학생을 특수한 기숙사에 입사시켜 공부를 시키는 것 및 직업보도 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부직알선을 적극 추진하는 근로장학제도도 넓은 의미의 장학의 범위에 속할 것이다.

(나) 본교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은 실업계 학생들을 우대하고 있는

설정이다.

다. 장학금 급여 대상자

(가) 본교에서 취급하는 장학금 급여 대상자

1) 국가 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2) 애국지사의 자녀

3) 상이군경 학생

4) 4.19 상이학생

5) 학력이 우수한자로서 경제적 사유로 납입금의 납입이 곤란한자.

6) 특히 서울대학교 장학금은 성적에 구애됨이 없이 가세 빈곤하여 등록이 현저히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

(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범위는 장학단체에 따라 "A" 학점 "B" 학점 또는 평균 80점 이상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B" 학점이상이고 가세 빈곤의 정도는 단체에 따라 상이하나 사회 통념에 따라 총장의 재량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비과세 대상자는 물론 재산세 및 농지세에 대한 일정한 한도액 미달자로 하고 있다.

라. 장학금의 종류

성질에 따라

(가) 대여 장학금

학력이 우수하나 가세 빈곤한 자에게 국가 예산중에서 장학금을 대여받고 졸업후 대여 받은 기간의 4배에 해당하는 기간중 원금만 반환한다.

(나) 일반 장학금

일반사회 독지가 또는 각종 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다) 서울대학교 장학금

본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학금으로 일반 장학금의 성적 및 기타 장학단체의 특수성에서 오는 제한을 보완하여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1억원모금 실적에 따라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것이다.

(라) 국가 요원 양성을 위한 학비면제.

다음의 학생에 대하여는 학비가 면제된다.

- 1) 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
- 2) 법관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원
- 3) 공업교사 양성을 위한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 4) 농업교사 양성을 위한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 5) 양호교사 또는 간호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간호학과

(마) 학비 면제

- 1) 학생 정원의 20%범위내에서의 수업료 면제
- 2) 학생 정원의 15%범위내에서의 기성회비 면제

마. 본교의 장학 현황

본교에서는 1959. 10. 20 교내에 재단법인 함춘장학회를 설립하여 그간 계속 기본 재산의 확충에 노력하여 왔고 특히 지난 68. 11. 1 부터는 함춘장학기금 1억원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약 4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재단법인 함춘장학회를 서울대학교 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회 독지가들이 설립한 101개 장학단체에서 매학기별로 1인당 5,000원 이상 최고 120,000원에 이르기까지 그 지급 금액은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납입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체에 따라서는 교통비 및 문구대까지 급여하는 경우도 있다.

(1970년도 제2학기분)

종 류	단체수	지급 또는 면제인원	1인당 지급액	지급총액
본부 취급 장학금	33	1,196	5,000—120,000	22,313,700
단과대학 취급 장학금	69	478	5,000—120,000	16,760,590
수업료면제		1,716	5,700—7,800	11,084,700
기성회비면제		1,984	4,000	7,936,000
계	102	5,374		58,094,990

등록생수에 대한 비율은 41.0%임.

2. 학생 보건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예방치료, 상담등)를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학생의료보험기구 설치운영, 학생신체검사 실시, 학생환경위생시설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보건진료소

(1)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1957. 4. 1. 부터 개설한 보건진료소에서는 약 20명의 의료 전문직을 두어 다음의 업무를 분담 수행하고 있다.

- (가) 건강상담
- (나) 보건통제
- (다) 집단검진
- (라) X-Ray 촬영
- (마) 기생충 검사와 구충
- (바) 치과보철과 치료
- (사) 결핵의 발견과 치료

(2)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학생의 이용상황은 다음과 같다.

1965. 3. —1966. 2.	12,194명
1966. 3. —1967. 2.	16,065명
1967. 3. —1968. 2.	21,531명
1968. 3. —1969. 2.	16,181명
1969. 3. —1970. 2.	13,895명

나. 학생 의료보험

(1) 목 적

1961. 9. 1에 발족한 학생의료보험 기구는 “서울대학교 학생의료보험 규정”이라는 본교 내규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바 동 규정 제2조에는 “이 보험은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자에게 적절한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라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2) 기 구

학원이라는 특수집단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재 학생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한 본 제도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 할 것이며 그 기구는 이사 7명과 감사 2명으로 의결기관이 구성되고 집행기관으로는 치료비 심사위원회가 있어 의료전문가 중에서 선임한 위원 3명과 학생 처장 및 장학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총장으로 되어 있다.

(3) 재 원

학생 의료보험의 운영재원으로는 학생이 등록시에 매인당 100원씩을 납입한 금액을 이에 충당하고 있다.

(4) 보험금 지급한도액

보험금 지급원칙은 “학생의료보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급	공상(총장이 승인한 행사에서 부상한것)	28,000원까지
2급	중병으로 입원 가료자	18,000원까지
3급	학업에 지장 있는 질병으로 입원 가료자	8,000원까지
4급	치과 보철 및 기타 질환가료자	5,000원까지

(5) 보험금 지급 실적

1961년	25명	83,395원
1962년	170명	691,621원
1963년	257명	966,277원
1964년	304명	864,192원
1965년	309명	1,094,101원
1966년	600명	1,354,670원
1967년	203명	863,220원
1968년	235명	1,122,465원
1969년	242명	1,125,200원
1970년	326명	1,898,348원

다. 학생 신체검사

(1) 근거, 목적, 필요성

학교보건법(1967.3.30 법률 제1928호)과 학생 신체검사(1961.12.1 문교부령 제112호)에 근거를 둔 이사업은 매년 1회씩 학기초에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되어 “학생신체충실지수”의 평균치산출 학생질병과 기생충보유율 등의 통계등에 의하여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대비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보건과 학생체질 개선등의 중요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신체장애와 질병의 조기발견 그에 수반된 예방및 치료권장 또는 전염병의 방비 등 학생 개개인의 보건은 물론 공중보건에도 공헌하고 있다.

(2) 신체검사(집단검진포함)의 종류와 내용

학생신체검사는 신체검사, 체질검사, 체능검사로 구분되는 것이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체검사

흉곽, 눈, 귀, 코, 목, 피부, 치아, 기생충, 영양등에 대하여 결함 유무와 질병 또는 보균상황을 검사한다.

(나) 체질검사

신장, 체중, 흉위, 좌고, 척추 등의 결함과 질병 유무를 측정한다.

(다) 체능검사

폐활량, 달리기, 뒹뛰기, 던지기, 턱거리, 옆드려굽히기 등의 능력측정 또는 유무를 검사한다.

(라) 학생환경위생

학생이 이용하는 교내의 식당, 다방, 휴게실, 이발소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학생보건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매년 춘추 2회로 구분하여 보건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설검사 위생검사 및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그때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도하고 시정을 요구하되 극히 불량한 업소에 대하여는 국유 재산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염병질환의 예방과 학생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3. 학생 후생

본교의 12개 단과대학과 7개 대학원의 학생 13,800명 ((1970학년도 기준)의 집단생활에 불가피한 학생후생 시설은 국가경제의 부흥과 학교의 운영정상화에 따라 보다 증진 되어야 할 부문이며 특히 대규모의 학생회관의 건립과 학생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의 확장문제는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인바 앞으로 본교 10개년 계획에 반영될 것이며 현재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 후생 시설

학생 후생시설은 거의 전부가 국유건물을 이용한 사후허가식 개인 운영체제로 되어 있는바 각대학에 산재한 식당, 다방, 휴게실 및 이발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식 당	16개소
다 방	5개소
휴게실겸 오락실	10개소
이 발 소	6개소

나. 기숙사 현황

본부로 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공과대학과 농과대학 구내에는 현대식 기숙사가 설치(남녀 별도 설치)되어 학생실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과대학 간호학과와 사범대학원에는 국비부담으로 된 기숙사가 있고 본부에서 직활하는 재일교포 학생을 위한 왕릉사 및 종합 기숙사인 정영사등이 있는 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공과대학 기숙사	수용능력	594명
(2) 농과대학 "	"	562 "
(3) 의과대학 " (간호학과)	"	90 "
(4) 사범대학원 "	"	62 "
(5) 왕릉사	"	62 "
(6) 정영사	"	120 "

계

6개소 1,490명

다. 직업보도

재학생과 졸업예정자의 취업 및 직업보도를 위하여 1959.6.1. 부로 설치된 직업보도 위원회는 각계 인사와 관계교수로 구성되어 그 강화에 필요한 대책을 연구 검토하고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졸업예정자의 취업알선과 재학생으로서 부직을 필요로하는 학생들에게 가정교사, 외국어 개인지도, 도안, 번역, 원고정리, 타자, 필경등의 알선업무를 전담케하고 있는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생부직 알선

1966년	등록생수	1,346명	취업자수	708명
1967 "	"	1,835 "	"	888 "
1968 "	"	2,685 "	"	995 "
1969 "	"	2,137 "	"	1,310 "
1970 "	"	1,948 "	"	1,452 "

(2) 졸업생 취업알선

졸업생 취업문제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더불어 공과계, 상경계, 농업계, 사범계, 의약계, 기타의 순서로 최근에는 거의완전 취업상태에 있으나 법대, 문리대, 미대, 음대 등 아직도 취업에 미흡한 대학이 있어 각종 대기업체의 실태를 조사하고 사회명사와 저명교수들의 취업자로서 취해야할 필요한 태도와 자세에 대한 글을 수록한 취업지침을 발간하여 본교 출신자의 질적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졸업예정자의 명단을 발간하여 국내 각종 대기업체에 배부함으로써 채용을 권장하고 있는바 그 취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1966년도	졸업자수	1,809명	취업자수	1,422명
1967 "	"	1,894 "	"	1,584 "
1968 "	"	2,038 "	"	1,818 "
1969 "	"	2,088 "	"	1,856 "
1970 "	"	2,251 "	"	1,761 "

4. 해 외 유 학

선진국가의 학술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해외 유학은 매년 4회에 걸쳐서 문교부에서 “해외 유학생 전형고시”를 실시하고 있는바 본교에서는 그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지도를 하고 있으며 그 응시상황은 다음과 같다.

1965년	923명
1966 "	835 "
1967 "	798 "
1968 "	669 "
1969 "	800 "
1970 "	700 "

여 백

IX. 학생지도 및 생활

여 백

1. 학생 지도

학생회

과외활동을 통하여 자유롭고 책임있는 보충교육을 획득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습득케 하려는 교육적인 의도와 학생들 자신이 제반활동을 계획하고 실제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두었다.

이 이외에 각 학생회의 연락 또는 전교적인 활동들을 위하여 연합체로서 14명(13 단과대학학생회장 및 총여학생회장)의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본교 총학생회가 있다. 각 학생회의 조직기관 또는 실제운영에 있어서의 담당 부서들은 각기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제한 관계상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대체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상호 견제할 수 있고 또 서로 협조하여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되어있다.

의결기관인 대의원회는 학과별 학년별 또는 학생수 비례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여 학생회의 제반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집행기관은 학생들의 직접 선출 또는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출 등 방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각기 담당부서에 따라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집행운영하고 있다.

집행부의 부서는 각기 학생회에 따라 다소 달리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나 대략 서무, 경리, 계획 및 연락과 조정을 담당한 총무부 학생활동 및 학보의 편찬과 문예 및 예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 학술부, 체육부, 후생부, 여학생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학내의 모든 학생활동을 위한 단체는 학생회에 속하고 있으며, 전교에 학술단체 79, 종교단체 28, 체육단체 37, 교양친목단체 55, 봉사단체 9, 합계 208개의 단체가 학생회산하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학생활동의 지도

본교에는 학생들의 생활 및 과외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본부 및 각단과 대학에 학생지도 위원회를 두었다. 본부의 학생지도 위원회는 학생들의 생활 및 과외활동 지도 방침을 심의하고 수립하며 학장회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심의사항으로서는 학생들의 생활 및 과외활동 지도 방침을 수립 각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의 연락조정 기타 학생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한편 체육활동에 관하여는 체육지도위원회에서 계획 및 실제 운영에 있어 유요적절한 경험을 체득하도록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동시에 교외경기의 참가 및 경기에 대한 기술지도 등 제반조언과 협력등 지도를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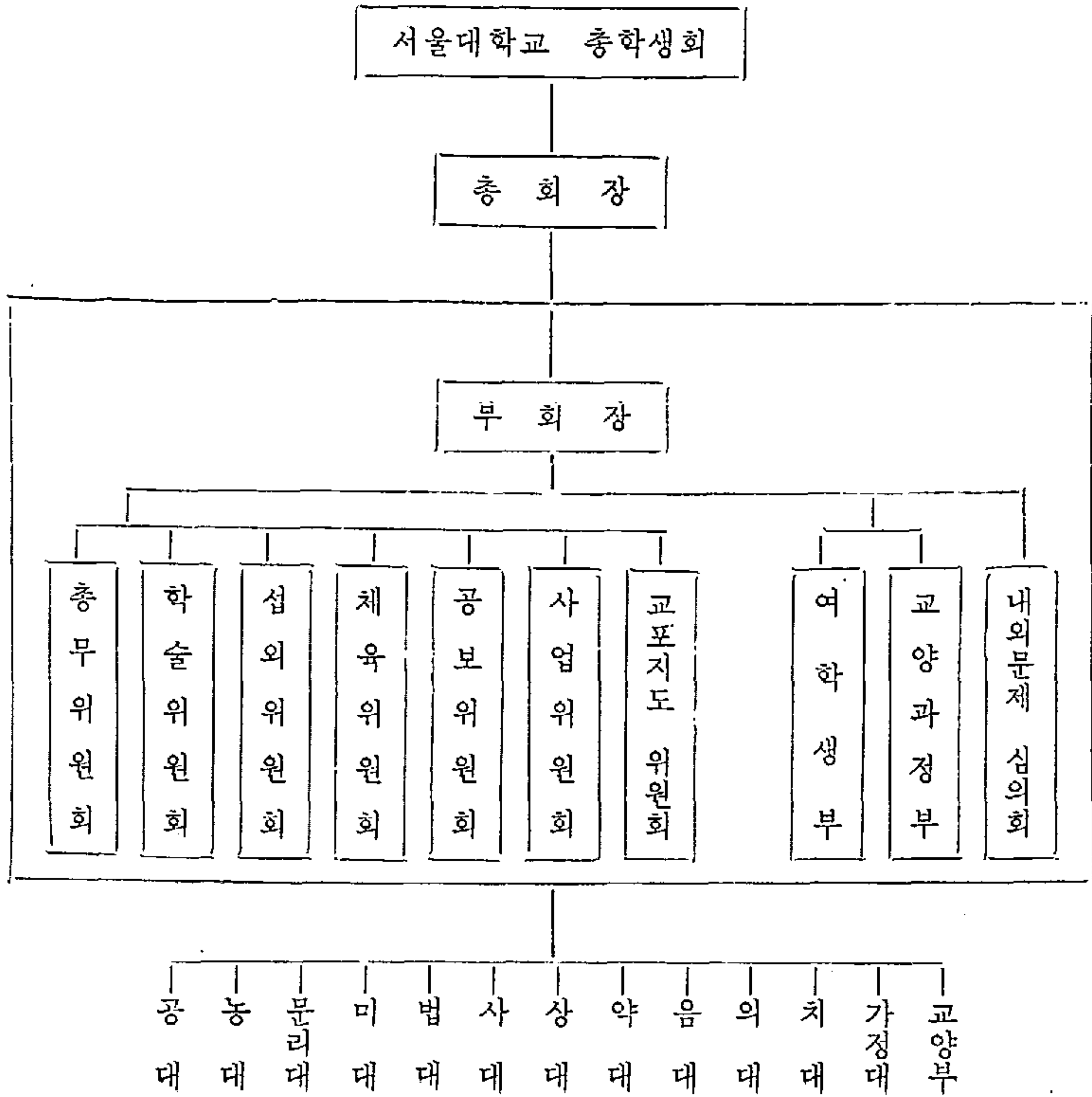
본교에 있어서의 학생회 활동은 물론 모든 학생의 과외활동은 총장, 학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단과대학을 단위로 하는 학생 활동은 그 대학의 학장, 2개 단과대학 이상이 합동으로 하는 학생활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활동 단체의 조직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도교수를 추대하여야 하며 활동학생의 명단, 정관 또는 규약, 간부명단, 사업 계획서등을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시에 등록을 팔하여야 한다.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활동에 관한 첨부물을 첨부 하거나 배부물을 배부 하거나 혹은 활동을 위한 후원을 얻으려거나 시상 등을 기관이나 개인에게 의뢰코자 할때에도 사전에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생의 조직도표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학생들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제재하거나 적극적인 관여를 피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며 학원내의 질서를 확립하고 교육적인 견지에서 이를 선도하려 하는데 있는 것이다.

학생활동의 학생회 조직 내용은 별표와 같다.



학생활동 상황

학생들의 과외활동은 학생회 또는 학생회 산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활동상황 중에는 연례, 월례, 기례 행사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행사도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는 학생들 자신에 의하여 거출된 금액으로 그 대부분이 충당된다.

1969학년도 학생과외활동 실적을 보면

학보 또는 각종 간행물 발간(별항기술)

학술강연회	49회
학술 회의	161회
연구발표회	63회

봉사활동	42회
체육행사	63회
정서교육실시	50회

기타 대학제, 위문행사, 좌담회등 126회에 걸친 허다한 행사를 하였다. 특히 하기 휴가 동기 휴가를 이용하여 향토 개척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봉사, 생활의 개선과 문맹퇴치를 위한 계몽사업, 무료진료반에 의한 순회 진료봉사, 위문봉사등 적극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한편 자매부락 결연운동에 참여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양한바 있고 여학생회에서는 양노원을 방문하여 다채로운 위문행사를 전개하는 등 현재에도 꽃꽂이 강습, 교양강좌 등 각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본교의 학생과외활동 지도방안

1. 지육편증을 지양하고 지·덕·체의 삼위일체의 학생지도책을 강구한다.
 - 가. 학생지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생활 및 활동을 선도하며
 - 나.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명랑화하게 하기 위하여 오락시설 영화감상 시설의 구비를 추진하고
 - 다. 학생들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체육대회 개최를 장려 추진하고
 - 라. 학생지도연구소를 통하여 개인지도 및 집단지도책을 강구하며 심리검사, 개인상담, 직업보도, 과외강좌 등을 개최하여 문제의 해결에 노력한다.
2. 반공적인 이론체제를 확립하고 그 실천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공생활 의식을 배양하며 강연회, 심포지움을 활발하게 개최하고 각종 전시회를 통하여 반공사상을 고취한다.
3.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한다.
 - 가. 학생회 산하단체의 활동을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지도하며

나. 학생활동의 경비관리를 규제화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
다. 향토 문화향상을 위한 학생봉사활동을 재검토 강화하고
라. 과외활동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연구를 계속한다.

4. 학원내의 규율을 확립하기 위하여 신상필벌제도를 구현하고 학생출석
독려를 강화한다.

2. 학 생 상 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
고 있으며 그와 같은 문제는 그들의 학업생활과 개인 생활에 적지 않은 지
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당면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여 보다 건전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도와주자는 것
이 상담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1.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자기 이해
의 부족이나 현실과의 갈등에서 기인되는 개인적인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한
다.

2. 이해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일상 생활에
서 받는 여러가지 내적 갈등과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그
럼으로써 학생들은 보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생활에 전념 할
수 있는 것이다.

3. 학생들은 개인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학업생활이나 개인생활을 보다 풍
족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정보에 접하게
된다. 이를테면 보다 능률적인 학습방법을 위한 정보나 개인적인 흥미나 욕
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얻음으로서 보다 효
율적인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개인상담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심리
측정기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상담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학

생들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장래에 대한 계획의 수립을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개인상담에 의하여 그들의 교육적, 직업적 장래에 대한 설계를 점토하거나 세우게 되는 것이다.

5. 개인상담은 신체적 경제적 또는 기타의 원인에서 오는 열등감, 정서적 불안, 비사회성 등 심리적 적응상의 문제에 대하여 치료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상담 결과 문제되는 것을 추려보면, 정서적 안정성에 속하는 문제가 가장 많고 다음이 대인관계, 생애에 관한 문제, 경제문제, 교육태도 및 방법, 전과 및 전학, 이성관계, 가정문제, 신체적인 문제, 기타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학생 상담은 각대학의 학생과 지도교수 또는 학생지도연구실에 상담실을 두어 수시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상담에 응하고 있으나 각 대학 학생과와 지도교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건수는 극히 적은 숫자이고 전문가를 배치한 학생지도연구소 상담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점증에 의하여 다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학생 상담제 교수는 학생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교수로서 학생문제에 직접참여할 시간의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혼연히 담당할수 있고 동료 교수의 신임과 지지를 받으며 학생간의 신망이 돈독하여 쉽게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는 교수로서 보하여 있기에 각대학의 상담실 이용은 날을 거듭할수록 그 효율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3. 학 생 병 사

군사적 국방력은 실제문제로 어떠한 국가에 있어서도 가장 중대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병역법 제54조를 적용시켜서 대학생으로 하여금 재학기간중 징집을 연기하고 이같은 혜택에 의하여 본교 재학생 11,979명중 2,498명의 징집해당자가 그 은전을 받고 있다. 또한 군사 교육을 받는자가 522명에 달하며 군인 신분으로 취학 승인을 받어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도 148명이나 된다.

학생의 병사는 각대학 학생과와 본부에서 소정의 절차만 받으면 되도록

사문적으로 그 조직이 일원화되어 국방부와 그 산하 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고 있다.

4. 군 사 교 육

본교에는 육군 제101학도군사훈련단(R.O.T.C.)이 주재하여 예비장교 훈련을 위한 군사교육을 실시 담당하고 있다. R.O.T.C.는 1961.6.1에 창설되었으며 1961.5.15일 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1963.2.20 처음으로 장교 513명 하사관 5명을 배출하였고, 제2기에 528명의 장교와 6명의 하사관, 제3기에 437명의 장교와 21명의 하사관, 제4기에 401명의 장교와 17명의 하사관, 제5기에 351명의 장교와 11명의 하사관, 제6기에 352명의 장교와 6명의 하사관 제7기에 341명의 장교를 훈련 배출시켰다.

본교의 R.O.T.C.편성은 단과대학에 분산설치된 관계로 5개의 분단으로 나누어져 단본부가 이를 통할하고 있으며 현재 522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현역 장교 21명과 사병 26명이 이들의 군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R.O.T.C.의 교육목표는 각병과의 초급장교로서 공통적으로 지휘 및 통솔 능력을 부여하고 초급장교로서의 자질을 구비시키는데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야영훈련으로 구분하여 2년간에 군인으로서의 기본지식과 동작을 습득시키기 위한 학술적인 교육에 530시간 하기방학기간중 예비사단에서 화기의 실전훈련(사격술)및 중대이하의 소부대전투훈련, 군대의 내무생활, 군기의 강조등을 위한 야영훈련에 352시간 총 70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학점을 배정하고 있다.

학도 군사훈련단의 입단자격은 사상이 건전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육군 장교 표준 신체 규격에 합격한 만 18세 이상 22세 미만의 자로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본인이 원하는 자로 한다.

군사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전형에 의하여 소위로 임관되며 2년간 현역에 복무한후 예비역으로 편입되고 훈련기간 중에는 교재와 피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야영기간 중에는 침식, 수송은 물론 훈련수당을 지급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1971. 1. 1.부터 정부방침에 의하여 학생군사교련으로 바뀌게 된다.

5. 간 행 물

본교에서 발행하는 학생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정기 또는 수시로 간행되어 주로 서울대학교 학생에게 배부되는 교내 제반 뉴스, 문학계의 동향, 해외학계의 움직임, 학내여론의 창달등을 위한 학내신문, 학보 또는 학습연구지로서 그 편집에 학생이 관여하는 간행물로 현재 본교내의 학생 간행물 종류 및 발행부수는 아래표와 같다.

발행소	종 류	명 칭	발간구분	1회 발간부수
대학신문사	신 문	대학신문	주 간	17,000
공과대학	학 보	서울공대	반 년 간	2,600
농과대학	//	상 록	계 간	2,500
문리과대학	학 술 지	문리대학보	년 간	2,300
//	교 양 지	형 성	계 간	2,300
미술대학	학 술 지	미대학보	년 간	800
법과대학	학 보	피 데 스	계 간	2,000
사범대학	//	청 량 원	반 년 간	2,000
상과대학	학 술 지	상대평론	반 년 간	800
약학대학	학 보	약 원	년 간	1,000
음악대학	학 술 지	음대학보	년 간	800
의과대학	학 보	함 춘 원	년 간	1,000
치과대학	//	치 원	년 간	2,000
교양과정부	학 보	향 연	년 간	2,000

6. 대 학 신 문

서기 1952년 2월 4일 자로 피난지 부산에서 창간된 "대학신문"은 당초 한국의 전 대학을 총 망라한 범 대학신문으로 출발하였으나 각 대학교에서 제

각기 독자적인 신문발행을 피하기에 이르러, 현재는 서울대학교의 공기로 목적으로 그 기틀을 확립하게 되었다.

금년들어 창간 18주를 맞은 “대학신문”은 1주 1회 총부수 약 2만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아세아 지역의 가장 권위 있는 대학신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국내학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구독함은 물론 멀리 해외 각국에서도 한국에 관한 자료 또는 한국어 교재등으로 다루어 주문해 오고 있다.

금년 8월 3일 현재 785호의 지령을 쌓아올린 “대학신문”은 12개 단과대학과 교양과정부에서 뽑혀진 16명의 학생기자를 매체로 1만 2천명 서울대 학생의 생생한 호흡과 여론을 해부, 대변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계의 뉴스와 동향·석학독학들의 견해, 주장, 연구업적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 “아카데미즘”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총장을 사장, 편집국장(교수) 및 전임기자로 「데스크」를 지키게 하는 한편, 편집부, 서무부, 보급부, 광고부, 사업부를 각각 두어 경영합리화를 꾀하고 있고 권위 교수 5인으로 편집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수시로 도움을 받고 있다.

“대학신문”은 단순한 대학의 기관지로서가 아니라 엄정한 중립지, 생생한 뉴스지, 그리고 지성의 여론지로 자랑스런 “대학의 기수”로 그 앞날을 다짐하고 있다.

여 백

X. 서울대학교 종합건설 계획 개요

여 백

서울대학교 종합건설 계획 개요

1. 목 표

진리를 탐구하고 문화를 계승 창조할 영재를 길러 조국의 진운을 가름하며 인류 문화발전에 공헌할 세계적 대학으로의 발전을 지향한다.

2. 기본방침

- 가.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분산되어 있는 캠퍼스를 통합 계열화하여 의약 캠퍼스 및 농업캠퍼스는 현 위치에 두고 종합캠퍼스는 새로히 관악산에 건설한다.
- 나. 서울대학교 종합건설계획은 1975년 완성을 목표로 한다.
- 다. 대학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점차 대학원 중심의 대학교로 개선 발전시켜 전문분야 별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 라. 종합건설계획의 재원은 의약계 및 농업캠퍼스를 제외한 국유 재산을 매각 충당하고 부족되는 재원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 마. 외자를 유치하여 교육, 연구용 기계 기구와 도서를 연차적으로 확충 보장한다.

3. 사업개요

1) 종합캠퍼스

- 가) 의약계, 농업계를 제외한 종합캠퍼스 조성
- 나) 기존시설을 년차별로 정리하여 종합캠퍼스를 건설
 캠퍼스부지……1,077,906평(영등포구 신림동에 부지확보)
- 다) 교육단지로서의 환경 구축
 교직원 주택단지 마련

2) 의약캠퍼스

- 가) 현 의과대학(종로구 연건동) 중심으로 의약캠퍼스 조성
- 나) 현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현대적인 시설로 개축

3) 농업캠퍼스

가) 현 농과대학(경기도 수원시) 중심으로 농업캠퍼스 조성

나)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1 농, 임산물 가공 실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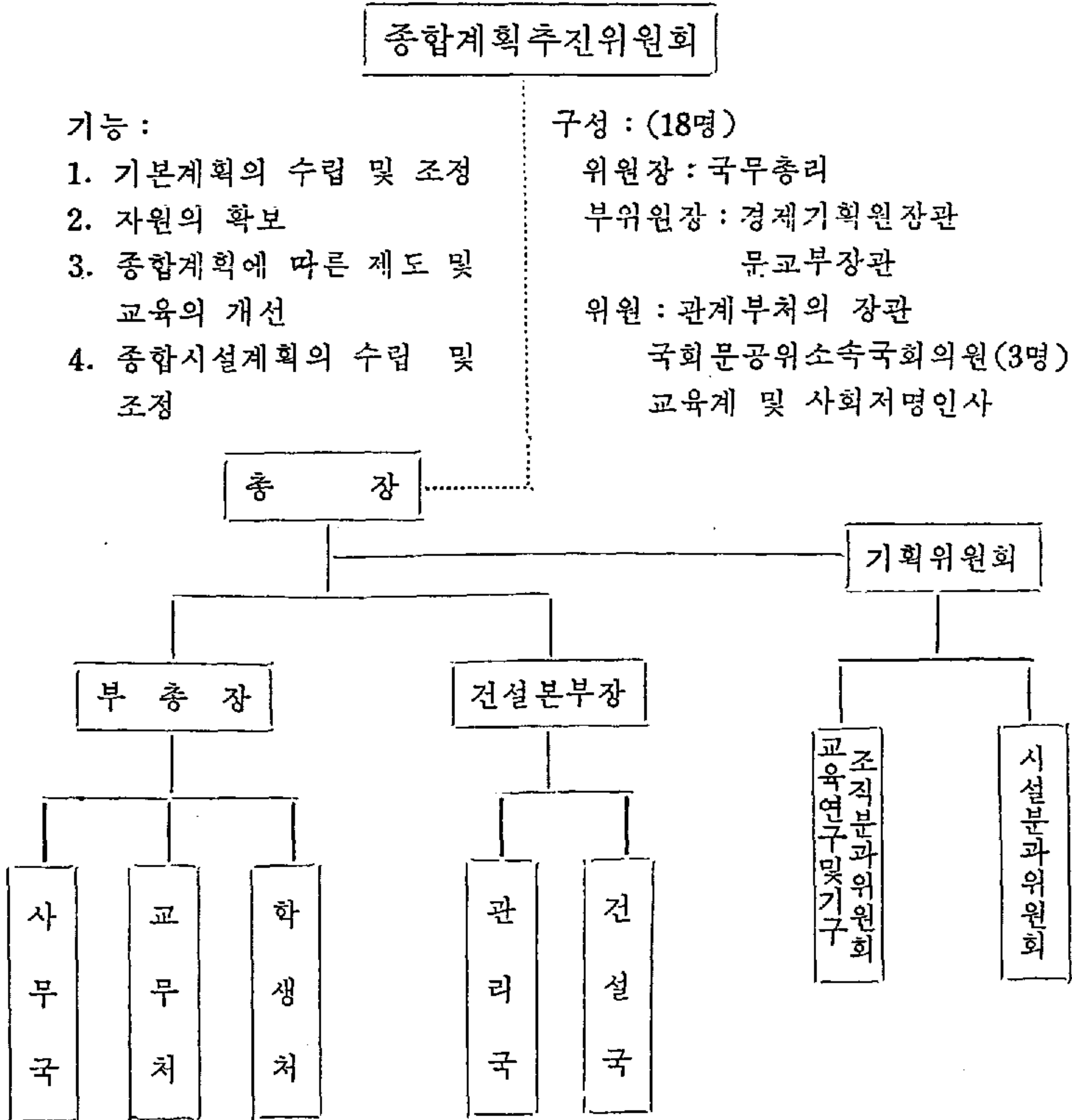
2 축산장려를 위한 동물 사육 시설 } 확충

3 기업농을 위한 경제 농장

다) 농장—구획정리

관개시설—농업의 현대화

4. 추진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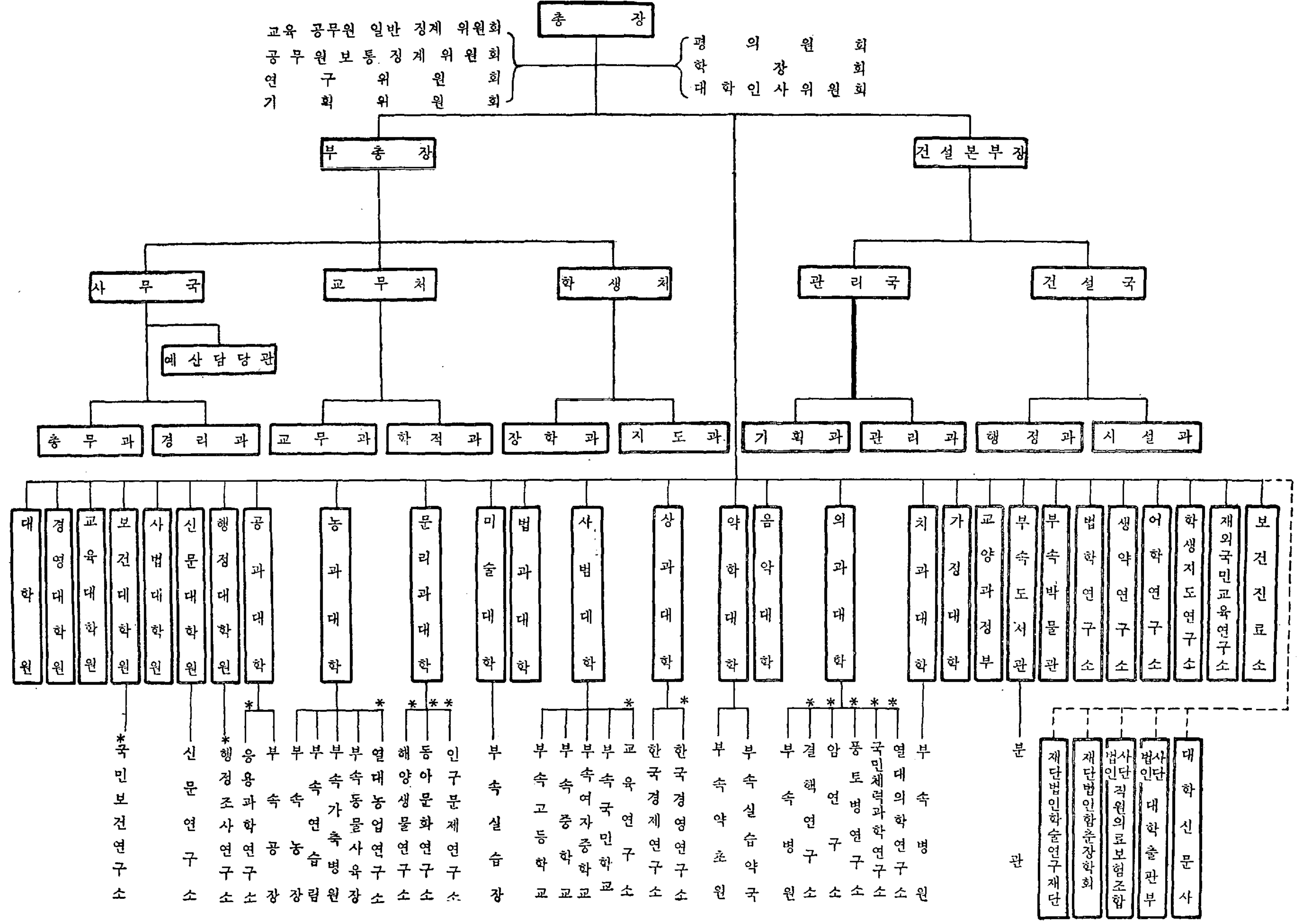
여 백

XI. 부 표

여 백

기 구 표

1971. 2. 1 현재



*내 부 기 관

여 백

2. 서울대학교 개요

1. 기 구

구분	본부	대학원	대학	교양부	부속 학교	부속 도서관	부속 박물관	연구소	부속 병원	기타 시설
합계	1	7	12	1	4	1	1	21	2	15

2. 직 원

구분	(1) 정 원							(2) 기 타 직			
	소계	총장	부총장	교원	일반직	기능직	고용원	소계	명예 교수	무급 조교	시간 강사
합계	3,179	2,265	1	1	1,211	598	454	912	16	106	792

3. 학 생

구분	(1) 학 생 정 원				
	계	71학년도 (1학년)	70학년도 (2학년)	69학년도 (3학년)	68학년도 (4학년)
합계	14,107	4,356	4,069	3,037	2,645
대학	12,215	3,350	3,250	2,970	2,645
대학원	1,892	1,006	819	67	—

구분	(2) 70학년도 제2학기 등록상황						(3) 졸업생(71년 전기누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위탁 연구생	학사	석사	박사
합계	13,047	3,904	3,720	2,705	2,566	152	45,246	4,764	1,190
대학	11,459	3,206	3,031	2,654	2,566	—	45,246	—	—
대학원	1,588	698	689	51	—	150	—	4,764	1,190

4. 기본 재산

(1)	(2) 토 지 시 설						
	건물시설	계	교지	체육장	시험 및 장	약초원	연습림
	90,263.53	55,763,340	1,481,790	49,000	120,929	5,274	54,111,621

5. 재 정

년도별		71 회 계 년 도 (예산)			
		세 입		세 출	
합	계	3,319,270,150		4,661,404,000	
일반회계	계	244,030,150		1,586,164,000	
부속병원특별회계	계	1,586,840,000		1,586,840,000	
시설확충특별회계	계	1,488,400,000		1,488,400,000	

년도별		70 회 계 년 도			
		세 입		세 출	
회 계 별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합	계	3,378,512,220	2,851,954,222
일반회계	계	203,532,020	195,403,783	1,406,734,300	1,405,315,781
부속병원특별회계	계	1,407,791,600	1,412,520,305	1,407,791,600	1,335,814,343
시설확충특별회계	계	1,767,188,600	1,244,030,134	1,767,188,600	1,244,030,000

3. 기 관 현 황

70년도 2학기

구분 기관별	설립 년월일	학과수	학 생		직 원 (정원)				예산(국고)
			정원	현원 70, 2 기 등록	계	교원	일반 직	기타 직	
합	—	—	18,195	13,047	2,265	1,211	600	454	4,047,687, 100
본 부	46. 8. 22	—	—	—	171	16	114	41	996,658,800
대 학 원	46. 8. 22	석사 64 134전공 박사 43 103전공	574	740	11	1	7	3	5,190,600
경 영 대 학 원	65. 11. 24	1학과	240	206	11	6	5	—	3,383,700
교 육 대 학 원	63. 4. 12	23전공	200	178	16	10	4	2	2,824,800
보 건 대 학 원	59. 1. 13	8"	140	115	26	18	4	4	3,828,800
사 법 대 학 원	62. 2. 27	1학과	200	70	14	2	5	7	33,232,200
신 문 대 학 원	67. 12. 14	1학과	100	86	16	9	5	2	4,963,600
행 정 대 학 원	59. 1. 13	2"	250	193	34	20	7	7	5,373,600
공 과 대 학	46. 8. 22	18"	2,756	2,863	237	133	40	64	39,949,600
농 과 대 학	"	14"	1,234	1,284	209	117	33	59	117,927,700
물 리 과 대 학	"	26"	2,346	2,509	193	143	21	34	19,571,900
미 술 대 학	53. 4. 20	3"	270	283	36	25	7	4	5,730,900
법 과 대 학	46. 8. 22	2"	686	703	47	24	10	13	6,499,600
사 사 대 학	"	7"	1,268	1,396	126	96	13	17	10,340,600
사 사 대 학	"	21학급	1,260	1,300	60	51	4	5	4,416,500
사 사 대 학	"	18"	1,400	1,232	47	40	3	4	5,793,100
사 사 대 학	68. 10. 17	19"	1,120	1,295	42	36	3	3	5,038,000
사 사 대 학	46. 8. 22	18"	1,080	2,049	32	25	2	5	4,209,000
사 사 대 학	"	3학과	900	896	69	44	13	12	5,749,200
사 사 대 학	50. 9. 30	2"	312	315	46	32	7	7	4,439,400
사 사 대 학	53. 4. 20	4"	472	495	53	39	7	7	6,275,600
사 사 대 학	46. 8. 22	3"	713	720	186	144	12	30	17,792,000
사 사 대 학	"	2"	327	338	79	56	16	7	5,756,100
사 사 대 학	68. 12. 24	—	175	177	15	11	3	1	2,712,000
사 사 대 학	67. 12. 14	—	—	—	95	77	10	8	14,488,100
사 사 대 학	46. 8. 22	—	—	—	32	2	23	7	8,986,200
사 사 대 학	"	—	—	—	3	—	1	2	1,253,500
사 사 대 학	"	—	—	—	8	6	1	1	2,798,200
사 사 대 학	"	—	—	—	18	10	3	5	8,376,900
사 사 대 학	62. 12. 31	—	—	—	—	—	—	—	3,611,900
사 사 대 학	"	—	—	—	15	9	4	2	2,617,300
사 사 대 학	62. 2. 17	—	—	—	13	7	2	4	3,146,600
사 사 대 학	46. 8. 22	—	—	—	296	—	209	87	1,337,405,300
사 사 대 학	53. 6. 5	—	—	—	—	—	—	—	70,336,300
사 사 대 학	—	—	—	—	—	—	—	—	1,233,161,200

박물관 경비는 본부계정에 포함

4. 학생정원표(대학. 대학원 부속학교)

1. 대학 학생 정원표

대학별	학 년 모집 학년도	합 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1971	1970	1969	1968
			합 계 { 모집 정원 학생 정원		11,755 12,215	3,090 3,350
공 과 대 학		3,000	800	800	800	600
농 과 대 학		1,300	340	320	320	320
문 리 과 대 학		2,390	745	735	455	455
미 술 대 학		280	70	70	70	70
법 과 대 학		640	160	160	160	160
사 범 대 학		1,575	410	400	400	365
상 과 대 학		780	195	195	195	195
약 학 대 학		320	80	80	80	80
음 악 대 학		480	120	120	120	120
의 과 대 학		780	240	180	180	180
치 과 대 학		400	100	100	100	100
가 정 대 학		270	90	90	90	—

2. 대학원 학생 정원표

대학원별 모집학년도		학년	합 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1971		1970	1969	
합		계	1,892	1,006	819	67
대 학 원	소	계	942	521	354	67
	석사과정		712	425	287	—
	박사과정		230	96	67	67
경영대학원			240	120	120	—
교육대학원			200	100	100	—
보건대학원			140	70	70	—
사법대학원			200	100	100	—
신문대학원			110	60	50	—
행정대학원			260	135	125	—

3. 부속학교 학생정원표

학교별 모집학년도		학년	합 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1971		1970	1969	1968	1967	1966	
합		계	5,490	1,650	1,650	1,650	180	180	180
사 대 부 속	고등학교		1,260	420	420	420	—	—	—
	중학교		1,470	490	490	490	—	—	—
	여자중학교		1,680	560	560	560	—	—	—
	국민학교		1,080	180	180	180	180	180	180

5. 입학 상황표

1. 대학 입학 상황표

(71학년도)

구분 대학별	모집 정원	지원자	합격자	비율	비고
계	3,090	11,348	3,090	3.7	
공대	800	1,912	800	2.4	
농대	340	1,013	340	3.0	
문리대	745	3,261	745	4.4	
미대	70	650	70	9.3	
법대	160	674	160	4.2	
사대	410	2,154	410	5.3	
상대	195	769	195	3.9	
약대	80	277	80	3.5	
음대	120	315	120	2.6	
의대	80	164	80	2.0	
가정대	90	159	90	1.8	

2. 대학원 입학 상황표

(71학년도)

구분 대학원별	모집 정원	지원자	합격자	비율	비고
계	1,009	1,639	937	1.6	
대학원 { (석사)	425	490	360	1.1	
(박사)	96	116	92	1.2	
경영대학원	120	315	120	2.6	
교육대학원	100	212	100	2.1	
보건대학원	70	95	70	1.3	
신문대학원	60	104	60	1.7	
행정대학원	135	307	135	2.2	

6. 재학생통계표 (대학, 대학원)

(70학년도 2학기)

구분 대학별	합계 (가+나)	(가) 정 규					(나) 위탁 및 청강 연구생
		소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총 계	13,047	12,895	3,904	3,720	2,705	2,566	152
합계(대 학)	11,459	11,457	3,206	3,031	2,654	2,566	2
공 과 대 학	2,756	2,756	867	703	622	564	—
농 과 대 학	1,234	1,234	292	304	332	306	—
문 리 과 대 학	2,346	2,346	714	696	449	487	—
미 술 대 학	270	270	71	65	68	66	—
법 과 대 학	686	684	164	155	157	208	2
사 범 대 학	1,268	1,268	328	348	307	285	—
상 과 대 학	900	900	199	193	262	246	—
약 학 대 학	312	312	83	76	78	75	—
음 악 대 학	472	472	123	123	118	108	—
의 과 대 학	713	713	192	192	183	146	—
치 과 대 학	327	327	86	88	78	75	—
가 정 대 학	175	175	87	88			—
합계(대 학원)	1,588	1,438	698	689	51	—	150
대 학 원	740	634	300	283	51	—	106
경 영 대 학 원	206	174	82	92	—	—	32
교 육 대 학 원	178	178	87	91	—	—	—
보 건 대 학 원	115	115	58	57	—	—	—
사 범 대 학 원	70	70	32	38	—	—	—
신 문 대 학 원	86	74	41	33	—	—	12
행 정 대 학 원	193	193	98	95	—	—	—

7. 학 위

1. 학사 학위 수여자 통계표

대학별 성별		회수	1	2	3	4	5	6	7	8	9	10	11
		947	1948	2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합	계	215	331	362	639	602	683	847	869	1,771	2,890	2,905	
	계	215	331	353	590	560	618	787	795	1,600	2,644	2,643	
	남			9	49	42	65	60	74	171	246	262	
공과대학	남	23	52	27	126	107	117	175	120	331	525	454	
	여	23	52		126	107	117	175	115	329	513	448	
	계								5	2	12	6	
농과대학	남			4	41	28	37	106	104	198	304	264	
	여			4	41	28	36	106	104	195	304	264	
	계						1			3			
문리과대학	남	60	172	128	126	105	81	90	121	235	407	429	
	여	60	172	128	121	95	76	86	115	208	347	381	
	계				5	10	5	4	6	27	60	48	
미술대학	남								11	19	29	35	
	여								5	12	21	31	
	계								6	7	8	4	
법과대학	남	55	23	78	66	87	85	77	113	227	307	331	
	여	55	23	77	62	87	81	75	113	218	292	315	
	계			1	4	4	4	2		9	15	16	
사범대학	남		32	61	91	99	81	86	142	223	476	475	
	여		32	53	52	74	54	60	110	174	397	377	
	계			8	39	25	27	26	32	49	79	98	
상과대학	남	24	21	25	55	50	98	96	88	193	304	394	
	여	24	21	25	55	50	96	95	87	192	302	389	
	계						2	1	1	1	2	5	
약학대학	남					18	53	62	45	117	161	134	
	여					14	38	50	37	66	122	98	
	계					4	15	12	8	51	39	36	
음악대학	남								11	26	32	49	
	여								4	11	17	22	
	계								7	15	15	27	
의과대학	남	53	31	39	123	82	98	111	68	90	138	160	
	여	53	31	39	123	81	98	108	63	86	136	150	
	계					1		3	5	4	2	10	
치과대학	남							16	12	29	54	122	
	여							14	12	25	51	110	
	계							2		4	3	12	
수의과대학	남								17	58	85	66	
	여								17	58	83	66	
	계										2		
예술대학	남				11	26	17	32					
	여				10	24	8	20					
	계				1	2	9	12					

수 여 자 통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 계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2,789	1,906	2,281	2,635	2,062	2,631	3,156	3,245	2,134	1,893	1,949	2,038	2,251	43,083
2,503	1,684	2,010	2,400	1,826	23,30	2,858	2,850	1,875	1,630	1,634	1,747	1,963	38,445
286	222	271	235	236	301	298	395	259	263	315	291	288	4,638
436	231	298	394	254	331	488	501	335	324	360	444	505	6,958
425	229	295	393	252	327	488	500	334	323	359	441	505	6,903
11	2	3	1	2	4		1	1	1	1	3		55
233	119	159	225	160	351	444	383	262	232	228	246	234	4,362
228	116	151	219	158	336	427	358	243	214	205	227	216	4,180
5	3	8	6	2	15	17	25	19	18	23	19	18	182
400	317	387	456	349	479	534	581	395	368	369	329	423	7,341
363	292	345	417	320	449	501	535	354	336	317	288	372	6,678
37	25	42	39	29	30	33	46	41	32	52	41	51	663
43	33	56	58	51	91	108	118	66	75	64	58	67	982
29	22	39	33	26	59	54	55	23	25	15	13	28	490
14	11	17	25	25	32	54	63	43	50	49	45	39	492
305	207	234	325	279	339	368	341	208	160	155	178	168	4,716
291	196	224	320	278	334	366	335	208	160	153	178	168	4,609
14	11	10	5	1	5	2	6	2					107
459	250	431	397	306	405	422	468	186	183	190	211	229	5,903
341	169	343	308	204	311	344	345	148	128	139	163	169	4,495
118	81	88	89	102	94	78	123	38	55	51	48	60	1,408
341	241	232	294	224	260	405	398	276	173	198	187	243	4,820
335	238	228	294	223	259	405	396	273	173	198	186	243	4,787
6	3	4		1	1		2	3			1		33
146	124	120	98	105	83	111	126	89	66	78	72	81	1,889
110	88	92	84	83	74	96	106	73	45	56	47	72	1,451
36	36	28	14	22	9	15	20	16	21	22	25	9	438
46	46	68	74	62	94	94	91	85	62	83	93	97	1,113
20	9	21	28	23	26	25	30	29	14	16	25	28	348
26	37	47	46	39	68	69	61	56	48	67	68	69	765
46	152	140	133	124	170	160	161	145	157	144	137	125	2,887
141	147	133	131	117	129	130	115	104	122	99	101	83	2,520
5	5	7	2	7	41	30	46	41	35	45	36	42	367
150	114	113	117	106	28	22	77	87	93	80	83	79	1,495
137	106	97	109	100	26	22	75	86	90	77	78	79	1,395
13	8	16	8	6	2		2	1	3	2	5		100
84	72	43	64	42									531
83	72	42	64	42									527
1		1											4
													86
													62
													24

2. 석사학위 수여자 통계표

구분	연도																				계		
	19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문학석사	20	9	7	4	4	3	1	10	16	16	19	13	33	24	29	49	68	45	54	39	39	43	547
정치학					2			1	7	6	6	9	11	3	6	7	14	5	8	4	12	3	104
법학	6	1		2	3		5	8	14	11	12	18	11	14	6	7	15	29	25	14	28	17	246
상학									2	1		1	4	2	2	4	7	1	8	1	2	1	36
경제학		4		1	5	4	1	5	12	3	12	7	13	12	3	6	7	12	7	3	1	2	120
미술					3				2	2	2	2	2	1	3	1	2	3	3	1	2	4	28
음악																							28
음악																							46
이학	4	4		1	7		10	6	12	18	13	13	17	26	25	18	19	15	23	24	13	18	286
공학	3	6	1	3	4	6	5	6	21	10	12	19	10	15	14	24	20	26	27	17	11	20	220
가정학																							11
농학																							193
수의학																							39
의학	57	26	3	2	7	1	6	17	12	32	35	35	53	61	52	31	31	51	42	48	52	58	712
치의학																							174
약학																							96
교육																							207
보건학																							355
행정학																							770
체육학																							8
경영																							82
간호학																							2

3. 박사학위 수여자 통계

연 별	학 과 별												계							
	19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공학박사	1			1	2							1	1	2	4	6	9	11	9	35
농 학"								1			2	3	4	2	6	9	9	5	5	42 (2)
문 학"	2	2		2	2						3	1	3	2	3	9	1	1	1	27
철 학"									2					2	2	2	1	—	1	8
이 학"	3	1			1					2	2	2	1	8 (1)	7 (1)	4	4	10	10	55 (3)
법 학"									1		1	1			3	4	4	3	4	17 (1)
경제학"									1				1			4	4	4	1	12
의 학"	1	2		11	2	3	6	15	18	43	53	77 (13)	84 (22)	96 (15)	107 (26)	128 (28)	98 (19)	83	51	910 (181)
약 학"											1	3	2	3	2	1 (1)	5 (1)	11	4	32 (2)
수의학"												1			1			2	—	5
계	6	6		14	3	5	6	16	23	45	62	89	93	111	120	155	141	30	18	1,143

()는 박사과정 수료자

4. 명예 박사학위 수여자 통계

연별 학기별	연별																				계				
	19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계
공학라사																									
문 학"											1			1				1						3	
이 학"														1			1	1			2	1		6	
농 학"														1					1			2	1	4	
의 학"																						4		1	
철 학"																						4		1	
법 학"	2																					2		54	
경제학"		1																							
약 학"																									
수의학"																							1	1	
계	2	1	2		1	1		2	5	3	2	3	2	10	1	1	6	4	4	4	6	4	6	3	68

8. 장학금 급여상황표

(70년도 2학기)

구	분	등록생수	비 (수혜자)	합 계		장 학 금		학 비 감 면		기 성 회 비	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3,047	41.2	5,374	58,095	1,674	39,074	3,700	19,021	1,716	11,085	1,984	7,936
공	학	1,889	43.0	812	11,340	287	8,827	525	2,513	243	1,385	282	1,128
동	대	936	40.4	389	3,165	120	1,866	269	1,299	131	747	138	552
문	대	1,899	42.8	813	6,316	157	2,857	659	3,459	334	2,171	322	1,288
미	대	270	41.1	111	692	26	245	85	448	43	280	42	168
법	대	522	49.6	259	2,596	112	1,821	147	776	75	488	72	288
학	학	980	26.2	257	1,665	97	1,025	160	640	—	—	160	640
사	고	—	—	8	40	8	40	—	—	—	—	—	—
사	부	—	—	8	40	8	40	—	—	—	—	—	—
사	부	—	—	4	20	4	20	—	—	—	—	—	—
사	여	—	—	4	20	4	20	—	—	—	—	—	—
상	대	705	39.4	278	2,487	89	1,486	189	1,001	98	637	91	364
약	대	234	84.6	198	1,302	125	917	73	385	37	241	36	144
음	대	472	41.3	195	1,246	46	462	149	784	75	488	74	296
의	대	633	45.3	287	2,589	126	1,780	161	809	66	429	95	380
키	대	2327	52.9	173	1,484	53	854	120	630	60	390	60	240
가	대	88	52.3	46	297	18	150	28	147	14	91	14	56
교	부	2,477	29.5	730	5,539	134	2,577	596	2,962	271	2,662	325	1,300
대	정	740	49.9	369	7,952	104	6,406	265	1,546	132	1,014	133	532
경	학	206	42.7	88	557	20	156	68	401	34	265	34	136
요	대	178	42.1	75	741	15	392	60	350	30	230	30	120
보	원	115	40.0	46	279	4	31	42	248	21	164	21	84
사	학	70	106.0	74	6,217	74	6,277	—	—	—	—	—	—
신	원	86	77.9	67	99.4	31	781	36	212	18	140.0	18	72
정	원	193	45.1	87	539	16	126	71	413	34	265	37	14

9. 현역군인 재

대학별	구분	합 계	육 군						해 군						
			계	장성	영관	위관	준위	하사관	병	계	장성	영관	위관	준위	하사관
합	계	148	80	1	3	75			1	23		3	19		
소	계	72	39			39				17			17		
공과대학		38	15			15				14			14		
농과대학		—				—				1			1		
문리과대학		22	18			18				—			—		
미술대학		—				—				—			—		
법과대학		1	1			1				2			—		
사범대학		1	—			—				—			—		
상과대학		10	5			5				—			2		
약학대학		—				—				—			—		
음악대학		—				—				—			—		
의과대학		—				—				—			—		
치과대학		—				—				—			—		
소	계	76	40	1	3	36	—	—	1	6		4	2	1	
대학원		16	16			16									
경영대학원		20	7			10			1		2		1	1	
교육대학원		7	1			4									
보건대학원		11			2	1				2		1	1		
사범대학원															
신문대학원		9		1		4									
행정대학원		13	13			1				2		2			

학생 통계표

70년도 2학기

공						군						해						병						대						비		고						
계	장성	영관	위관	준위	하사관	병	계	장성	영관	위관	준위	하사관	병	계	장성	영관	위관	준위	하사관	병	계	장성	영관	위관	준위	하사관	병	계	장성	영관	위관	준위	하사관	병				
40		7	33				5		4	1																												
11		16																																				
4			9																																			
—			3																																			
3																																						
			1																																			
4			3																																			
19		7	17				5		4	1																												
1			8																																			
10		1	1																																			
			6				1																															
2			2																																			
1																																						
1							2																															
4		6					2																															

10. 학생병사관계 통계표

70 학년도

구분	등록수	징집해당자											
		계	20세	21	22	23	24	25	25	27	28	29	30
합계	12,005	8,380	3,337	1,510	1,507	1,074	519	265	118	30	14	4	2
공과대학	1,950	1,361	485	303	246	230	26	38	26	6	1	—	—
농과대학	969	704	98	84	192	202	99	21	8	—	—	—	—
문리과대학	2,002	1,336	251	378	407	174	111	15	—	—	—	—	—
미술대학	283	70	16	14	21	15	2	—	2	—	—	—	—
법과대학	536	441	105	132	114	50	25	8	1	1	2	1	2
사범대학	1,042	680	149	191	160	102	45	19	7	4	2	1	—
상과대학	705	516	114	172	149	55	19	5	—	2	—	—	—
약학대학	235	154	35	47	34	20	7	5	3	2	1	—	—
음악대학	495	102	16	32	21	22	6	4	—	—	1	—	—
의과대학	640	412	—	30	61	85	110	88	38	—	—	—	—
치과대학	338	311	11	40	55	85	52	34	21	6	5	2	—
가정대학	88	—	—	—	—	—	—	—	—	—	—	—	—
교양과정부	2,722	2,293	2,057	87	47	34	17	28	12	9	2	—	—

구분	비해당자							제대군인 (역종)	군별제대상황					제대자수
	계	연령미달	연령초과	제대군인	현역군인	여자	교포및외국인	예비역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합계	3,625	956	3	871	72	1,670	53	—	871	755	17	66	33	103
공과대학	589	352	—	192	38	12	5	—	192	147	16	18	11	44
농과대학	265	3	1	196	—	65	—	—	196	169	1	21	5	—
문리과대학	666	251	2	210	22	165	16	—	210	183	—	18	911	213
미술대학	—	10	—	12	—	190	1	—	12	12	—	—	—	1
법과대학	95	48	—	38	1	3	5	—	38	25	—	2	1	4
사범대학	362	77	—	18	1	266	—	—	18	18	—	—	—	27
상과대학	189	50	—	124	10	—	5	—	124	115	—	5	4	—
약학대학	81	12	—	21	—	48	—	—	21	20	—	1	—	—
음악대학	393	32	—	31	—	327	3	—	31	29	—	—	2	16
의과대학	228	—	—	7	—	214	7	—	7	7	—	—	—	—
치과대학	27	—	—	15	—	12	—	—	15	13	—	1	1	—
가정대학	88	—	—	—	—	28	—	—	—	—	—	—	—	—
교양과정부	429	121	—	7	—	290	11	—	7	7	—	—	—	—

11. R.O.T.C. 현황

1. 재 적 자 현황 (70학년도)


구 분	합 격 자		제 적 자		재 적 자	
	3 년	4 년	3 년	4 년	3 년	4 년
합 계	330	216	2	13	328	203
공 과 대 학	113	49	1	3	112	46
농 과 대 학	77	58	1	4	76	54
문 리 과 대 학	50	35	—	3	50	32
미 술 대 학	—	5	—	1	—	4
법 과 대 학	—	—	—	—	—	—
사 범 대 학	41	34	—	1	41	33
상 과 대 학	24	17	—	1	24	16
약 학 대 학	21	18	—	—	21	18
음 악 대 학	4	—	—	—	4	—

2. 입 관 현 황

구 분	제 1 기 생 ~ 제 8 기 생			
	모집정원	제적인원	입관자	하사관인원
합 계	3,779	522	3,191	66
제 1 기 생 (61학년도)	600	82	513	5
제 2 기 생 (62학년도)	600	66	528	6
제 3 기 생 (63학년도)	500	42	437	21
제 4 기 생 (64학년도)	500	82	401	17
제 5 기 생 (65학년도)	422	60	351	11
제 6 기 생 (66학년도)	468	110	352	6
제 7 기 생 (67학년도)	374	33	341	—
제 8 기 생 (68학년도)	315	47	268	—

여 백

서울대학교 배치도



- ① 대학교 본부
- ② 대학원
- ③ 문리과 도서관
- ④ 부속 도서관
- ⑤ 부속 박물관
- ⑥ 어학 연구소
- ⑦ 법과 대학원
- ⑧ 행정 대학원
- ⑨ 사법 대학원
- ⑩ 신문 연구소
- ⑪ 의과 대학
- ⑫ 보건 대학원
- ⑬ 생약 연구소
- ⑭ 약학 대학
- ⑮ 교수 회관
- ⑯ 학생지도연구소, 보건진료소, 대학신문사
- ⑰ 의과대학 부속병원
- ⑱ 미술대학, R.O.T.C.
- ⑳ 상과 대학
- ㉑ 경영대학원, 한국경제연구소
- ㉒ 사범 대학
- ㉓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㉔ 교육 대학원
- ㉕ 가정대학
- ㉖ 신문 대학원
- ㉗ 사범대학 부속 국민학교
- ㉘ 사범대학 부속 여자 중학교
- ㉙ 음악 대학
- ㉚ 치과 대학
- ㉛ 치과대학 부속병원
- ㉜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 ㉝ 공과 대학
- ㉞ 교양 과정부
- ㉟ 재외국민 교육연구소
- ㊱ 농과대학

1971년 4월 25일 인쇄
1971년 5월 1일 발행

서울대학교요람

발행 서울대학교
편집 서울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인쇄 사단법인 서울대학교출판부

앞으로의 大學은 國家發展의 理念을 提示해야 될뿐 아니라
産業化 過程의 加速化에 따른 社會로부터의 戰略的인 技能이
나 知識의 開發을 일층 더 強要당하기 때문에 古典的 大學觀
처럼 결코 社會와의 격리를 理想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1971. 2. 26.

서울대학교 제25회 졸업식 총장 식사에서

정 오 표

페이지	줄	오	정
12	12~13	재학은	재학생은
15	17	1664	1964
16	2	대통령	대통령령
27	11	사항은	사항을
28	4	보도하도록	보하도록
30	20	15	5
31	7	중서	중사
31	14	공용직	고용직
34	2	부속박물관	부속박물관
57	18	도서관장	음악도서관장
61	14	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장
65	25	도서관장	교양도서관장
68	14	부속박물관	부속박물관
102	17	포함	포함
104	16	잔임기으로	잔임기간으로
111	8	학생행정원	학생정원
115	9	관하여는	관하여는
118	19	대학졸업자	대학졸업
128	9	9년	2년
133	23	70—19	70—79
163	7	분야와	분야의
164	17	5개년계획	5개년계획
164	22	위촉	위촉
166	9	위촉	위촉
174	1	실정	실정
186	9	유요	유효
186	16	구약	규약
188	12	지육편증	지육편증
189	1	하	하고
191	1	사문적	사무적